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21. 3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에서 수행하는 여러 중요한 활동 중에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섹션 운영이 있다. 이는 다양한 영역의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직면하는 연구윤리에 대한 질문이나 고민에 대해 신속하고도 정확한 컨설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윤리 Q/A 온라인 컨설팅을 위해 지금과 같은 섹션 명칭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2016년 10월부터 서울교육대학교 이인재 교수가 제4대 센터장(2016. 10~2021. 3)으로서 운영의 책임을 맡은 이후 2019년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부터이다.

연구윤리 관련 고민이나 질문에 대한 전화 및 온라인 컨설팅 건수를 보면 2017년 506건, 2018년 669건, 2019년 890건, 2020년 1,004건으로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만큼 연구자들이 이 섹션을 활용하여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궁금증이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크게 받아 책임 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의 기초를 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연구윤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섹션은 연구윤리정보센터의 기능을 대표하는 핵심 아이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4년 여 동안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들여 컨설팅한 내용을 많은 연구자들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다. 첫째, 지난 2021년 1월에 실시한 “연구윤리정보센터 이용자 대상 홈페이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연구윤리 관련 질문 및 답변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였다. 둘째,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많은 질문들을 보면,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질문일 수 있지만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답변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질문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공개 의견을 주지 않는 한,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어 유사 질문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변을 계속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이 향후 지속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따라서 제4대 센터장으로서의 임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컨설팅한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궁금증이나 고민을 뽑아 공유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유사한 질문에 스스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을 발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질의응답집에 제시된 질문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대학(원)생, 전문 연구자,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 질문자만의 궁금증이나 고민일 수 있지만 연구 현장의 다른 많은 사람들도 충분히 유사하게 직면할 수 있다고 본 것 위주로 추출했다. 이 추출된 질문의 공개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일일이 허락을 받지 못하였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널리 양해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제시된 답변은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원들이 관련 근거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고 센터장이 최종 검토 및 보완(매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을 거친 것이다. 이 응답집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해 또 연구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연구윤리 관련 궁금증이나 고민을 해결하는데 유익한 참고 자료로서 크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제4대 연구윤리정보센터장 이인재

Contents

Chapter

I

표 절

1. 논문 초록에도 인용표기를 하는지, 국가 보고서 통계자료 사용 시 인용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2
2.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기존의 기술적 방법을 인용할 때 표기방법이 궁금합니다.13
3. A연구자가 만든 특허 등록된 연구 결과물을 재활용 시 인용표기 및 설명이 없이 논문을 투고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3
4. 2014년 “표절” 규정이 제정되기 전 2013년의 출판된 논문에 대한 표절 신고를 현재 어떤 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4
5. 두 명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같이 인용하여 각각의 논문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4
6. 인용표시 없이 감사의 글로만 표기한다면 표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5
7. “2008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문 6어절 이상/영문 9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자료가 궁금합니다.15
8. 학위논문 작성 중 자신의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표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6
9. 내주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16
10. 개발된 연구 도구를 원저자에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7
11. 인용할 논문 앞면에 명시된 “배포 금지” 관련 문구가 있다면 저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7
12. 저널에 게재되지 않는 워킹페이퍼를 인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18
13. 연구용역 기관의 표절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9
14. 타인이 자신의 논문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논문 출판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0
15.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하기 위한 표절 유사도 검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21
16. 두 학회 간의 표절을 확인하였을 때, 표절된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어떤 처벌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1
17. 자료집 제작 중 원저자의 자료를 수정·보안하게 될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2
18. 참고문헌의 표기가 해당 논문의 본문에 사용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은 연구부정행위인지 궁금합니다.22
19. 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되는 경우 최종 학력은 어떻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3

중복게재

1. 하나의 주제로 포스터 발표와 학위논문을 게재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6
2. 동일 주제로 두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2건을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신청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6
3. A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내용과 동일한 초록 및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B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27
4.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7
5.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해외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8
6.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28
7. 부당한 중복게재를 하였을 경우 처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9
8.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의 결과물(사업보고서)을 수정/보완하여 등재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9
9. 학술지 투고시 내용을 분할하여 두 편으로 게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0
10. 중복게재의 기준은 논문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1

저작권 침해

1. 여러 강사의 강연록을 자료집으로 만들 때 저작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4
2. 매체의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5
3. 온라인 강의교안 제작에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자료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5
4. 연락이 되지 않는 원저작자의 연구 도구 승인(동의) 절차가 궁금합니다.36
5. 외부 연구원이 S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보고서에 그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7

저자자격과 올바른 저자표기

1. 연구 보고서의 기여자 선정에 관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0
2.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제 1저자(주저자)가 2명일 때 기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41
3. 국제의학저널편집인협의회(ICMJE)의 저자자격(authorship)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42
4. A의 데이터를 단독으로 B가 논문에 투고하였을 경우 적절한 저자표기가 궁금합니다.	43
5. 논문의 제 1저자, 제 2저자, 교신저자 등을 분류하는 저자의 자격 기준 및 윤리 준수여부가 궁금합니다.	44
6. 부당한 저자표기에 관하여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45
7. 동의 없이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자 철회 조치가 궁금합니다.	46
8. 논문 데이터 오류 수정에 기여한 B를 공저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7
9. A교수가 지인B의 부탁으로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지인B의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에 따른 법령이 궁금합니다.	48
10 A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B가 논문의 모든 내용을 새로 작성하였다면, 저자의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49
11.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0
12. 주 교신저자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1
13. 미성년 부당저자의 연구부정행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2
14. 이미 게재된 논문의 교신저자 추가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3
15. A학생저자가 지도교수에게 자신의 논문 연구결과와 사용을 ‘승인’하였다라도, 부당한 저자표기(유명저자, 저자됨의 거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54
16. 연구 사업단의 자료만 제공한 연구원을 공동 연구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6
17. 논문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 교신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7
18. 국내 학술지(KCI) 논문 작성할 때, 저자(영문)명 표기와 사사(감사의 글) 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58
19. 대학원생의 졸업 연구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59
20.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한 연구 주제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동저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0
21.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사용하여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을 출판할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61
22.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62
23. 부당한 저자표기에 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2
24. 학위논문을 학생 단독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당한 저자표기인지 궁금합니다.	63
25. 이미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할 때 저자가 바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3
26. 교수의 연구를 도와서 학술제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 논문에서는 학생이 저자에서 빠졌다면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64

사사표기

1. 소속이 다른 교수 2명이 공동 연구를 수행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개의 사사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66
2. 발행이 완료 및 수록된 논문에 사사표기 오류로 변경 신청을 요구하여 수정할 경우
연구윤리 및 학회지 발간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67
3. 의학연구 분야의 특성상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을 다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학술지에 교내 연구비나 부속병원의 연구비 사사를 표기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68
4. 모든 지원기관에 통용되는 사사표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9
5.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 후 연수 과정 지원을 받아 수정·보완 및 발전시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사사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0
6. 학술지 논문에 사사표기를 할 때 복수의 기관을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71
7. 사사표기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 같아 연구윤리적으로나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71
8. 사사표기 관련 위반 심의는 어느 기관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72
9. 재료비나 분석료, 게재료 등이 아닌 인건비나 출장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과제는
모두 사사로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3
10.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경우 논문을
작성할 때 출처 및 사사표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74
11.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국립 연구기관의 사사표시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75
1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사사표기 수정 요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76

이해상충

1. 이해상충의 의미와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78
2. 지도교수가 의뢰받은 동료심사를 박사과정 학생이 대신 작성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79
3. E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의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0
4. 부부가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공동 논문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81
5. 이해상충과 관련한 연구윤리 규정이 궁금합니다.81
6. 논문게재 진행 중인 연구와 유사한 논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행하던 논문게재와 이해상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82
7. 출판윤리 위반 사례가 궁금합니다.83
8. K연구원이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과제를 타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원고료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84
9. 특정 학회 회장이 자신이 속한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85

연구부정행위 & 연구진실성 검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4항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88
2. 예비조사 절차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88
3. 교육부 훈령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89
4.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철회 논문에 대해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89
5. 학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0
6.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1
7. 본조사를 거치지 않는 판정에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92
8.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원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92
9. 표절로 판정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조치사항 및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93
10.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행정조치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94
1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검증 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5
12. 연구진실성 검증 주체 및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96
13. 조사자(연구 책임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전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6
14. 교육부와 K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조항 중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97
15.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제보자 성명)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8
16. 외국 학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하는지 궁금합니다.	99
17. 예비조사위원의 실명 명단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
18. 제보자 없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0
19. 연구윤리 본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1
20.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1
21.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기간을 8개월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02
22. 연구부정행위 검증 단계 중 “본조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3
23. 피조사자에게 제보 내용의 어느 범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3
24. 미성년(고등학생) 저자가 포함된 프로시딩 논문을 발표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4
25. 실무 업무를 할 때,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의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105
26. 예비조사위원이 본조사위원으로 연속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6
27. 본조사 진행 전 해당 논문의 저자가 논문을 철회하여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07
28.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도 연구윤리 위반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108

부실학술활동

1. Fake Journal인지 모르고 13편의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채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110
2. Beall's list처럼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부실학술지 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11
3. WASET 같은 부실학회 참석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조사/징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2
4.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MDPI 출판사가 발행하는 JCR 등재지의 약탈적 저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3
5. 약탈적 저널에서 논문 투고에 돈을 요구하였고,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14
6. A논문을 약탈적 저널에 투고 후 국내 다른 저널에 투고하려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15
7. Longdom Publishing SL Group SA라는 학술지가 부실학술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6
8. 부실학회인 IACSIT가 co-organizer로 된 학회가 부실학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17

데이터 관리

1. 동료 연구원이 자신의 데이터 원본을 몰래 가져간 것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20
2. 두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가 사용 권한에 대한 승인 없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21
3. 연구 책임자가 최근 자신의 연구실에서 투고한 논문에 3명의 학생의 데이터 위조를 발견하여 신고하였을 때, 연구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122
4. 논문 출판 전 동료의 졸업 논문 데이터 조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23
5. 설문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원본 데이터(raw data)를 제공하지 않는 연구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24
6. 타 연구실의 학생이 무단 침입하여 연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해당 연구실의 관계자 외 출입 제한을 정당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5
7. P가 석사졸업을 하고 L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석사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논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126
8. M학회에서 홈페이지에 배너 이미지로 발간된 논문들의 이미지 및 데이터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27
9. A라는 큰 연구과제 안에 A1, A2, A3 등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B연구자는 A라는 큰 연구과제의 A1 과제는 '정식 계약을 맺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연구자는 가끔 A2, A3 등의 과제에도 계약서 없이 참여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공유데이터의 소유권 및 지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28
10. 데이터 제공회사 A가 있고, B는 A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하였고, C는 A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C가 A의 데이터를

Contents

이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9
11. 박사학위 논문 작성 중 석사과정 때 수집한 기초 자료를 계속 활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30
12. 현재 A 기업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진행 중인 연구의 데이터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 된 상태에서 이직한다면, 이직 후에도 A 기업에서의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위논문으로 발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1

Chapter

X

연구노트

1. 제3자가 연구노트를 기록하고 허위로 서명하였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34
2. 연구노트 기록 의무화가 최초로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134

Chapter

XI

IRB, IACUC

1. IRB 승인 없이 논문을 출판했는데, 법적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136
2. 하나의 질적 연구 자료를 소주제로 나누어 다수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요? 또한 한 번의 IRB 승인으로 다수의 논문 출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37
3. 두 기관이 인체 조직 유래물을 이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IRB는 두 기관모두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8
4. 국외 대학 소속 연구자가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IRB 승인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8
5. 온라인 설문조사 시 동의획득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139
6. 설문조사 동의서를 전자파일로 저장 후 폐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40
7. 병원에서 수집한 영상자료 및 환자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수행 시 IRB 검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40
8.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 계측을 할 경우에도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1
9. 국가기관에서 인간대상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연구 참여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업무상 진행된 연구도 논문 출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42
10. 인간대상연구 중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조사)업무는 모두 IRB 면제인가요? IRB 면제 대상이라면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43
11.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활동 내용 및 수업 후 설문조사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학생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44
12.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가 아닌 온라인 설문조사를 업체를 통해 진행할 때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45
13. 동물의 분변을 받아서 해당 분변으로부터 박테리아를 분리하는 실험을 할 때에도 IACUC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46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I

표절



Q 1. 논문 초록에도 인용표기를 하는지, 국가 보고서 통계자료 사용 시 인용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1) 논문 초록의 연구배경 부분은 거의 관련 근거를 담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초록에도 인용표기를 해야 하는지요?
- 2) 국가 보고서의 통계 내용을 근거자료로 논문 작성 시 이에 대한 인용표기를 해야 하나요?

A 1) 논문의 초록 또한 표절의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초록이나 연구결과에서 그대로 인용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논문 초록의 특성에 대해서 잘 기술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문의 초록이라는 것은 논문의 핵심내용을 가장 잘 축약된 형태로서 기술하는 것으로서, 개별 논문이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작성되기 마련입니다. 논문의 가치는 새로운 연구결과로서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개별적인 논문들은 각각 새로움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모든 논문 초록은 이런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핵심내용을 잘 요약하도록 기술되어야 합니다. 논문의 핵심내용이 다른데 논문의 초록이 동일할 수 없는 것처럼 연구의 배경 등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타인이나 자신의 이전 초록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동일한 연구배경을 가지더라도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패러프레이징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동일 학문 분야에서 오랜기간 동안 알려져 공감대가 있는 부분은 인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자의 주관이나 고유한 아이디어 등이 수록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인용을 하여 표기함이 맞습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의 초록은 기존의 학문적 공감대나 이론적 배경을 참고하되 저자 자신이 고유하게 표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축약된 문장과 분량에서 발생한 유사도는 논문 심사과정에서 감안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표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정부에서 연구 및 다양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데이터를 이용한 후속 연구는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야만 하는 핵심가치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통계자료의 인용범위입니다. 인용데이터의 범위는 최소화 하면서 해당 출처를 명확히 표기만 해주신다면 이로 인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라는 것은 새로움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공적 데이터를 정당한 방법 (인용) 일부 사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을 만 하다면 이를 제한해야 하는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용법을 활용한 타인 혹은 공적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와 대비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가치가 희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기존 데이터를 꼭 필요한 만큼 재사용한 후속 연구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2.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기존의 기술적 방법을 인용할 때 표기방법이 궁금합니다.

논문 작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기술적 방법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앞서 정의된 책이나 학술지 등에서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법의 정리가 총 8페이지 이내가 되어 짧게는 한 문단 길게는 반 페이지 정도 참고문헌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용표기를 어떻게 해야 표절이 되지 않나요?

A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여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큰 따옴표를 사용하고, 5줄 이내로 인용 문구를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5줄 이상의 분량을 그대로 따올 경우, 문단을 분리하여 기록하고, 각주를 달게 되어있습니다. 즉, 본문보다 작은 사이즈로 문단을 만들어 글자도 좀 작게 기록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선행연구에서의 기술적 방법 등을 문헌연구의 형태로서 논문을 작성할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며, 인용 분량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신규 연구결과로서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Q 3. A연구자가 만든 특허 등록된 연구 결과물을 재활용 시 인용표기 및 설명이 없이 논문을 투고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특허 공개 및 등록을 완료하였고, B기업에 기술이전도 완료하였습니다. 특허등록(공개) 이후 A연구자는 특허청구항에 제시되어 있는 도표나 그림을 그대로 이용하여 따로 인용표기 및 설명 없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A 특허정보의 인용과 관련해서는 학문 분야나 중복게재의 범위와 관련한 다소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로서 연구 업적의 사전 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또 독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특허정보 또한 수록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논문과 특허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인하여 학술 논문에 특허정보를 꼭 수록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견해 또한 존재합니다. 논문의 작성 스타일을 살펴보아도 특허정보의 기입 관련 예가 있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스타일도 존재합니다.

또한, 연구윤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특허정보를 수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인의 특허를 인용 없이 사용했다면 당연히 표절에 포함될 것이지만, 자신의 특허를 인용하기가 꺼려져서 이를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다 완전하고 온전한 형태로써 발표해야 하며, 연구에 관련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밝혀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사전 특허등록 정보를 논문 본문에서 소개하거나 참고문헌에 수록하여 연구결과를 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Q 4. 2014년 “표절” 규정이 제정되기 전 2013년의 출판된 논문에 대한 표절 신고를 현재 어떤 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술지의 연구윤리 규정이 예를 들어 2014년에 처음 제정된 경우, 2013년에 출판된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한 “표절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어떤 판정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규정의 제정 시 부칙 등으로 제정 시기 이전의 논문의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 없더라도 해당 학술지의 방침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술지 규정 이전인 2008년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만들어졌고, 해당 규정을 대학, 학술단체 등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교육부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해당 학술지의 방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지만, 해당 지침 말고도 교육부 지침 등의 적용대상이 되며 해당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의 지침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5. 두 명의 연구자가 공동 연구한 결과물을 같이 인용하여 각각의 논문을 게재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연구실 선배와 공동 주저자로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고, 연구실 선배가 먼저 졸업하면서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해당 논문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추후 후배의 학위논문에도 상당 부분의 내용 및 그림이 겹치게 될 경우,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단독이든 공동저자이든 이미 전문 학술지(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동료심사를 거쳐 논문을 출판함)에 공식 발표한 데이터나 연구 내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학위논문이든 학술지 논문이든 앞서 발표된 논문의 주요 내용과 비교하여 차별화가 있어야 본인의 연구가 학술적인 가치와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이미 학술 논문/학위논문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인용된 부분마다 빠짐없이 그 ‘인용표시’와 ‘참고문헌’ 표시가 확실해야 하며, 2) 우려가 되는 것은, 현재 작성 중인 학위논문에서 이미 발표한 학술 논문/학위논문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먼저 발표된 학술 논문/학위논문의 내용이 현재 작성 중인 학위논문의 내용과 상당히 큰 비중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중복출판’이 됩니다. 인용은 어디까지나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일부’만 하는 것이지, 학위논문 전체가 이전에 발표된 문헌들과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논문 구성을 다르게 하면서, 본인이 발굴하고 연구한 새로운 내용을 많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Q 6. 인용표시 없이 감사의 글로만 표기한다면 표절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재(영문법) 출판을 하면서 먼저 출판된 교재 내용 일부를 별도의 인용표시 없이 교재 '머리말'에 인용된 교재의 저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고만 표기한다면 표절될 수 있나요?

A 자신의 단행본 또는 논문에 타인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구체적인 표현(단어, 문장, 문단)이나 표, 그림, 사진 등을 직접 인용할 때는 인용부호와 함께 페이지 등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고 원저자(또는 출판사 등 저작권을 소유한 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윤리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할 수 있습니다. 단행본의 경우 종종 머리말 등에 포괄적으로 "이 저서를 발간함에 있어 00에게 또는 00저작물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본문에서 활용된 타인의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원저자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연구자의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올바른 인용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정 부분이 직접 인용된 경우, 감사의 글 등에서 포괄적으로 밝히는 것보다 인용부호와 함께 정확한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Q 7. "2008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문 6어절 이상/영문 9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는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관련하여 자료가 궁금합니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에서 국문 6어절 이상 또는 영문 9어절 이상 일치하면 표절이라고 명시한 관련 지침, 또는 공문 등의 자료가 있나요?

A "국문 6어절 이상"이 연속 동일하면 표절로 판단한다는 것은 2008년 교육부가 수행한 "인문 사회과학분야 표절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른 것이며, 많은 대학들이 여기에 따라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문 9어절 이상"으로 표절 기준을 삼는 것은 국내 C업체의 기준입니다. 반면에 해외업체 Turnitin은 "연속 6단어 이상"을 표절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따라서 "연속 5단어 이하"는 표절 검사에서 제외).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1) 논문의 성격에 따라 표절률이 높게 나와도 표절이 아닐 수 있고, 표절률이 낮게 나와도 표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가 직접 논문을 보고 최종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며, 2) 표절검사프로그램은 사용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주체)가 원하는 바에 따라 표절기준이 되는 단어 수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문장유사도는 표절을 규정짓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적절하다고 봅니다. 동일한 단어의 나열 전후로 연결되는 사상들이 기존과 차별화되는지 여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Q 8. 학위논문 작성 중 자신의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면, 이것은 표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H는 학위논문을 준비하여 논문을 작성하려던 중 계획하고 있는 연구 주제와 비슷한 연구 주제가 이미 다른 학교 학위논문으로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간 비슷한 점은 있지만, 연구 가설의 방향이 반대되고, 연구 가설을 이끌어내는 이론적 배경 역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거의 같다는 점에서 이것이 아이디어 표절에 해당하나요?

A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새삼스레 와 닿는 순간일 겁니다. 가설 또는 실험의 방법론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학위논문의 자격과 가치가 없다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가설과 실험방법으로 낸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만, 이전 연구에서 착상을 얻거나 그에 기반을 두어 연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그들과 차별화된 무언가를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의 방법론과 데이터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발표된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비슷한 연구를 통해 과거의 연구가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연구를 통해 과거의 연구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더 나은 결론과 연구 방향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좋은 연구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과거의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자에게 감사를 표시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타인의 이전 논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올바르게 정직한 인용표시를 정확하게 하기 바랍니다. 이는 먼저 가설을 내고, 해당 이론을 만들어내려 노력하였으며, 선도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다른 연구자와 그 저작물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표시하는 연구자의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Q 9. 내주 인용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주를 표시할 때, 보통 (저자명, 출판연도 : 인용 면수)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것과 내주 참고문헌의 경우 정기간행물이면 논문제목(2000.10.10)~ 연월까지 표기하는 게 허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주도 정기간행물이나 인터넷 기사일 경우 연월까지 써도 되나요?

A 내주 표시방법은 (저자명, 출판연도 : 인용 면수)가 맞습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보통 월 단위로 발행되므로 연월까지 쓰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기사는 하루 단위로 발행되므로 ‘일’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인터넷 자료 본문 안에 정확한 날짜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를 써야 합니다.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자료 안에 날짜를 짐작할 수 있는 표시가 전혀 없다면 주석에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표시하고 싶어도 표시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터넷 자료를 확인한 날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자료는 홈페이지 이전, 폐쇄,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사라질 수가 있으므로 “내가 확인한 날짜”가 반드시 표시되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Q 10. 개발된 연구 도구를 원저자에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개발된 연구 도구의 원저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또는, 연구 도구집 등 출판된 도구나 공개된 도구에 관해서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먼저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된 연구 도구”가 이공계 분야의 실험절차와 방법 인지, 인문사회계 분야의 설문조사인지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공계 분야의 실험절차와 방법이라면 특허 출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특허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 가능). 만약 인문사회계의 설문조사 문항이라면, 타인이 공동으로 만든 그 문항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제작한 것처럼 하면 표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제작한 설문조사 문항을 가져다 쓰고 싶을 때는 원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저자가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이 아니거나, 소재지를 전혀 알 수 없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라면 원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는 조건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도구집’ 등 공개된 형태의 연구 도구는 ‘연구 도구집’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발행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11. 인용할 논문 앞면에 명시된 “배포 금지” 관련 문구가 있다면 저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논문의 앞면에 “저자의 동의 없이 인용 및 배포를 금한다(No Quotation or Dissemination without Author’s Permission)”라 되어있습니다. 연구윤리를 지키는데도 저자의 동의를 위해 연락을 꼭 해야 하나요?

A 학술 논문의 기본적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승인 없는 사용을 금하도록 설정해 두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작물에 대한 저자의 권리는 사실상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창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CCL (저작권 라이선스) 설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자가 본인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저자와 이를 인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대적 물리적 거리가 커서 사실상 승인을 받을 수가 없거나, 그것이 하나의 이론처럼 일반화 되어버린 경우에는 바람직한 인용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12 저널에 게재되지 않는 워킹페이퍼를 인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학술 저널에 게재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 등록된 워킹페이퍼(저널 게재가 되지 않은 상태, 공저자 존재)를 인용 또는 편저해서 학위논문을 작성할 경우 일반 참고문헌과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A 일단 문서화된 모든 저작물(외부에 발표가 되든 안 되든)은 모두 저작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자료는 적절한 인용절차를 거쳐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게재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 등록된 워킹페이퍼” 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공개되며 정확히 어떤 성격의 글인지 정확히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범주 안에서 말씀드리면, 인용 또는 편저를 통해 또 다른 글을 작성할 경우 인용 방법은 워킹페이퍼라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저자, 발행연도, 글 제목, 발행기관(기관지명), 권·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워킹페이퍼”임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서>(페이지 158~177)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cre.or.kr/board/?board=textbook&no=1386453>

참고로, 1) 단순 인용일 경우 저자든 저자가 아니든 인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충실히 인용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2) 단순 인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예를 들어, 문단 이상을 넘어서는 범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워킹페이퍼의 발행인(발행기관) 및 저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직접 인용함을 나타내는 방식 (예 : 별도의 단락을 만들어 작은 크기의 문단으로 표시)을 통해 인용토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인을 얻었더라도 각주와 참고문헌 표기는 반드시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Q 13. 연구용역 기관의 표절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용역 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에 대한 연구부정행위(표절 등)를 발견하였을 때 연구 업체에 가할 수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재 수준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A “연구윤리”는 이름 그대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해야 할 “윤리”를 고양하지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가의 문제를 파악하는 기구이며, 그에 대한 후속 제재 절차는 하지 않습니다. 대학 등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소속 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법, 기타 관련법(예 : 김영란법), 공무원 복무 규정, 품위 유지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행법(특히 형법 및 형사 관련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과 법원이 사법적으로 처리할 일이 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제재 조치로서 참고하실만한 것은 “과학기술기본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중간생략〉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 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Q 14. 타인이 자신의 논문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논문 출판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연구원이 2014년 경 국내 KCI등재지 중 한 곳에 출판한 논문이 2019년 올해 제 논문의 고찰 부분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여 외국의 SCI급 저널에 출판한 논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논문을 일대일 비교한 결과, 서론 부분의 상당수 그리도 고찰의 대부분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A 본 센터는 교육정보 제공기관이기 때문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직접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이기 때문입니다.

1) 본인의 연구논문이 타인에 의해 표절되었음이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해당 논문이 출판된 학회 또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연구부정행위는 본인의 피해가 아니어도, 또는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라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그 논문의 저자가 당시에 소속된 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우선적으로 검증 책임을 갖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대학(90% 이상)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제보하시면 됩니다.

- 지침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지만, 익명제보도 가능합니다. 단, 제보는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표절의 경우에는 원문과의 비교 부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허위 제보라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은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연구부정행위 의혹 제보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지침 제19조 1항),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고 판정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지침 제24조 2항). 판정 결과에 따라 논문 수정, 논문 철회, 저자 징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보자가 이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지침 제25조),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 등 상위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지침 제28조), 최종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Q 15.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하기 위한 표절 유사도 검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요즘 많은 이슈가 있는 표절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 유사도 검사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표절 유사도 검사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나요?

A 아마도 '표절'에 적발되지 않고, 논문이 통과될 수 있는 기준을 문의하시는 것 같은데, 표절의 기준은 숫자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학문 분야에 따라 원문을 많이 인용하는 분야가 있고, 적게 인용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문을 아주 적게 인용했다라도 핵심적인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으로 인용했다면 이는 '표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절의 기준을 단지 유사율 '%'로써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고, 1차적으로는 대학이나 학회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며, 2차적으로는 유사율 '%'가 높게 나오더라도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예 : 원문 인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연구, 학계에서 일반적 지식(common knowledge)으로 통용되는 부분 등)를 전문가들이 직접 판정해야 합니다.

Q 16. 두 학회 간의 표절을 확인하였을 때, 표절한 논문을 게재한 학회에 어떤 처벌 및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학회에서 2018년 발간됐던 논문 중 한편을 B학회에서 2019년에 발간된 논문 중 한편에 3개의 단락과 1개의 그림을 각주 없이 사용했음(A학회의 논문 저자가 직접 쓰고 그림도 만들고 했던 내용이라서 분명히 표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재단에 문의 결과 이와 관련된 처벌 규칙은 없으며, 학회 자체 회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타 학회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요?

A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 B가 속한 B학회, 그리고 연구자 B가 속한 대학 등에 1차적인 검증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A학회는 표절 관련 증거를 B학회 및 연구자 B가 속한 대학 등에 “제보”하고, 구체적인 조사와 판정은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대학이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 판정 결과에 따라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대학은 논문 철회 및 그에 합당한 제재(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지침 제26조). 이때 “징계”는 각 기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A학회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피해자인 연구자 A와 A학회는,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 대학이 내리는 판정이나 논문 철회 조치, 그에 따르는 제재 조치 등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지침 제25조에 따라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대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지침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A와 A학회는 “제보자”의 권리로서, 지침 제14조 6항에 따라 조사기관(여기서는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 대학)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B학회 및 연구자 B의 소속대학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17. 자료집 제작 중 원저자의 자료를 수정·보안하게 될 경우 원저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궁금합니다.

공공 기관에서 자료집(매뉴얼)을 개발하던 중 자료를 찾아서 출처를 기입하고자 할 때 1차 자료에서 약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췌 후 수정이라는 표현을 종종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 자료(책에 있는 표, 홈페이지 자료 등)에서 자료를 수정하여 사용하려고 할 때 출처를 작성한 후에 (저자 및 책 제목, 홈페이지 주소 등) 발췌 후 수정을 작성한 후에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A**
- 1) 예, 원저작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쓸 때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쓴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인용자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원저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혹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원저작자는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임의적으로 변형 내지 수정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2) 추가로, 만약 사용하려는 자료가 '무단 복제 금지'가 표기된 자료일 경우
 - ① 정당한 절차를 밟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 허가를 받고,
 - ② 2차 저작물에 정확하게 인용출처를 표시하며,
 - ③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료를 납부한다면 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고서를 발췌 이용하려는 기관에서는 2차 저작물을 제작할 때 원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 범위(누구를 대상으로, 몇 부나 인쇄하여 배포할 것인가),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 절차와 적정한 금액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2차 이용기관이 유상으로 배포하든 무상으로 배포하든,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원저작 기관은 배포 범위를 제한할 권리와 저작권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Q 18. 참고문헌의 표기가 해당 논문의 본문에 사용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은 연구부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논문 본문에는 따로 인용표시가 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해당 참고문헌에 기재된 참고문헌이 해당 논문의 본문에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연구부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정확하게 해당 논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논문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한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문헌에 그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논문에서 인용하지 않은 논문을 참고문헌에 한, 두 개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연구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혹 연구자가 읽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을 과장하여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 인용한 참고문헌만을 참고문헌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에 있으나 논문 본문에서 별도로 인용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것도 연구부정행위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연구자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원저작자의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실제로 인용된 부분도 연구자의 것으로 오해케 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출처표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서지정보 오류 또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논문에 인용표시를 하고 잘못된 서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면 심각한 경우 표절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인용과 그에 따른 서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19. 대학원 석사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되는 경우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유명인들의 잇따른 석사 및 박사 논문 표절로 “학위가 취소될수 있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기정사실화되어 학위가 취소되면 이들의 최종적인 학력은 해당 전공의 수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A 1)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관련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고 발표할 당시의 소속기관에 있습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실효성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해당 학위논문의 승인 과정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고유의 권한으로서 승인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학위논문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해당 대학만이 가집니다.

2) 연구부정행위 검증에도 위의 지침에 따른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판정, 그리고 그 사안의 당사자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조치 등은 제보자, 피조사자, 상위 감독 기관(교육부) 등에게만 알릴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알릴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오히려 해당 학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조사자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검증 과정에서의 절차를 어기거나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정사실화’라는 검증되지 않은 기사에 최종 학력에 대한 추측을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학원 수료’는 석사 및 박사과정에 필요한 졸업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 자격시험과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하며, ‘대학원 졸업’은 대학원 수료를 마치고 학위논문까지 통과한 후 학위 수여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학위논문에서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대학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이며, 학위 취소는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 논문을 써 학위를 받았을 때 해당 대학원을 졸업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학위 취소가 되면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당연히 졸업을 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졸업에 필요한 학점 등을 이수한 것으로 학위논문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수료 상태에 머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 관련하여서는 최종 결정 권한은 해당 대학(원)에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것은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Center for Reserach Ethics Information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II

중복게재



Q 1. 하나의 주제로 포스터 발표와 학위논문을 게재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석사과정 동안 하나의 연구 주제로 1) 포스터 발표한 적이 있고, 2) 석사졸업학위 논문을 작성하려 합니다. 또한, 제가 졸업한 후 3) 저널에 논문을 낼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2) 석사졸업학위 논문의 제목이 1) 포스터나 3) 추후 저널에 낼 논문 제목과 일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달라야 하나요?

A 동일해도 무관합니다만, 포스터 발표, 석사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 수행 및 발표과정에서의 경과나 출처 등을 잘 기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1) 포스터 발표는 프로시딩에 포함되는 형태로서 정제된 연구 결과물은 아닙니다. 학술대회 발표 등을 통해 다른 연구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발전시켜 논문으로서 완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 자료의 일부가 논문에 포함되었다면, 이러한 연구의 심화 과정을 공개하는 차원에서 코멘트, 출처표기, 참고문헌 등에 수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보통 학위논문을 미간행 논문으로 구분하여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학술지가 많이 있습니다. 논문을 출판할 때에 학위논문의 학술지 출판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연구의 발전과정 및 사전에 포스터 발표 및 학위논문으로 사용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 결과물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제목을 명기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출처나 표기법 등이 잘 기재되어 있다면 제목이 동일하거나 조금 다르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술지 독자나 관계자 등이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중복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학문분야에서 오랜 전문가이신 지도교수님께 이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2. 동일 주제로 두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2건을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신청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B학술대회에서 다시 한 번 발표할 경우 출처를 표기하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중복게재(학술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표시한 경우처럼)로 허용이 되지만, 출처 표기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주제로 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 2건을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나요?

A 부당한 중복게재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발표한 후(중복게재), 이를 연구비 수령이나 연구 업적 산정에 활용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전에 발표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심화, 확대되는 후속 논문에 활용하는 것은 중복게재가 아닙니다. B학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전에 발표한 내용으로 발표를 할 때, A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다시 활용한다는 점을 밝히고, 만일 A와 B가 별도의 저작물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움의 요소가 있지 않다면, 이 두건을 각각 업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결국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연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Q 3. A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내용과 동일한 초록 및 연구 결과를 사용하여 B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 저널에 발표된 논문에 수록된 연구 결과를 국제 학회에서 발표하려 하며, 발표 등록을 위해서 해당 저널의 초록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의 발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동일한 초록을 등록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A 학술지는 저마다의 논문 투고 및 출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권고하고 있기에 저자는 선행논문을 출판한 A 학술지의 권고에 따라 출판한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학술지의 가이드라인에 후속 학술대회 발표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허용 된다면 권고하는 방법이나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또한, B 학술대회에는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이미 사전에 A 학술지, 00년, 00호를 통해 출판된 적이 있으며, 어떤 취지에서 학술대회 발표를 원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연구자로서 자신의 선행 연구결과 출판, 발표 정보를 함께 수록함으로써 저널 및 독자가 새로운 연구결과로 오인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정리하면, 이미 논문으로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으셨고, 해당 저널로부터의 동의를 얻은 후 신규 저널 주관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별 논문으로서의 중복 출판과 무관하므로 학술적 의미를 주최 측으로부터 인정받으신다면 학술대회 발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 출판한 논문을 토대로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과 취지 등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저널과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4.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사학위 논문 이전에 학회지에 게재했던 C와 D 2편의 논문을 정리하여 H논문을 작성하려 합니다. 전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데, 이런 경우 박사학위 논문에 표기를 하면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나요?

A 박사학위 논문에 이전에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자신의 학술지 논문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종종 학술지에 논문 발표 => 학위논문으로 재활용 => 학술지 논문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대학과 학회가 그것을 용인하고 있고”, “원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면”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속 논문에서 이전의 내용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전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학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논문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여러 번 재활용함으로써 “연구실적을 중복하여 쌓거나, 그 과정에서 연구비 수혜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는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게재한 선행 논문을 정리하여 학위논문으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선행 논문에 대한 출처를 명백히 밝히고, 연구 실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 5. 국내 학술지 논문을 해외 학술지 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했던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투고하고자 할 경우 논문이 게재된 국내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얻으면 해외 학술지에도 투고할 수 있고, 중복게재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또한, 편집위원에서 이런 경우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는 않나요?

A 우선 '중복게재(이중출판)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학문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얼마든지 몇 번이든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1) 상대 저널에게 이것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문건임을 밝히고, 신규 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탁월성, 독창성, 확산을 위해 상대측 저널이 재출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종 타 언어권의 논문의 경우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이 글의 신규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서 단순히 번역한 글을 마치 새로운 글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가 벌어지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표적인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있습니다.
- 2) 상대방 저널 측에서 해당 글을 게재하기로 승인한다면 반드시 해당 글에 "이미 쓰인 글"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표기 양식은 해당 저널 측의 가이드에 맞춰 작성해 넣으면 되겠습니다.
- 3) 아울러, 연구자는 이것이 새로운 글이 아닌 하나의 글로 두 개의 성과를 만든 것이므로 이를 각각 성과로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과관리는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학술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알려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Q 6.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중복게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 1저자로 저술한 SCI 논문들만을 이용하여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학위논문은 출판 혹은 영리를 위한 논문이 아니기에 자신의 학위 논문에 자신이 저술한 SCI 논문들을 그대로 적어도 될까요?

A 대체로 이공계의 경우 이러한 학위논문 작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계마다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야 및 학교(학과/단과대/대학원)의 졸업학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으로 발표 시, 대학 및 학과의 규정에 따라 학위논문 심사위원들과 학술지 편집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양쪽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학위논문 심사위원들에게 학술지 논문을 재활용하였음과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학술지 편집위원들에게는 해당 논문을 학위논문에 사용하겠다는 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위논문에는 선행 논문이 사용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예 : 본 챕터는 000학술지 XX년 00권 00페이지에 실린 본인의 논문임 등..)

물론 이 역시 학계마다 달라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인용과 출처표시는 과하게 대처하는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낫습니다.

Q 7. 부당한 중복게재를 하였을 경우 처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정되었을 때, 처분 사례가 있나요? 만약 단 1회인 경우가 없다면 2~3회인 경우라도 아니면 횡수에 상관없이 처분 사례 등이 있나요?

- A**
- 1) 만약 '부당한 중복게재'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연구자 소속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로부터 조사와 판정을 거쳐, 해당 논문(또는 연구 보고서)은 철회되고, 해당 논문(또는 연구 보고서)을 작성하는 데 지출된 연구비는 모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처분입니다.
 - 2) 또한 그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연구자 소속 기관의 인사 규정에 따라 가볍게는 주의, 경고 등 으로부터 무겁게는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위의 고의성 여부, 유사한 행위가 과거에도 얼마나 일어났는지 여부, 해당 행위 결과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3) 그리고 부당한 중복게재 판정 결과는 연구재단에 보고되며, 과실을 범한 연구자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 과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8.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의 결과물(사업보고서)을 수정/보완하여 등재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결과물(보고서)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든 것이며, 따라서 출판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학술지 게재 시 이러한 내용을 밝히는 것만으로 게재가 가능한가요?

- A**
- 1)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의 소유권은 그 지원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를 지원한 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사업보고서를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사업 보고서의 학술지 발표를 권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외부기관이 사업보고서의 학술지 발표를 허용했다면 다음의 조건을 지켜서 논문 발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사업보고서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함을 학회 편집진에 알려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학술지 논문 본문에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전시킨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것,
 - 3) 연구과제 사업보고서와 학술지 논문 발표를 모두 활용하여 중복으로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거나, 연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도록 할 것.



9.

학술지 투고시 내용을 분할하여 두 편으로 게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사 논문으로 학술지 투고를 준비 중인데 논문의 내용이 방대하여 소논문 분량으로 축약하기가 쉽지 않고, 내용상 일부분만으로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편으로 분할(예 : 1보-00 기법의 개발/ 2보-00 기법의 타당성 검증)하여 동일한 학회지에 차례로 게재하고자 하는데 연구 윤리상 문제가 없나요?



- 1) 질문자의 동일한 연구 결과(raw data)를 두 논문에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져서 두 논문이 개별적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학술적으로 새로운 가치”(novelty)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두 논문으로 발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학문 분야 전문가의 판단이 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가 되지 않는다면, 중복게재의 한 유형인 ‘논문 쪼개기(살라미 출판)’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라미 출판은 연구 수행 후 하나의 저작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고의성을 가지고 여러 논문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논문이 여러 개로 나누었을 때보다 하나로 출판되었을 때 더 일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두 논문이 하나의 논문으로 출판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출판물 수를 늘리기 위해 논문을 분할하는 것은 살라미 분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만약 중복게재(논문쪼개기 출판)에 해당하지 않아 1편의 논문을 먼저 게재한 후 다른 1편의 논문을 추가로 (본인의 이전 연구 결과물들을 전재하여 재출판하거나 편집하여) 재출판할 경우, 머리말, 목차, 각 챕터의 첫 페이지, 참고문헌 등에 재출판 사실과 그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더 지켜져야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들을 왜 재출판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이 머리말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물은 언제나 새로운 학문적 가치를 갖는 것만을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표된 바 있는 연구 결과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로서 연구 공동체에 어떤 학문적 가치 기여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연구 결과물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다거나, 그 간의 새로운 연구성과들을 업데이트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새로운 학문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해당 연구 결과물들이 이전에 발표된 매체들(저널 논문을 발간한 학회, 출판사 등)로부터 그 연구 결과물들을 재출판해도 좋다는 사전 승인과 저작권 계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 연구자가 저널에 논문을 발표할 경우, 또는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판할 경우, 그 저작물의 저작권 중 일부는 그 저널 학회나 출판사에 양도됩니다. 따라서 연구자 자신이 원저작자라 하더라도, 임의로 자신의 논문이나 책을 재출판하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학회나 출판사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 분명한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3) 이전의 연구 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재출판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본인의 연구 업적을 중복으로 인정받거나, 연구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처표시 없이 재출판된 연구 결과물들이 새로운 연구 업적으로 인정되거나 연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속 기관에 정직하게 알려야 합니다.
- 3) 본 사안과 관련하여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에 문의하여 해당 학술지가 규정하는 출판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하여 최종 투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 참고자료 : ① 웹툰으로 이해하는 연구윤리 4화. 논문썬개기
https://www.cre.or.kr/bbs/board.php?bo_table=2400&wr_id=1388526
 ② 하나의 연구를 여러 개의 논문으로 투고 시 중복게재 여부에 대한 문제
https://www.cre.or.kr/bbs/board.php?bo_table=1300&wr_id=1384546&sfl=wr_subject&stx=%EC%A4%91%EB%B3%B5%EA%B2%8C%EC%9E%AC&sop=and

10. 중복게재의 기준은 논문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서를 출판하고 초판, 재판, 3판 등이 나온 경우 초판을 제외한 재판, 또는 3판의 저서를 갖고 연구실적물로 인정받고자 신청한 경우 이를 실적물로 인정하여 실질적 이익(재임용, 승진, 연구비 수혜 등)을 받게 된다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는지요?

- A** 1)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엄격하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연구 성과물은 어떤 매체, 어떤 언어를 통하여 발표되더라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시 발표할 경우 모두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구두 발표 내용을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을 구두로 다시 발표하는 것도 엄밀하게는 중복게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논문 이외의 레터, 프로시딩, 모노그래프, 포스터, 책자 등도 모두 중복게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학문 분야의 관행에 따라, 그리고 학술지 편집진 또는 학술행사 주최 측의 판단에 따라 “수정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부여되었다” 또는 “다시 발표하더라도 충분히 학술적 가치가 있다” 등과 같은 판단을 받아 ‘허용되는 중복게재’가 일부 있습니다.
- 2) 따라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 논문을 정리 또는 수정 보완하여 책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중복게재이며, 이것을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만, 두 저작물의 독자층이 확연히 다른 경우(예 : 전문적인 학술 논문을 일반 대중을 위한 서적으로 전환하여 출판하는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3) 따라서 원칙적으로 논문을 서적으로 출판할 경우 이를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여 점수를 부여하거나 연구비를 지급하는 일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미 출판한 책을 재판, 3판 등으로 재출판하면서 각각을 다시 연구 업적으로 중복하여 인정받는 행위(점수를 부여받거나 연구비를 수령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부 대학 교수들이 옛날 교재를 일부 수정하여 출판하면서 마치 새로운 교재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판매한 ‘표지갈이’ 사건이 있습니다.
- 4) 다만 ‘연구윤리’는 각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교수의 연구 업적을 널리 확산시키고, 교수의 대외 학술활동을 장려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경우에도 각각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한다”와 유사한 조항이 있다면, 허용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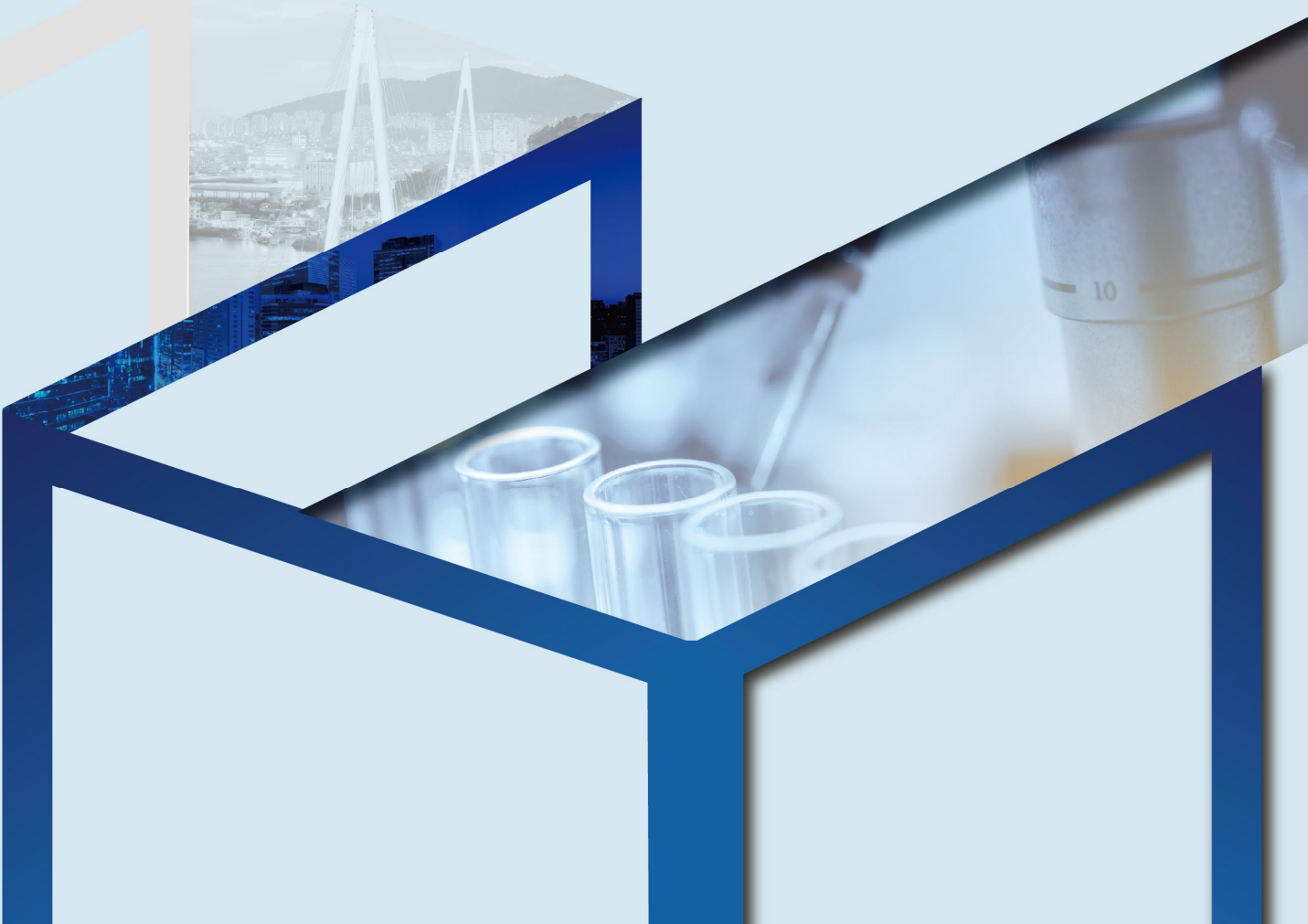
Center for Reserach Ethics Information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III

저작권 침해



Q 1. 여러 강사의 강연록을 자료집으로 만들 때 저작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학술대회, 해외석학 초청강연, 등 그 외 국내 강사들의 강연록 등을 자료집으로 묶어서 편집 후 출간하려면, 1) 일일이 저작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2) 만약 그 강연 내용이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가 되었다면 그 학술지와 저작권 문제를 정리해야 하나요?, 3)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경우 자료집으로 묶으면 ISBN을 받을 수 있나요?, 4) 동의서에도 여러 종류가 있던데,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5) 같은 프로젝트팀의 대학원생들의 논문도 자료집으로 묶을 계획인데, 그때의 저작권 문제도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질문의 답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미 발표된 연구자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을 후속되는 연구 성과의 확산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미 어디에 발표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물론 출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1) 예. 대개의 경우는 학술회의 등의 원고를 받을 때 “당신이 제출한 원고의 저작권은 학술회의 주최측에 귀속됩니다.”와 같은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 동의서에 근거하여 자료집을 제작하는데, 만약 이와 같은 동의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 2) 예.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의 저작권은 보통 복제권, 배포권 등과 관련하여(여기서 말하는 저작권이란 저작 인격권이 아니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으로 전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지만, 후자는 남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학술지가 갖게 됩니다. 발표자가 이전에 학술지에 발표했던 내용을 학술회의 강연 자료로 재활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출판사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여야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술지와 발표자 사이의 저작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3) 예. 출판사를 통해서 발간한다면 출판사의 절차에 따라 ISBN을 부여받게 됩니다. 물론 자료집에 있는 모든 개별 자료들에는 원래의 발표 출처와 재사용 허가 내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4) 특별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의서 양식 또한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강연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학회들은 자체 저작권 관련 동의서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 5) 예.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물도 교수들의 연구 성과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추고 있고,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외국 저널들은 내용만 좋다면 고등학생이 쓴 논문도 교수가 쓴 논문과 동등하게 발표해주고 그 저작권을 인정해줍니다.

Q 2 매체의 간행물에 게재된 자료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논문 내용에 메커니즘이나 실험 설명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다면 표절인지 아닌지 해당 잡지사나 신문사의 동의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A
- 1)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 및 출처표시를 명확하게 한다면 논문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 2) 그러나 만약을 위해 원저자와 출판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구글”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한 후, “도구” 메뉴를 클릭하면 “재사용 가능”, “비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등 저작권 유/무를 설정하여 걸러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 3) 문의하신 바와 같이 1-2개 이미지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만약 필요한 이미지의 양이 과도하다면 정식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3 온라인 강의교안 제작에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자료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B교수가 온라인 강의교안 제작을 위해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연구부정행위 중 표절에 해당하나요? 저작권 문제도 해당하지 않나요?

- A
- 1) 교육부가 고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1항은 이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사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에 따른 사업,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그밖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연구 저작물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 교안’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서 규정하는 표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학 자체의 규정에서 ‘온라인 강의 교안’을 연구 저작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면, 대학 자체의 규정에서도 “연구부정행위 중 하나인 표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 교안을 ‘연구’ 저작물로 볼 수는 없더라도, 원작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노력이 구현되었다면, 충분히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 내용을 이용하였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3)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므로, 원작자가 해당 교수의 저작권 침해를 법원에 호소하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학 자체의 징계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교수에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Q 4.

연락이 되지 않는 원저작자의 연구 도구 승인(동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어판 연구 도구 승인을 받고자 개발자에게 메일을 여러 차례 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소속대학으로 전화 문의했더니, 몇 년 전에 은퇴하셨고,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대신, 한국어판 도구의 타당성을 재평가한 연구자에게 메일을 하여 사용승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발자가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재 국내의 많은 대학들은 모든 저작물의 원저작자와 일일이 연락할 수 없기 때문에, '신탁관리제도'와 '법정허락제도' 등을 활용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저작권 업무 대행업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1) 신탁관리제도 :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찾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행위에는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데, 이용 허락에 소요되는 노력이 매우 크다면 저작물 이용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져 저작물의 이용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를 찾아 직접 허락을 받기 어렵다면 이용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수탁받아 이를 저작권자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저작권법은 이 제3자를 '신탁관리단체'라고 합니다.
- (2) 법정허락제도 : 만약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5. 외부 연구원이 S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보고서에 그대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연구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을 외부 연구자가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표현이나 내용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용역보고서로 제출한 경우 본 연구원이 해당 외부 연구자에 대하여 제재하거나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해당 부분이 연구윤리 위반이냐에 대해서는 따져야겠지만, 명백하게 표절로 간주되는 경우 본원이 외부 연구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거나 연구윤리 위반으로 해당 연구자의 기관에 문의할 수 있는지요?

- A**
- 1)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 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습니다. 따라서 A기관의 보고서를 B기관의 연구자가 표절했다면, 일단은 B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검증 책임이 있습니다. 지침 제14조 2항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갖추어(예 : 두 자료를 인쇄하여 표절 의심 부분을 형광펜 등으로 표시) B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 2) B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 사안을 검토하여, 표절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판정은 B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자율성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A기관이 원하는 대로 판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침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지침 제28조에 따른 재조사 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사와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지침 제27조에 따라 제3의 ‘전문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B기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판정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표절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관장은 자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지침 제26조). 그러나 기관장의 징계 역시 B기관의 자율성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A기관이 원하는 대로 징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의 산하 기관이며,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일 경우 필수적으로) 기관장은 판정 결과를 지침 제29조에 따라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는 지침 제30조에 따라 부정행위자에 대해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환수, 연구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4) 연구 보고서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상, 형사상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소송은 주로 경제적인 이익의 피해 여부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실익’이 있을 것인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윤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법적 절차는 마지막에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입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Center for Reserach Ethics Information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IV

저자자격과 올바른 저자표기



Q 1. 연구 보고서의 기여자 선정에 관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회의에 참석하고 연구 성과물을 제출해도, 연구 보고서에 기여자로 이름이 들어갈지 아닐지는 연구 팀장이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 상으로 어떤 규정이 있나요?

- A**
- 1) 연구 보고서에 포함될 저자들의 숫자와 순서는 연구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연구 과제들의 성격에 따라, 국가 또는 협회 등이 획일적이거나 수량화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학문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저널에 들어가 보면 'policy' 부분에서 'authorship' 항목으로 규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는 것이 그 분야에서는 가장 표준이라고 하겠습니다.
 - 2) 연구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모두 '부당한 저자표기'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 3) 어떤 사람이 단지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서 연구 보고서의 저자로 자동으로 이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연구의 기여 정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기여가 큰 사람이 제 1저자, 그 다음이 제2저자... 이런 순서로 저자자격을 정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 단순작업에만 참여한 아르바이트생(주로 학부생, 대학원생 등)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연구에 참여했다고 해도 저자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4) 원칙적으로 '저자'가 되려면 연구 주제 선정, 연구방법 설계, 실제 연구진행, 데이터 분석 및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과 수정 등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각자가 이 과정들에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자격과 순서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한 사람만의 판단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참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CMJE 등에서는 아예 연구 초기 단계에서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미리 저자자격 유무와 그 순서를 정해놓으라고(가급적 "문서"로써)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본 센터에서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re.or.kr/board/?board=thesis_articles&no=1389463
http://www.cre.or.kr/board/?board=thesis_articles&no=1389269
http://www.cre.or.kr/board/?board=news_webzine&no=1389029
 - 6) 연구에 기여했으나 공동저자 자격까지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기여자들의 경우에는 'acknowledgement' 또는 'contribution' 항목에서 그 이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Q 2

학술지 논문 투고 시, 제 1저자(주저자)가 2명일 때 기술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2명이 함께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여도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주저자를 2명으로 기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1) 주저자를 2명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2) 모든 학술지 또는 일반적인 기술 지침이 있습니까? 보통 주저자, 공동저자 순으로 이름을 기재하고 각주에 따로 표시하는 논문들을 볼 수 있는데, 복수 주저자에 대한 기입 방침이 있나요?, 3) 만약, 학회마다 다르다면 각 학회지에 별도로 문의를 해야 하나요?

A

- 1) 학회 및 저널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외국 저널들에서는 ‘공동 주저자’ 또는 ‘공동 제1저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co-first author’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동시에 인쇄될 수는 없으므로, 한 사람의 이름은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각각 ‘first co-first author’, ‘second co-first author’라고 합니다.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야 하는가는 공동 주저자 합의로 정해야 할 수도 있고, 학회 자체 규정(예 : Last name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 2) 공동 주저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 개별 대학마다 다릅니다. 교수 평가 시, ‘first co-first author’와 ‘second co-first author’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대학도 있지만, ‘first co-first author’만 주저자로 인정하고, ‘second co-first author’는 공동 저자(co-author)로만 인정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 3) 해당 논문의 Impact Factor는 2인의 공동 주저자가 나누어 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IF 10.0의 논문을 발표했고, 2인의 공동 주저자가 있다면 각각 5.0씩 IF를 기록하게 됩니다.
- 4) 공동 주저자를 인정할 것인가, 그 저자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등은 개별 학회마다, 개별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직접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동 주저자가 인정되려면 저자 A와 B가 서로의 연구 기여도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논문의 일부분을 수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저자 A와 B가 동시에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Q 3. 국제의학저널편집인협의회(ICMJE)의 저자자격(authorship)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 1) 국제의학저널편집인협의회(ICMJE)의 저자자격(authorship) 기준과 교육부 훈령으로 제시된 '연구윤리를 위한 지침' 제3장 제12조 1항 4. '부당한 저자표기'는 어떠한 관계로 봐야 하나요?
- 2)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국제의학저널편집인협의회(ICMJE)의 저자자격(authorship)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 3)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판단 시 교육부 지침과 국제의학저널편집인협의회(ICMJE)의 저자자격(authorship) 기준에 대한 위계를 인정하여 교육부 지침이 상위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나요?

- A**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부당한 저자표기' 항목은 "연구에 기여도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와 "연구에 기여도가 있음에도 저자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기여도가 있다/없다"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침에 나와 있지 않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ICMJE, IEEE 등의 저자자격 기준입니다. 즉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원칙이고, ICMJE, IEEE 등의 저자자격 기준은 그에 대한 예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부당한 저자표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해당 학문 분야에 따라, 그리고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각 학회에서 정한 저자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예시된 ICMJE 저자자격 기준은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채택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의학 분야에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IEEE 저자자격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연구논문 안에서 누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가는 질과 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 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공식적인 법령(교육부 훈령)으로 발표한 것이고, ICMJE, IEEE 등의 규정은 해외의 민간 학회 대표들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원칙이고, ICMJE, IEEE 등의 규정은 그 원칙에 대한 예시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4

A의 데이터를 단독으로 B가 논문에 투고하였을 경우 적절한 저자표기가 궁금합니다.

학부생 A는 약 1년 반 동안 학교 실험실에서 주제를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 동안 A가 진행했던 실험의 데이터는 A가 가지고 있었고 A의 연구를 함께 하고 지도한 B박사는 논문에 필요한 실험을 A에게 맡겼습니다. 학회 포스터 발표에서 B는 A를 제 1저자의 이름으로 넣었으나 논문 투고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추후 A는 기관을 옮긴 후 해당 학교에서 1년동안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문을 쓰려고 B박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B박사는 이미 논문을 혼자 다 썼고 투고 예정이며 A는 저자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아이디어나 개념을 설정할 필요 없이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실험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논문이고 연구의 데이터는 A가 실험을 하고 수집해서 가지고 있다가 B박사의 지시로 데이터를 보낸 경우 A는 저자의 자격으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의 글에 기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A

- 1) 원칙적으로 논문의 저자는 연구설계, 실험수행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과 해석, 논문 원고 작성, 원고의 퇴고와 최종 승인 등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지적으로(intellectually) 중요한 기여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단순히 실험을 반복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사람은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저자 명단이 아닌 '감사의 글'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2) 그러나 이 경우는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실험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논문"이라고 하니, 다르게 생각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문 연구의 일반적인 성격에서 생각할 때, 연구자의 독창적인 분석과 해석 없이, 단순히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실험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과연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학회 포스터 발표에서는 A학생이 제1저자였는데,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논문에서는 B박사가 단독 저자라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 3) 그러나 만약 학회 포스터로써 발표한 연구내용과 B박사가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는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B박사는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학회에 대해 "왜 A학생이 제1저자인 포스터 발표 연구내용이 논문으로 전환되면서 B박사 단독 저자가 되었는가"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B박사는 A학생의 연구실적을 가로채려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며, 이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학생은 B박사가 논문을 발표하려고 하는 학회에 "예전에 다른 곳에서 발표된 내용이 논문으로 발표되려고 한다"는 중복게재 의혹과,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저자가 변경되었다는 의혹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 4) 만약 학회 포스터 발표에서 발표한 연구내용과 B박사가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이 동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더라도, B박사가 새로운 분석과 해석을 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새로운"(substantially new) 논문을 작성했다면 B박사는 새로운 논문에서 단독 저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학회 편집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B박사가 발표하려고 하는 논문의 내용이 예전의 학회 포스터 발표 내용과 실질적으로 달라서 충분히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있고, 따라서 A학생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기만 했을 뿐이며 저자가 B박사가 단독 저자로 표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감사의 글'에만 A학생의 이름이 표기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학생이 여전히 이의를 갖고 있다면, 학회 또는 B박사와 관련된 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상위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5. 논문의 제 1저자, 제 2저자, 교신저자 등을 분류하는 저자의 자격 기준 및 윤리 준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 1) 저자의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①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② 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주요 내용을 결정적으로 고치며, ③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1저자(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 한 과제에서 작성한 논문인 경우 참여연구원 중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 1저자(주저자), 과제책임자가 교신저자, 과제참여연구원이거나 혹은 참여연구원이 아니어도 해당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공헌도가 있을 경우 공동저자로 분류되는 것인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 2)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타 학교, 기관의 과제에 참여, 혹은 데이터제공으로 공동저자로 기재된 경우 해당 공동저자 기재되는 사항에 대해 원소속기관의 선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원소속기관의 자체 선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소속이 아닌 타 기관 과제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기재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3) 한 연구자가 외부로부터 실험의뢰(혹은 시험분석의뢰 등) 대가를 받고 용역 개념의 시험분석 등이 진행하였고, 해당 시험데이터를 활용, 기재한 논문에 공동저자로 기재된 경우, 해당 사항은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하는 연구윤리 위배사항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해당 실험의뢰 등이 국가연구과제에서 주관-참여기관 등 동일과제 협의체에서 진행되었다면 공동저자로 기재하는게 위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1) 해당 연구나 논문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가 제 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며, 연구 과제에 대해 잘 알고 투고 학술지 편집인이나 다른 연구자 및 독자들의 문의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연구자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연구과제 책임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정해진 공식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참여한 연구진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정해 실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혹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저자의 범위나 순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당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공헌도가 있을 경우”는 이 문장만으로 본다면 공동저자이기보다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언급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 생산, 분석,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공동저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저자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공헌보다도 해당 연구에서 ‘학술적(지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학문 분야별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 2) 공동저자가 될 수 있는가 이전에, 타 기관 연구과제에 참여할 때 승인을 받을 수 있는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A대학 소속 교수 또는 연구자가 B대학 소속 교수 또는 연구자가 주도하는 과제에 참여할 경우, 이에 적용되는 A대학의 직무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원 소속 기관의 직무에 소홀하면서 타 기관 연구과제에만 전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 원 소속기관의 직무에 소홀하면서 외부 활동이 지나치다면 이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A대학 소속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B 대학 주도 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비,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당연히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 A대학의 자원, 장비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B대학에 제공하여 연구 결과물을 만들었다면, 이 역시 A대학에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차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번

거롭더라도 소속기관의 규정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부당한 저자표기' 이전에 '장비윤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원과 장비가 활용될 텐데, 소속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진행했다면 소속기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 연구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연구자원과 장비가 유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소속기관의 연구자원과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장비윤리'라고 합니다. A기관이 B기관의 연구자에게 실험 용역을 의뢰할 경우, 먼저 A기관과 B기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 계약 조건에 따라 B기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B기관의 연구자가 실험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A기관의 보고서에 실험을 수행한 연구자의 이름과 실험에 협조한 B기관의 이름이 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장비윤리에도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저자표기도 지킬 수 있습니다.



6.

부당한 저자표기에 관하여 조치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 부당한 저자와 그 저자의 이름을 넣은 저자의 징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부당한 저자표기라는 결론이 나왔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26조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제재 또는 징계 조치는 연구진실성위원회(및 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 규정에 의한 관련 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속합니다. 대학등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해당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감봉, 견책, 정직, 파면, 해임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2)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단할 때에는 지침 제13조 ①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다만 지침 제23조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4) 통상적으로는 1)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에 더하여, 해당 논문을 학술지로부터 철회하고, 해당 연구 과제로부터 얻은 이익을 환수하며, 신규 연구과제 참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7. 동의 없이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자 철회 조치가 궁금합니다.

최근 어느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제 이름이 교신저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논문이 진행되는지도 몰랐을 뿐더러 제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교신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교신저자 메일주소도 제주소가 아닙니다.) 그 연구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회지에 저자 철회요청을 했더니,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연구부정행위로 철회가 되면 등재학술지 관리지침(제9조 개정,2017.04.06.) 에 따라 조치에 따라 논문 철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②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 ④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을 통보
- 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 ⑥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데, 제가 잘못된 부분도 아닌데,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 저자 철회와 관련하여 어떤 대안이 있나요?

- A**
- 1) 위 내용은 '부당한 저자표기' 유형 중 '도둑 저자'(theft author)에 해당하며, 타인에 의해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사례입니다.
 - 2)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논문 저자가 이에 상응하는 제재 및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함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그러나 해당 학회로서는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부당한 저자표기' 행위에 동조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뀐 것인지, 조사위원회를 거쳐 정확한 사실 판단을 내린 후에야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는 구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따라서 문의자께서는 "해당 연구과제 및 논문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명의를 도용당했음"을 소명하는 문서를 작성하셔서, '내용 증명' 또는 '공증'의 형태로 해당 학회에 제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8. 논문 데이터 오류 수정에 기여한 B를 공저자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가 단독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보고서를 학술지 논문으로 작성하는 과정 중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이에 기여한 B를 공저자로 넣었는데, B가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저자자격 및 올바른 저자표기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
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논문의 저자로서의 합당한 역할 내지 기여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공동 저자 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학술지 논문이 작성됨에 있어서 그 역할이 저자로서 합당한지에 대하여 저자 간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보고서에 없던 이름이 저자로 올라간 경우
보고서에 저자 이름이 없었다고 해서 이를 활용한 학술지 논문에 저자표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만들 때 저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학술지에 저자로 표기하는 것은 정당하며,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의 내용과 비교해서 학술지 논문의 내용이 얼마나 새로운지(방법론과 결론의 방향에 영향을 미쳤는지), 제 2저자를 통해 추가되고 수정된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서와는 다른 학술적 가치를 갖는 독자적인 연구물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저자의 역할이 저자로서 등재될 만큼의 실질적인 역할이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연하자면, 1차 보고서와 비교하여 학술지 논문이 별도의 독자적인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새로움의 요소가 가미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 1차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학술지에 활용된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출처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이론적 배경 및 연구결과가 대대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으며, 일부 결과 값에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한 것으로 보아, 뭔가 학술적 가치를 담은 새로운 요소가 가미되지 않아 별도의 저작물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실험이나 조사로써 데이터를 대폭 추가하거나 교체하였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원본 데이터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 정도로는 공동저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문의자가 부당한 저자표기로써 논문 철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보고서의 내용과 학술지 논문 간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역할이 보고서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타당하게 소명하면 됩니다. 논문 저자의 권리는 학자로서 명예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해당 논문에 대해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학계에서도 부정한 방법으로 저자 자격 및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주지하시어, 해당 저자가 저자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깊이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9. A교수가 지인B의 부탁으로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지인B의 자녀를 저자로 등록하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에 따른 법령이 궁금합니다.

A교수의 지인B는 A교수에게 자신의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 지인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또한, 이를 A교수가 수락했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게 되나요? 더불어 공저자로 등록된 지인B의 자녀도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법에 위촉되나요?

- A**
- 1) ‘처벌’이라는 표현이 ‘형법상의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본 센터에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B가 자신의 자녀C를 논문 공저자로 넣어달라고 A교수에게 부탁했다”고 질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의 ‘부당한 저자표기’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가 연구 기여가 없음에도 논문 공저자로 포함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일단 문제의 논문에서 ‘부당한 저자표기’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해당 논문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이므로 부당한 저자표기가 아니라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내지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로 등재된 것입니다.
 - 3)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은 당사자들이 속한 대학 등 소속기관과 그 논문이 발표된 학회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학 및 학회 등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안을 제보받게 되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연구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가를 판정합니다.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해당 기록을 대학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전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 등을 열어서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주의, 경고 등 가벼운 징계부터 파면, 해임 등 무거운 징계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여부 판정, 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수준 결정 등은 모두 각 기관의 자율성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스스로의 자율성에 따라 이 사안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할 수도 있고, 인사위원회 역시 스스로의 자율성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4) A, B, C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법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저자표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부과할 것입니다. 학회에서는 해당 논문 철회, 해당 학회에서의 활동 정지, 대학 등 소속기관에서는 자체 인사 규정에 따른 징계, 그리고 연구재단 등에서는 연구과제 공모에서의 지원 제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Q 10. A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 B가 논문의 모든 내용을 새로 작성하였다면, 저자의 순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B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연구를 A가 부사수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실험 전체를 A가 수행하였고,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졸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이 SCI 저널에 투고하기에 내용적 보안이 필요하여 지도교수가 B에게 수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논문을 전체 폐기하고 새로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raw data를 받아서 데이터 정리부터 주제 변경 및 논문 작성을 새롭게 마쳤습니다. 이 경우, 제 1저자와 교신저자의 위치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연구자로는,

1. A : 실험을 수행, data 정리 및 논문 작성 (비록 폐기되었지만)
2. B : 연구 기획, data 정리 및 논문 작성
3. 지도교수 : 연구 책임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 A**
- 1) 대부분의 저널들은 저자됨(authorship)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기에 저자됨을 결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투고하실 저널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그리고 학문 단체 간 합의된 바는 없지만, 저널 편집인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가이드라인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 권고로서 ICMJE는 ▲ 연구의 개념, 설계, 데이터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의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한 자 ▲ 투고 논문에 대해 최종 승인한 자 ▲ 연구의 정확성·진실성 등 모든 측면에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저자로 인정합니다.
 - 2) 저자됨 문제의 핵심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각자의 역할 및 기여도에 따라 적절한 저자 분배 및 순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연구에 참여한 일부나 특정 개인이 결정할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진 간 합의 없이 저자됨을 등재한 경우 부당한 저자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연구나 논문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며, 연구 과제에 대해 잘 알고 투고 학술지 편집인이나 다른 연구자 및 독자들의 문의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연구자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각 학문 및 연구 분야에서 정한 저자의 종류에 부합하는 기여도에 대한 가이드가 존재하니 이를 검토하신 후에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11.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4호에서는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부당한 저자표기라 정의하였습니다. 혹시 이에 반대되는 경우, 즉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는 부당한 저자표기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지도교수를 교신저자 등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 A**
- 1)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논문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석박사 과정의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바람직한 저자표기는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위논문이 마무리되기 까지 지도교수가 아이디어 발굴, 연구의 설계 및 데이터 분/해석, 논문 작성 등에서 기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3) 그러나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 기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와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더 나아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합니다.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기여(저자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떤 단일의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학위논문 과정이나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도교수님이 지적 기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학위를 받은 학생 단독 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 12 주 교신저자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와 관련하여 연구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1저자의 경우, 해당 논문의 기여도가 같다고 표기되어 있다면 2인이 될 수 있고, 주교신저자의 경우에도 2인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학술적으로 맞는지, 혹은 이 부분이 연구윤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A** 1) 교신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이나 그 이후 학술지 편집인과 교신하면서,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 소통에 연구진을 대표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논문의 공동저자라고 하더라도 논문을 투고하고 그 과정에서 편집자와 소통하고, 논문의 투고가 완료된 후에는 독자와 소통하는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며 그 사람을 교신저자라고 합니다. 보통 학술지와 소통하는 사람은 1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신저자는 1명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학술지의 내부 규정에 따라 2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한 논문의 서로 다른 연구를 맡아 협력 연구를 하는 경우, 각 연구실에서 한 명씩 교신저자를 두어 독자에게 서로 다른 연구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때, (2) 제 1저자이자 교신저자가 학계를 곧 떠날 수 있는 박사과정학생이거나 박사후 연구원일 경우, 대신 독자의 질의에 답하고 부가적인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하기 위해, 3) 한 명이 다른 임상시험등록과 같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신저자에 대한 규정은 학문분야에 따라 다르며 학술지 내부 규정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 2) 다만, 일부 저자들은 소속 기관에서 실적 평가를 좀 더 잘 받기 위해 교신저자를 두 명으로 하게 해달라고 한다거나, 제 1저자를 두 명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무팀에서 주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인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13. 미성년 부당저자의 연구부정행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윤리 관련 업무 진행 중 미성년 저자 연구부정 검증 결과(부당저자)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 미성년 저자는 A라는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 후, 논문의 공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 문제가 되는 논문의 교신저자는 A가 아닌, B와 C라는 교수 2명이 교신저자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 B와 C는 미성년 저자의 연구 참여 배경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 미성년 저자 연구부정 검증 관련하여 논문이 문제가 되자,

A교수는 미성년 저자의 참여 배경이 A교수와 관련이 있으니 B와 C에게는 면책을 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 1) 이러한 경우에 논문의 교신저자인 B와 C의 면책이 가능한가요?
- 2) 이의신청을 수용해야 하나요?
- 3) 이의신청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요?

A 1) 미성년 저자는 A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 활동을 한 후, B와 C의 교수가 교신저자로 작성하여 출판한 학술지에 저자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성년 저자가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2) B, C교수와 함께 출판한 학술지에서 미성년 저자의 지적 기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서 등재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되어 연구부정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B, C교수는 미성년 저자의 연구 참여 배경과 무관하게 부당한 저자표기 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므로 피조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A 교수는 자신이 미성년 저자를 참여시킨 장본인지만 B와 C에게 면책을 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A 교수가 참여시킨 미성년이 B, C 교수의 논문 저자로 참여시킬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는 피조사자 또는 참고인이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A, B, C 교수 모두 피조사자가 될 것으로 파악되며 A 교수는 이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14. 이미 게재된 논문의 교신저자 추가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논문 투고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교신저자 변경(추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게재된 논문의 저자 수정 관련하여 저자들이 변경 사항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고, 동의서로도 제출한다고 했을 때 꼭 수정을 해줘야 하는 것이며, 수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게재된 논문의 수정 가능 범위[(논문 내용 변경(오탈자 외 데이터 및 참고문헌 추가 등), 저자변경(순서 변경 및 저자 추가, 삭제 등) 등)은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가 있을까요?

- A**
- 1)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는 한번 출판된 논문을 수정, 변경 또는 삭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 변경, 삭제는 어디까지나 학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회의 윤리 규정, 운영 규정에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출판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반드시 잡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교신저자’를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에 이미 출판된 논문에 ‘공저자’가 추가된다면 몰라도 교신저자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 3) ‘교신저자’란 원고의 투고,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출판 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 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합니다. 논문의 투고와 심사 과정, 출판 과정 동안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교신저자로 추가된다는 것인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아마도 교신저자로 추가되기 위해서는 이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소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논문 투고 과정이나 논문 투고 후 저자의 순서 변경이나 저자의 추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저널에서는 그 저자가 추가 (또는 변경)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고, 논문에서 그 저자의 역할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입니다.
 - 5) 그러나, 2017년에 출판된 논문에 ‘공저자’로 추가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칫 학회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에서 신중히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Q 15. A학생저자가 지도교수에게 자신의 논문 연구결과의 사용을 '승인'하였다도, 부당한 저자표기(유령저자, 저자됨의 거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1) 학생 저자가 사용을 승인 했다면, 학생 저자 누락이 '부정저자 표기(유령저자, 저자됨의 거절)'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 2) 학생 관련 부정저자 표기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덮어두는 것이 혹 교수로서 '학생 권리보호 및 고지 책임의 의무'를 위반하는 건 아닌가요?

※ 상황 설명

1. 2019년 4월 A학부생이 B 지도교수의 아이디어 제안으로 연구 주제를 잡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작성해서 졸업논문으로 작성, 6월 교내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하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논문은 학술지로 publish는 안되었고, 교내 학술대회자료집으로만 인쇄 되었습니다)
2. 12월 B지도교수가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3인 저자 : 다른 교수들과의 공동논문) P논문의 연구 문제 1의 연구결과 '전체'가 A학생의 졸업논문의 연구결과와 동일했습니다(P 논문의 연구결과 1의 전체 문장 4단락, 그림 3개, 표 1개가 거의 그대로 97% 일치함).
P논문의 나머지 연구 문제 2는 다른 저자들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3. 2020년 1월 A학생의 교내학술대회에 참여했던 학과의 연구담당교수가 B교수의 P논문의 부정저자 표기(정당한 저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에서 누락) 문제를 인지하고 학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를 B교수에게 고지하였으나
4. B교수는 A학생에게 미리 '사용승인서' 서명을 받았다면, <연구윤리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P논문에는 교내학술대회에서 발표된 A학생논문에 대한 인용이나 언급도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5. A학생저자가 지도교수에게 자신의 논문 연구결과의 사용을 '승인'했다면, 부당한 저자표기(유령저자, 저자됨의 거절)에 해당은 안되는 건가요?
6. 대학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덮어두는 것은 '학생의 권리 보호 및 고지 책임의 의무'를 위반하는 건 아닌지, 혹 연구윤리 사항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책임에 '고지 및 신고 의무' 같은 건 없는지 여쭙어 봅니다.

A 1) 먼저 (학술적) 연구 결과물의 저자 등재(표기)는 지위, 연령,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연구에서 지적 기여(공헌)를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부여하여야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부당한 저자표기' 관련 의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니, 비록 학부 학생이지만 연구 주제에 대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졸업논문으로 작성하였고 후에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까지 한 것(학술지는 아니지만 당시 교내학술발표 자료집에 관련 내용을 실음)과 거의 동일하게 다른 저자들의 학술지 논문에서 연구문제 1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실렸고, 이에 대한 출처표시도 없고 해당 학부생이 저자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정확히 밝혀지겠지만요. 학부생이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학술지에서 사용해도 좋다고 승낙했다는 의미가 학생이 그 연구의 저자임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자인 것처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학생의 학술적 기여가 있었고, 그를 학술지에 게재할 때는 선행 저작물에 대한 출처표시를 정확히 하고, 당연히 그 학생을 저자로 표기하는 것이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 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2) 질문에 나타난 'B 교수는 A학생에게 미리 '사용승인서' 서명을 받았다'는 의미가 학생의 이름을 생략해도 된다는 승인인지, 혹은 A 학생의 이름을 포함한 승인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A 학생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한 저자 표지'에 해당합니다.
- 3) 만일 A 학생이 본인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승인했다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저자 표시의 '유령저자'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미 교내 학술대회에서 수상을 한 논문의 내용으로서 그 연구 성과와 저자가 공식적으로 공표된 사항입니다. 연구 업적 인정과는 상관없이 대학 기관의 학술행사로서 공식적인 연구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과물의 저자인 A 학생의 이름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누락시키는 것은 유령저자(특정 저자가 연구에 주요 역할을 했으나 성과 발표 시 저자에서 배제하는 행위) 문제에 해당합니다.
- 4) A 학생이 본인을 유령저자로 처리되도록 승인을 했다면, 이 또한 유령저자 문제에 동의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술대회 수상 경력이 이미 공표된 상태에서 A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빼도 된다고 승인하는 것은 유령저자 문제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5) 질문에 제시한 '대학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덮어두는 것'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질문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게 싶다면 대학 측에 연구윤리 위반 신고를 하면 정확해집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관련 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연구자들 중에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있을 때 구체적인 증빙 자료와 함께 해당 대학에 제보를 하면, 검증 절차가 시작됩니다.



Q 16. 연구 사업단의 자료만 제공한 연구원을 공동 연구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 사업단의 연구원에게 내부 비공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단의 자료를 받았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에 일부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자료를 제공하지만 한 연구 사업단의 연구원을 공동 연구자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1) 우선 해당 자료를 제공했던 연구원 또는 연구 사업단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연구에서의 저자 권리 부여는 사실 대단히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어느 범주까지를 저자로 볼 것인지, 가장 주된 저자는 누가 될 것인지를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자료)가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에서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에 대해 관련 연구진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셔서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2) 저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준용되고 있는 기준 몇 가지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는 저자 자격으로 ▲ 연구의 개념, 설계, 데이터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한 자 ▲ 중요한 학술적 내용의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한 자 ▲ 투고 논문에 대해 최종 승인한 자 ▲ 연구의 정확성·진실성 등 모든 측면에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 저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Science』지도 이 안을 따르고 있다. 물론 저자가 되는 것은 이러한 요소들 중 모든 경우를 다 만족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일부 요소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ICMJE에 따르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한 자,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 자, 연구 그룹에서 기술을 지도한 자(technician, operator), 실험실 공간 또는 연구 장비를 제공한 사람, 연구비를 받는 데 기여한 사람, 연구팀이나 그룹을 총 지휘한 사람들은 저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후기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서 그 공로를 표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국내 대학 및 학회에서도 저자 자격에 대해서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출처 : http://www.cre.or.kr/article/thesis_articles/1382530

※ 서울대학교 - 연구윤리 지침(2010.7.16) 제10조 (저자 표시)

- ① 연구자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 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해야 한다.
- ③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 ④ 연구 결과 발표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공 분야에 이와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⑤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⑥ 연구 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저자 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 <http://www.cre.or.kr/article/regulation/1384633>

※ 저자자격-연구윤리 인포그래픽*참조 : <http://www.cre.or.kr/article/infographic/1384581>

Q 17. 논문에 기여한 것이 없는데 교신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수가 어떠한 주제를 주면서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라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작성한 논문을 살펴보는 것 외에는 논문에 대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논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작성한 것이고, 교수는 그 논문에 한 글자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논문이 완성 되가는 중에 자신을 교신저자로 넣으라고 하였습니다. 1) 이 경우 교수를 교신저자로 넣는 것은 연구윤리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2) 이 논문은 순전히 제가 쓴 것이기에 제 단독으로 투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자는 연구소를 퇴소한 상태임)

A 1) 질문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교수님께서서는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공하셨고(주제를 주며 논문을 작성할 것을 제안), 이후 리비전 과정(작성된 논문을 살펴보는 것)에 관여를 하셨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1) 논문의 저자자격(양적/질적 기여도)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귀하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저자(교신저자)의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생각만으로 지도교수님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규정지를 수는 없습니다.
- (2)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저자자격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적절한 합의가 없이 상하관계에 의한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다면, 저자자격을 정하는 과정상에서의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자의 권리와는 별개의 문제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논문 및 보고서 등 모든 종류의 연구 결과물(또는 연구산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연구 책임자인 교수 혹은 참여연구원이 아닌 발주처(연구비를 지원한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자료를 들고 나와 개인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은 추후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원문의 개인적인 사용에 대해 반드시 과제발주처 또는 소속기관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제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아이디어이며 완벽히 독립적으로 연구된 부분이 아닌 이상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과제비를 전혀 지원받지 않았더라도 연구실의 인프라 또는 장비를 이용하였다면 이것은 소속기관으로부터 완벽히 독립적인 연구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과제의 범주 안에서 지도교수님이 준 아이디어 또는 제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독립적인 연구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원문의 구성요소별 기여도(contribution)를 연구노트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발주처(또는 소속기관)에 해당 원문에 대한 재할용 권리를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올바른 저자권리

한국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 중 저자권리의 판단기준을 수치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학문분야별로 저자의 기준이란 것이 다를 수 있어서 획일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는 국제의학저널편집인협의회(ICMJE)의 규정 정도가 있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연구설계 및 아이디어제공, 연구 데이터 생산, 논문초안 작성, 논문투고과정 전반에 모두 관여하였을 경우에만 저자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한국의 공동연구 현실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통상적으로 많은 학계에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참고 및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Q 18. 국내 학술지(KCI) 논문 작성할 때, 저자(영문)명 표기와 사사(감사의 글) 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 1) 국내 학술지(KCI) 논문 작성할 때, 저자명을 한글과 영문으로 모두 기재하는데 저자(영문)명이 여권에 쓰여진 것과 동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여권의 스펠링과 논문 저자(영문)명 스펠링이 다른 경우) 제가 알기로는 단지 편의상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고, 여권하고 달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으며, 논문 쓸 때마다 달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2) 논문 사사(감사의 글)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논문 마지막에 쓰는 감사의 글(사사)에는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는데, 이 사사가 없는 경우 과제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문제(논문 철회 같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A 1) 여권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논문은 이름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이픈 있건 없건 검색은 동일하게 됩니다만 띄어쓰기 유무는 문제가 됩니다. 검색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자 영문 표기법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학회도 있으므로, 해당 학회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예 한국 BIM학회는 학회 회원들에게 저자 유의사항으로 저자 영문표기법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 편집 유의사항

- 저자 영문 표기법 : 표준 표기법 없으나 다음 두 기준 참조

- ① 기본적으로 저자의 여권 영문표기를 따름
- ② 사회적 통념상 Hong, Gil-Dong, Hong, Gil Dong, Hong, Gildong이 무난
(두 번째 홍길동 영문에 Hong 다음 콤마(,) 추가)

2) 일반적으로 어느 부처 혹은 연구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았고, 그에 따라 논문을 작성했다면 사사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편당하는 기관 혹은 과제에서 요구하지 않는다면 꼭 안 쓰셔도 됩니다. 하물며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개인 논문의 경우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제출 논문이 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을 지라도 연구과제 관련 실적 때문에 사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단체는 사사에 표기해야 하는 양식을 미리 정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회에 따라 사사표기에 대한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해당 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사표기 방침의 예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 한국과학기술교육학회 학회 본부 및 편집위원회 임원 회의에서 학위논문(석·박사)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에 사사표기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 문의한 바, 사사표기가 없는 논문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므로 사사표기를 제시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제34권 제6호(9월 30일자 발행)부터 학위논문(석·박사)을 재구성하여 투고한 논문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방침에 따라 사사표기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논문 투고자가 사사표기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4조(연구윤리규정위반행위) 2) 표절은 이미 발표된 학문적 내용과 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로 판정하게 될 것이며,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 2.) 대한임상검사와학회

논문 투고 규정

9. 사사, 이해관계, 저자정보(직위)

- 1) 사사, 이해관계, 저자정보(직위)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 2) 사사는 연구비 지원, 특허, 저자됨, 기여자 등에 감사의 내용을 표기한다.
- 3) 이해관계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이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 4) 저자정보(직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준용한다. 최종학위는 표기하지 않으며 소속과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만 표기한다.
- 5) 사사, 이해관계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None”으로 표기한다.

Q 19. 대학원생의 졸업 연구 보고서를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

석사과정 대학원생 A의 졸업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지도교수 B의 단독명으로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한 경우 지도교수 B의 행위는 “표절”로 보아야 할 지, “부당저자표기”로 보아야 할까요?

- A**
- 1) 문의하신 유형은 전형적인 ‘논문 가로채기’로서 매우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입니다. A대학원생의 ‘졸업 연구 보고서’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A대학원생의 ‘보고서’를 B교수가 단독 저자로서 저널에 게재한 경우, B교수의 ‘표절’이며 ‘부당한 저자표기’입니다. 저자표기는 해당 저작물(보고서든 논문이든 단행본이든)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 저자수와 순서가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2) A대학원생의 ‘졸업 학위논문’을 B교수가 단독 저자로서 저널에 게재한 경우, ‘표절’이며 ‘부당한 저자표기’입니다.
 - 3) 해당 학문 분야의 관행에 따라, A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학계에 처음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요약 정리하여 저널에 발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허용 가능하며, 이때 저자는 A대학원생 단독 저자 또는 A대학원생이 제1저자, B교수가 제2저자(및 교신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학위논문은 엄연히 A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미에서 A대학원생의 명의로 발표되는 것이며, B교수는 단지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Q 20.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학생이 유사한 연구 주제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동저자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사과정 수료생이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즉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제공, 데이터 수집/분석/해석, 논문의 초고 작성 및 중요한 부분의 교정, 투고 논문의 최종본에 대한 승인 등에 있어서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로 넣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적합한지, 박사과정 수료생이 저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수료생의 주된 주장은 동일한 연구현장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 참여자들이 대동소이하며 유사한 연구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면 공동저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주장이 옳은가요?

A 공동연구 결과에 대해 저자자격을 둘러싼 분쟁(authorship disputes)은 해당 연구에 누가 저자 자격을 정당하게 갖는가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입장에서 박사과정 수료생이 2018년 논문에서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 연구에 자신이 저자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사과정 수료생도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제시한 근거는 해당 학문분야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자자격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적어도 한 연구에서 저자자격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해당 연구에서의 독창적인 연구 주제(아이디어) 제안, ② 연구 설계 및 관련 문헌 분석, ③ 데이터 수집·분석·해석, ④ 논문 초고 작성, ⑤ 초고에 대한 학술적으로 의미있는 코멘트, ⑥ 투고 논문의 동료심사자로부터 받은 코멘트에 대하여 의미있는 답변(반박 내용) 제공 등 중 적어도 2가지 이상(물론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한 가지만을 충족하여도 저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볼 때, 질의자께서 언급했듯이, '박사과정 학생이 참여한 연구와 동일한 연구현장에서 2018년 연구가 진행되고, 연구 참여자들이 대동소이하며, 유사한 연구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저자로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2016년 보고서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결과(문장이나 문단의 내용 기술, 표나 그래프, 해석과 논의 및 결론 부분 등)가 2018년 논문에서 활용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박사과정 학생이 질적인 역할을 하여 저자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가 2018년 논문에서 저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박사과정 학생이 2016년 보고서에 쓴 부분(또는 박사과정 학생의 독창적인 이론 및 방법론)이 2018년 논문에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 부분이 양적으로 많거나, 질적으로(이론, 연구방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 박사과정 학생이 2018년 논문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저자의 등재 요구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에서 밝히고 있듯이, 2018년 논문에서 박사과정 학생의 기여 부분이 없다면(있다고 해도 저자로서 등재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저자가 아닌 acknowledgement에서 감사의 표시를 함), 저자로서 등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비록 선행연구의 아이디어나 연구 방법론, 연구의 대상이나 데이터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선행 연구와는 질적으로 다른 연구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사과정 수료생이 저자자격에 해당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수료생이 저자자격을 가질 수가 없으며, 그럼에도 이 수료생이 저자자격을 갖는다면, 부당한 저자 표기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Q 21.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사용하여 지도교수가 단독저자로 논문을 출판할 경우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학위논문(2012년)과 B논문(2015)의 데이터가 80%이상 일치하고, B논문에는 A논문의 저자가 없고 A논문의 지도교수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인 경우, A학위논문 학생 동의를 얻었다면 B논문에 학위논문 학생의 이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저자에서 제외되었다면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이 되나요?W

- A**
- 1) 문의하신 사례는 부당한 저자표기 및 부당한 중복게재, 속칭 교수의 “논문 가로채기”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학위논문은 당연히 A학생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을 것입니다. B교수는 지도교수로서 A학생을 지도했겠지만, 분명히 학위논문은 A학생의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 제12조 1항 4호에 “부당한 저자표기” 사례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2) 다만 일부 학계의 관행에 따라 학위논문을 학생과 지도교수의 공동저작물로 간주하여, A학생이 제1저자, B교수가 제2저자 자격으로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하여, 학위논문 발표 직후 1회에 한하여 저널에 다시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점차적으로 지양되어야 할 관행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3) 그런데 문의하신 사례는 A학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B교수가 단독저자로 발표한 것으로서,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A학생의 이름으로 학위논문으로 공식 발표된 저작물을 B교수가 가로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표된 논문에서 저자만 바꾸어 다시 제출한 경우라면 A학생 본인의 요청에 의해 스스로 저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해도 “부당한 저자표기” 혐의는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B교수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논문 가로채기”, A학생의 자발적인 저자자격 포기라면 “선물저자”(gift authorship)에 해당합니다.
 - 4) 게다가 이전 논문과 데이터의 80%가 일치한다면 “부당한 중복게재”(자기표절) 또는 B교수가 A학생의 학위논문을 “표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만 재활용하고, 연구방법이나 결론 등을 다르게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논문으로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당 학계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라 B교수의 논문이 A학생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재활용했지만, 새로운 가치를 갖는 별개의 논문으로 판정된다면, 이때에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살펴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5) 4)의 조사에 따라 B교수의 논문이 새로운 가치를 갖는 별개의 논문으로 판정된다고 하더라도, B교수는 자기 논문의 데이터가 A학생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재활용한 것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B교수가 A학생의 학위논문을 표절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22.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A 해당 연구나 논문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며, 연구 과제에 대해 잘 알고 투고 학술지 편집인이나 다른 연구자 및 독자들의 문의에 잘 응답할 수 있는 연구자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연구과제 책임자”가 제1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정해진 공식적인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참여한 연구진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정해 실천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혹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저자의 범위나 순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문의를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해당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 공헌도가 있을 경우”는 이 문장만으로 본다면 공동저자이기보다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언급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 생산, 분석, 해석”이 매우 중요하고 연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공동저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저자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공헌보다도 해당 연구에서 ‘학술적(지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는 학문 분야별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Q 23. 부당한 저자표기에 관한 조치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A**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26조 ① “대학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제재 또는 징계 조치는 연구진실성위원회(및 조사위원회)가 할 일은 아니며,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 규정에 의한 관련 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속합니다. 대학등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해당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감봉, 견책, 정직, 파면, 해임 등 다양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2)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단할 때에는 지침 제13조 ①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 다만 지침 제23조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4) 통상적으로는 1)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에 더하여, 해당 논문을 학술지로부터 철회하고, 해당 연구 과제로부터 얻은 이익을 환수하며, 신규 연구과제 참여 자격을 제한하거나, 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 24. 학위논문을 학생 단독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부당한 저자표기인지 궁금합니다.

“지도학생이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단독 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는 부당한 저자표기라 볼 수 있을까요? 심사과정에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다면, 지도교수를 교신저자 등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 A**
- 1)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 논문의 창출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포함하거나 논문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석박사 과정의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바람직한 저자표기는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학위논문이 마무리되기 까지 지도교수가 아이디어 발굴, 연구의 설계 및 데이터 분/해석, 논문 작성 등에서 기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3) 그러나 지도교수가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지적 기여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와 동일 내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더 나아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합니다.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한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기여(저자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떤 단일의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지만 학위논문 과정이나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도교수님이 지적 기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학위를 받은 학생 단독 저자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Q 25. 이미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할 때 저자가 바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에 한글로 국내에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2002년에 외국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면서 기존 한글논문의 공동저자를 배제한 경우,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보편적 통상적 기준인 연구윤리에 비추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A**
- 1) 기준에 한글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외국 학술지에 내면서 공동저자를 배제한 경우, 그 저자가 외국 학술지에 실린 연구 논문에 실질적인 지적 기여를 하지 않아 저자 자격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12조제1항제4호) 교육부훈령 263호>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중 저자의 이름이 올라가지 못한 경우 중 가장 심각한 형태를 ‘저자됨의 거절(Denial of Authorship)’이며, 이는 ‘표절’의 한 형태로도 이해됩니다.
 - 3) 2002년에 출판된 것이므로 오래되긴 했지만, 해당 학술지에 연락을 취해 ‘저자 변경 또는 추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저자의 동의를 얻어 그 학회에서 허락한다면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못한 한 명에 대해 추가로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Q 26. 교수의 연구를 도와서 학술제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 논문에서는 학생이 저자에서 빠졌다면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학술제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학생들의 기여가 저자로 등재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기여가 있었는가가 관건입니다. 비록 학과 차원의 학술제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해도 참여 학생의 학술적 기여가 충분하여 저자로서의 기여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때 학생의 기여 부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면 학생을 최소한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부당한 저자표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 학술제가 일반 학회와 같이 초록에 대한 동료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일종의 학과의 행사이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 보다는 학과 차원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학문 분야마다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매우 통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이에 대해 출처 표기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정식적인 학회가 아닌 학과 행사 차원의 학술제라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간과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감사의 글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만일 논문에 기여한 정도가 저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감사의 글을 통해 고마움을 표시해도 좋은 기여(contributorship)라고 한다면, 감사의 글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도와준 것은 연구에 기여를 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저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출판윤리의 동향입니다.

그리고 학술지 논문에 저자 외에 그 논문에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도 저자로 이름을 올려야 하며 그 사람을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 부당한 저자표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이 그 저자 외에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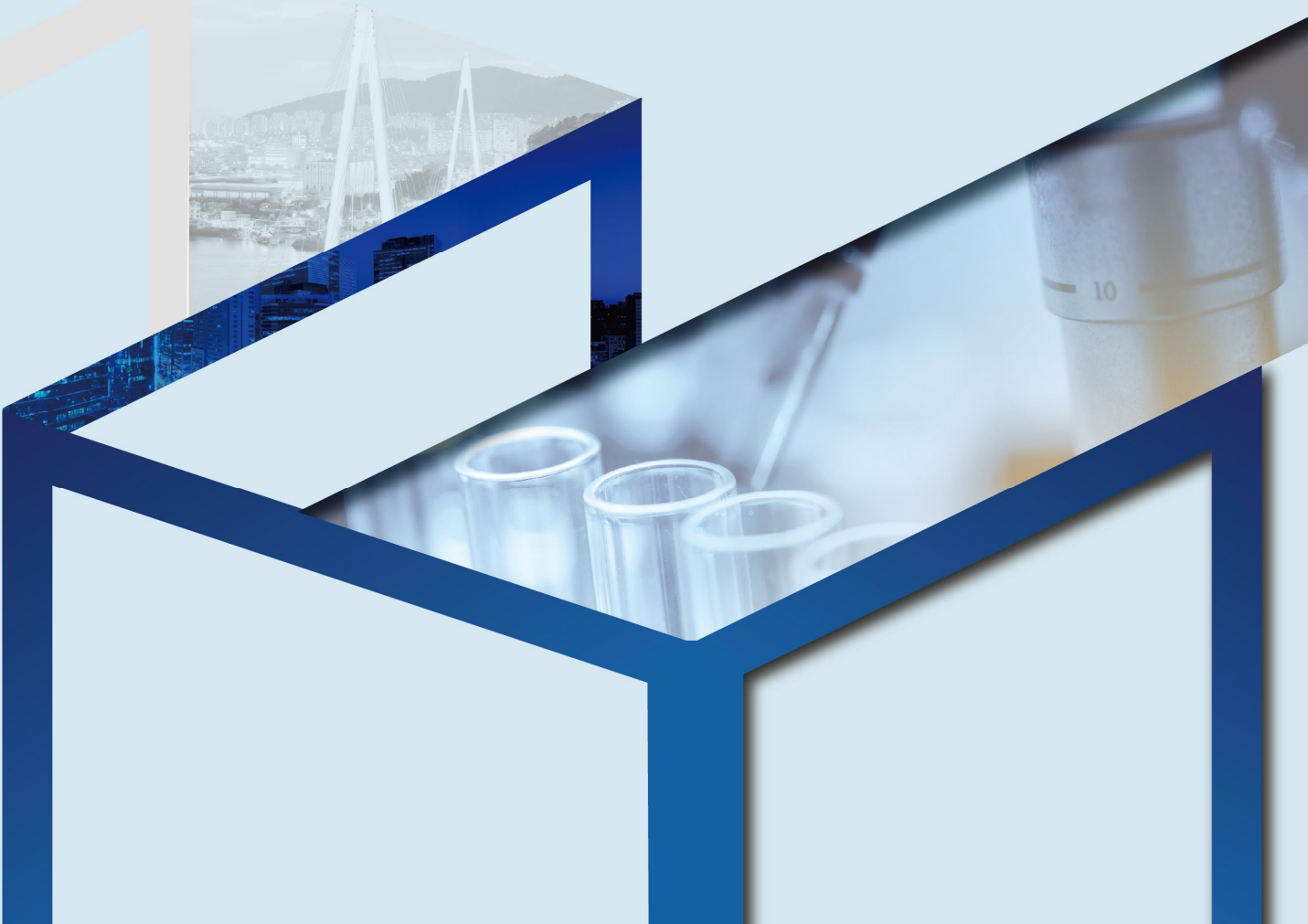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V

사사표기



Q 1. 소속이 다른 교수 2명이 공동 연구를 수행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개의 사사표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B 교수님이 각각 S, Z대학에서 연구비를 지원(각각의 연구비는 A, B교수가 각각 직접)받아 공동으로 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한 논문으로 공동 연구자 양쪽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중으로 연구비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개의 사사표기도 가능한가요? 또한,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규정이나 지침도 있나요?

A 1) 사사표기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연구결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편향성, 즉 이해상충 가능성을 학문 공동체에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2개의 기관에서 각각 연구비를 지원받아 1개의 과제를 진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 성과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귀속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연구 성과가 어느 기관에 귀속될 것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1개의 연구 성과를 2개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자기표절’, 즉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A 기관의 연구비로 B 기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 이는 연구비 횡령 시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2개의 기관들이 자신들의 연구비가 1개의 연구 과제를 진행하는데 함께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이에 대해 두 기관 사이에 ‘공동 연구’ 형식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그 계약에는 어느 기관이 어느 정도 비율로 연구비를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연구 성과의 소유 및 활용 권한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것입니다.

2) 이상의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A 기관과 B 기관의 공동 지원 과제로서 연구를 진행하였음”이라고 사사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가 시작될 시점에서는 연구비 지원기관들에게, 연구 성과를 발표할 시점에서는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3) 교육부 “HK사업” 연구과제 규정에 따르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로 인해 발생한 연구 성과물의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 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 사사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BK21+”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1) 논문게재료를 “BK21+”에서 지원받을 경우 : 되도록이면 BK21+ 사사만 넣는 것을 권장
- (2) 중복 사사인 경우 : 타 과제에서 논문 게재료를 지원받는 것을 권장
- (3) 부득이하게 중복 사사를 넣어 “BK21+”에서 게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사업단 교육, 연구내용과의 연관성을 기술한 확인서 제출을 권장

Q 2

발행이 완료 및 수록된 논문에 사사표기 오류로 변경 신청을 요구하여 수정할 경우 연구윤리 및 학회지 발간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오프라인 발행이 완료 된 논문의 저자가 해당 논문의 사사표기 오류에 대한 변경을 학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회지에는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이 없으며, 출판 완료된 논문의 사사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논문의 사사문구는 어느 기관 및 부서에서도 연구실적으로 활용되어 수혜 된 적이 없는 상태(책임저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함)입니다.

A

- 1) 사사표기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연구결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편향성, 즉 이해상충 가능성을 학문 공동체에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논문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사소한 부분만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논문의 원본을 직접 수정하기보다는 '정오표'(erratum)를 추가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논문 내용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정오표' 발행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 논문 자체가 철회되어야 하며, 논문의 원본을 수정하여 재발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저명 저널들은 원본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권호 말미에 정오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사표기 수정도 이와 같이 처리됩니다.
- 2) 사사표기 수정은 개별 학회의 권한이므로, 학회마다 다릅니다. 일단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절대 수정해주시 않는 곳도 있고, 학회의 규정에 따라 "사사표기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면 수정해주는 곳도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구성과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귀속된다"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사표기를 수정할 경우, 논문의 소유권자가 바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논문으로부터 어떤 이익이나 혜택이 발생하였다면, 그 논문의 정당한 소유권자에게 그 이익이나 혜택을 귀속시키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사표기가 수정된 논문을 마치 새로운 연구성과물인 것처럼 소속기관 등에 제출하여 연구 업적을 인정받거나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부당한 중복계재'에 해당하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3. 의학연구 분야의 특성상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을 다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학술지에 교내 연구비나 부속병원의 연구비 사사를 표기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대 의대 교수가 교내학술연구비나 국립대병원의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할 때 의학 계열의 특성상 대학원생이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연구 결과물을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뒤 이를 다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연구윤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교내연구비나 부속병원의 학술연구비는 연구 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연구를 지원함이 목적인데, 이 연구 결과물이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으로도 제출되었다면 생각에 따라서는 연구비 지원기관이 교수가 아닌 대학원생의 학위연구를 지원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모 국립대에서는 “대학원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학술지에 교내연구비 사사표기를 할 수 없다는 게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에 있었다.” 라고 하는데,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을 다시 전문 학술지에 게재할 때 학술지에 교내연구비나 부속병원의 연구비 사사를 표기하는 것이 연구윤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A**
- 1) 사사표기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연구결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편향성, 즉 이해상충 가능성을 학문 공동체에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귀속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과제의 성과물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소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할 경우, 반드시 성과물의 정당한 소유권자인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문의하신 상황은 ‘연구과제 성과물을 대학원생 학위논문으로 재활용’(A단계), ‘대학원생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활용’(B단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고, 지도교수와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A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사사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위논문을 학계에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학회의 동의를 받아 그 학위논문을 1회에 한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요약 정리하여 발표하는 B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사사표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재구성할 경우(B단계), 반드시 사사표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3)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사표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 사용할 표준 문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은 “교수의 연구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된 연구비가 원래 취지를 벗어나 대학원생 학위논문 작성에 이용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에서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 성과물을 대학원생 학위논문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해당하는 교육부가 A단계와 같은 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승인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연구 성과의 재활용 승인 여부는 지원기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B단계에서 사사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수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된 연구비로는 A단계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 4) 교육부가 특히 우려하고 지적하는 것은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위해 사실상 대부분의 연구를 수행하고 교수가 그 성과물을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포장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는 사례(성과 가로채기)로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발표순서는 “교수가 연구과제 보고서 발표 =>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으로 재구성”으로 보이지만, 실제 연구 활동은 “대학원생이 학위논문 내용 구성 => 교수가 연구과제 보고서로 정리” 순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적발된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 보고서와 학위논문 사이에 원본 데이터는 재활용하더라도 가설, 분석 및 해석, 결론 등을 다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학문적 가치를 갖는 연구 보고서와 학위논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4.

모든 지원기관에 통용되는 사사표기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사사는 연구 과제 지원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표기하는데, 사사표기에 대한 개념, 정의, 기준, 원칙 등이 모든 지원기관에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A

- 1) 사사표기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예의인 동시에, 연구 결과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편향성, 즉 이해상충 가능성을 학문 공동체에 정직하게 공개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또한 “연구 성과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귀속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 3) 사사표기 방법에 특별한 양식이 표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각 연구기관마다 고유의 사사표기 양식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사사표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사사표기 방법

– 국문표기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2-A00003)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08-362-A00003)

※ 과제번호는 R&D카드 과제번호와 동일하며 첨부되어 있는 excel 파일에 표기되어 있음.

Q 5. 박사학위 논문을 박사 후 연구 과정 지원을 받아 수정·보완 및 발전시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사사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사 후 연구 과정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 논문을 추가 수정·보완 및 분석하여 2편의 논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고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OO 대학 박사 후 연구 과정의 지원을 받았다(박사학위 취득자가 제 1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표기)”고 사사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사표기가 부적절하거나 연구윤리에 위반되나요?

현재 한국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지로 출판하는 경우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면 중복게재로 판단되지 않으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박사 후 연구 과정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해하고 위와 같이 사사 표기를 하였는데 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박사 후 연구 과정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 A**
- 1) 새로운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학계에 처음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학위논문 자체를 요약, 정리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OO대학 OO학위 논문을 재활용하였음”을 학술지 편집진에게 알려 사전 동의를 구하고, 학술지 논문 본문에도 해당 사실을 명확하고 정직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이는 학위논문을 재활용한 학술지 논문이 마치 새로운 연구 성과물인 것처럼 독자를 속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학위논문 재활용 사실을 밝히고, 학위자를 제1저자, 지도교수를 교신저자로 하고, 학위논문을 재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행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OO대학의 박사후 연구과정 지원을 받았음”을 사사표기하는 것은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지원 사실에 대한 사사표기는 명확하고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 연구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다만 학위논문을 보완하고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2편의 논문을 게재하겠다는 계획이 “학위논문 재활용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관행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학술지 논문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2번째 학술지 논문은 학위논문이나 1번째 학술지 논문에 비해 실질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원래의 논문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단순히 추가 분석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논문 덧붙이기 출판”(imalas publication)이라는 유형의 연구부정행위(자기표절 또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추가 분석을 실시하여 2번째 학술지 논문을 작성할 때, 이 논문은 원래의 학위논문이나 학위논문을 재활용한 1번째 학술지 논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학술적 가치를 갖는 논문”이 되도록 많은 변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2번째 학술지 논문을 발표할 때에도 박사후 과정으로서 지원을 받았다면 “OO대학의 박사 후 연구과정 지원을 받았음”을 사사표기하는 것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6. 학술지 논문에 사사표기를 할 때 복수의 기관을 적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 연구는 I대학교에서 지원된 연구비와 I대학교 대학원 Junior Fellow-Research Gran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표기해도 괜찮은지요?

A 사사표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연구를 지원한 인물 또는 기관의 명예를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구가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독자들에게 정직하게 알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사표기의 당사자인 ‘I대학교’와 ‘I대학교 대학원 Junior Fellow-Research Grant’의 양쪽으로부터 사사표기에 서로 상대방의 명의를 표기됨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두 기관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어느 한쪽의 사사표기만 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7. 사사표기가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 같아 연구윤리적으로나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출판 예정인 학술지에 필자가 “이 글이 나오기까지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지도교수명 · 학과 소속 교수명)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자세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그리고 부족한 원고를 읽고 교정을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들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사사’를 달았습니다. 학술지 규정에서 어려운 자료를 제공해준 경우 등에는 별도 사사를 쓸 수 있지만, 지나친 개인적 사사가 연구윤리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A
- 1) 사사표기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진 단일 원칙은 없습니다. 학회 학술지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사표기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 과제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나 여타의 국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과제에는 그 기관들이 정한 양식에 따라 사사표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지원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사표기는 허용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2) 사사표기는 연구과제 수행에 확실히 도움을 준 인물 또는 기관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도움을 준 바가 없는데도, 예의상 또는 다른 이익을 노리고 사사표기를 하는 것도 연구진실성에 어긋나는 ‘연구부적절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저자표기’는 그 사람의 연구 업적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자들이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받는 연구부정행위이지만, 사사표기는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사표기에 유형의 금품이나 큰 이권이 걸린 것이 아니라면, 사사표기를 받았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연구 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범죄 행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기관이 사사표기에 이름이 많이 오르면 기관의 홍보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달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연구자들이 이에 동조하였다면 ‘청탁금지법’을 검토해볼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사표기를 두고 금품이나 여타의 이권이 오가는 경우라면 당연히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진실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사표기를 하도록 하고, 학회 등에서는 사사표기의 대상과 서식 등에 대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남용되지 않도록 하심이 좋겠습니다.
 - 3) 적절한 사사표기 기준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이 2019년 발행한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의 44페이지, 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8. 사사표기 관련 위반 심의는 어느 기관에서 맡아 수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사표기가 없는 논문의 사사표기 누락,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사항 심의는 어느 기관(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소속 기관 등)에서 수행해야 하나요? 또한, 사사표기가 없을 경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요?

- A** 1) '사사표기 위반'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재단 지원 사업, BK 지원 사업, HK 지원 사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경우, 자체 규정 및 연구 계약에 따라 "OO기관의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연구 계약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연구부적절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연구자로서 연구의 진실성, 객관성, 공정성 등을 해치는 행위로서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차원의 '연구부정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과의 계약에 관한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사사표기를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구가 특정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지 못함으로써 '이해상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상충 역시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보다는 '연구부적절행위'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1항 3호)에까지 이른다 고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2) 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가 규정하는 대표적인 연구부정행위입니다. 지침 제16조 1항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만 규정하므로,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의 소속기관이 모두 검증 책임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기관들 사이에서 협의를 통해 가장 관리 책임이 큰 기관이 우선 검증 책임을 맡도록 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 제27조 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9. 재료비나 분석료, 게재료 등이 아닌 인건비나 출장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과제는 모두 사사로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료비 외 인건비 또는 출장비를 지급받은 과제에 대해서도 사사표기를 해야 하나요? 논문이 완성되어 제출할 당시 관련 프로젝트가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서 타 과제에서 약 200만 원 정도의 게재료를 납부하였을 때 게재료를 납부한 과제를 사사표기하면 연구윤리에 위반 될 수도 있나요?

- A**
- 1) '사사표기'는 '저자자격'과는 달리, 엄격한 판단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부당한 저자표기'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지만, '부당한 사사표기'는 연구부적절행위로 판단됩니다. 물론 연구부적절행위 역시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2) '사사표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연구에 도움을 준 인사 및 기관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연구에 도움을 준 인사 및 기관"에 대해서만 사사표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경우, 잠재적인 이해상충 가능성을 독자들에게 정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인사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실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첫째와 둘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 3) 연구재단, BK사업, HK사업 등 공적 기관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사표기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1개 기관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고, 2개 기관 이상 사사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주 지원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4) 개별 학회 등의 경우에는 학회 자체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5) 논문 게재료 2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을 공개하기 위해, 사사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역시 연구의 주 지원기관이나 개별 학회 편집진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10.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경우 논문을 작성할 때 출처 및 사사표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밝힐 때, 1) 개발자만 밝히면 되는지, 2) 지원해준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으로 밝히는지, 아니면 3) 개발자 및 지원기관 모두를 밝혀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개인의 학위논문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1) 기본적인 원칙은 “연구 성과물과 데이터는 연구를 지원한 주체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구 수행 초기에 연구지원 주체와 소유권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릅니다. 연구자 홍길동이 2020년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OOO에 대한 OO연구」라는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 다른 논문에서 짧게 인용할 경우 : 연구지원을 받아서 산출된 연구 성과물이라 하더라도 ‘저작 인격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홍길동에게 있으므로, 이를 다른 연구물에서 “짧게 인용”할 경우,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홍길동의 이름으로 출처를 밝히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표기가 짧은 ‘내주’의 경우에는 본문 안에서 “(홍길동, 2020 : 123)”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처를 표기할 공간에 여유가 있는 ‘각주’ 또는 ‘참고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지원 주체까지 모두 상세히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시 : 홍길동(2020), 「OOO에 대한 OO연구」, 교육부 · 한국연구재단

3)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 :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를 출판하는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사사표기 가이드 기준에 따라 사사표기를 해야 합니다.

* 예시

1. 교육부 -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XXX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조회가능)
2. 교육부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XXX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number)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문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XXX사업임(No.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연구사업통합시스템에서 조회가능)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영문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XXX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grant number)

4) 한국연구재단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교육부로부터 연구 과제를 지원받아 이를 출판할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사사표기 가이드라인에 맞게 사사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예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사표기 가이드>
연구성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 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단, 연구성과를 학술지 게재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연구

개발과제의 단위/세부 과제번호를 추가로 명시하여야 한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19. 10.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2호, 2019. 10. 21., 일부개정] (제35조 제7항)

2. <교육부의 사사표기 가이드(이공분야)>

연구 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 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출처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 2018. 4. 11.] [교육부훈령 제254호, 2018. 4. 11., 타법개정] (제35조 제6항)

- 5) 연구지원을 받아서 산출된 연구 성과물을 재활용 또는 심화 발전시켜 후속 논문을 쓰거나 학위논문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연구 성과물의 소유권이 있는 연구지원 주체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에게도 이미 발표된 연구 성과물을 심화 발전시켜 학위논문으로 작성하고자 함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활용 또는 심화 발전의 결과로 산출된 논문에는 본문과 참고문헌 등에 원 연구지원 주체에 대한 '사사표기'(acknowledgement) 등을 철저히 적시해야 표절, 중복게재, 저작권 침해 등의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11.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국립 연구기관의 사사표시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외(SCI급) 논문의 사사(acknowledgment)에 연구비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로 해당 기관의 과제번호 등을 기입하는데, 만일 직접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국립 연구기관의 연구 과제번호를 연구기관명과 함께 사사에 기입한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나요? (해당 논문의 제 1저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원이며, 교신저자는 타 기관의 연구자입니다.)

* 예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 from 국립00000(과제번호).

- A
- 1)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 7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2)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라면 위반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연구부적절행위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잘못된 사사표기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있지 않지만,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기 위해 최대한 사실대로 정직하게 표기해야 하는 바, 연구자가 이를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과장, 왜곡 등의 방식으로 불필요한 사사표기를 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명시하는 대로 사사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가 연구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사사표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다만, 재정적 이해상충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 연구 결과가 연구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특정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면 이를 밝히게 하는 학회, 학술지 등이 있습니다. 이때 사사표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 xxx는 xxx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본 연구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발표하시고자 하는 학회(학술지)에 이를 파악하여 사사표기를 한다면 보다 신뢰도가 높은 논문이 될 것입니다.

Q 1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사사표기 수정 요청이 받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논문 게재 당시 기관의 실수로 사사문구의 연도를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학회 측에 사사문구 정정을 요구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일이 지나더라도 정오표, 정정공고 등의 방법으로 사사문구 연도 표기 정정을 하는 예가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회 측은 고쳐줄 수 없다며 심지어 법원 판결을 받아오면 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한데도 사사문구 연도의 정정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학계가 이러한 정정조치 용인하지 않는 것이 흔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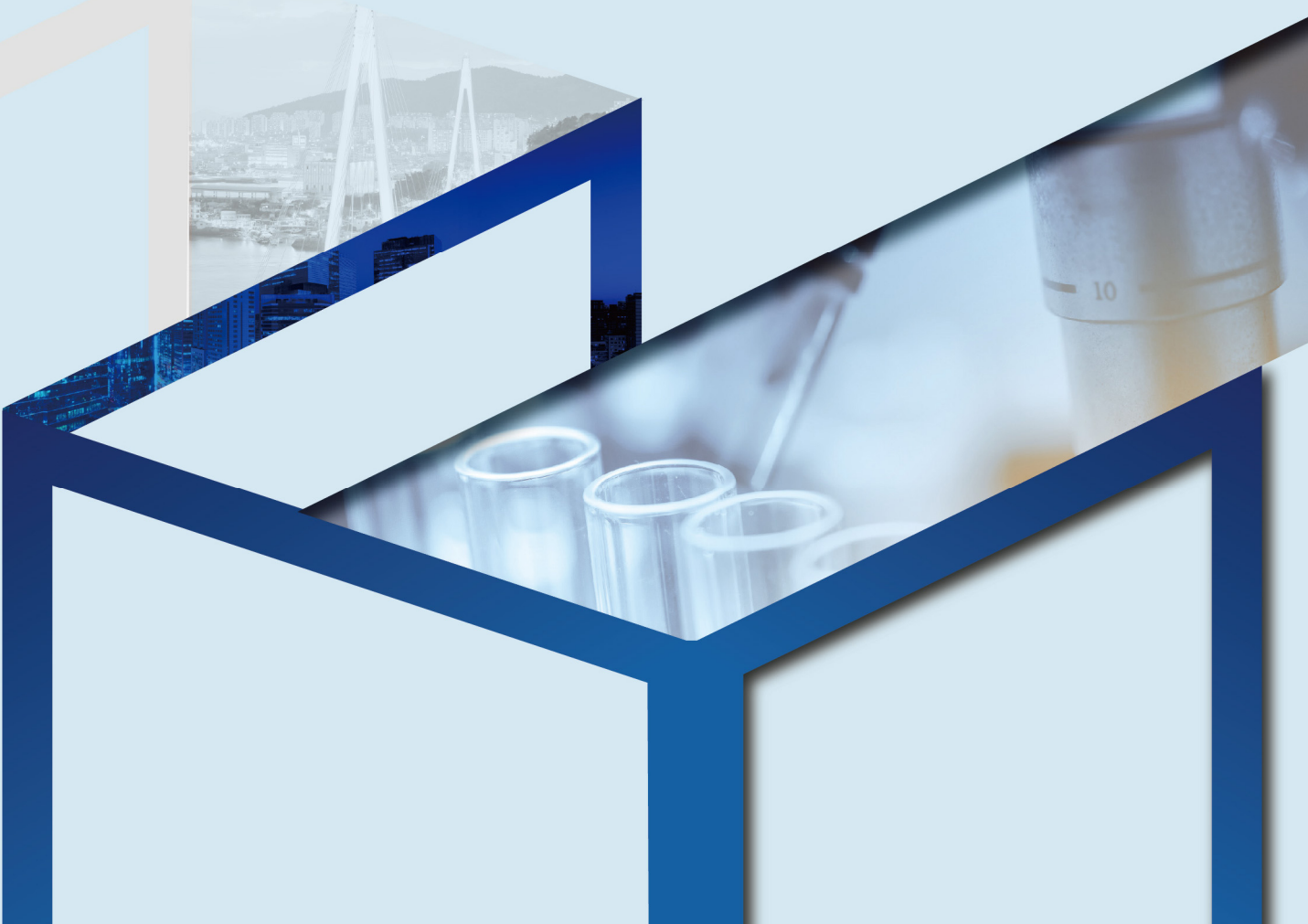
- A**
- 1)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여 발표할 때에는 사소한 부분이라도 오류가 없음을 저자가 보증하고, 그 정확성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는 저자와 편집진 사이에 여러 번의 상호 교차 확인을 거치기 마련이며, 따라서 이미 그 내용을 확정하여 발표된 논문은 더 이상 수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자 원칙이기도 합니다.
 - 2) 그러나 이미 조사하신 바와 같이, 여러 학회 저널에서는 이미 발표된 논문에서 '단순한 실수'가 발견될 경우, 논문 전체의 내용이나 결론이 달라지지 않음을 보장하면서, 이에 대한 '정오표'(erratum)을 발행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대한 실수'나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논문 자체를 철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요청된 부분이 '정오표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논문 철회'를 해야 할 '중대한 실수'인가의 판단은 해당 학회 저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3) 단, 논문의 단순한 실수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논문이 수록된 저널 원본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행된 원본 출판물(또는 그 pdf 파일 등)은 그대로 두고, 다음 호 저널에서 '정오표'를 추가하여 "A권 B호에 수록된 C논문의 D부분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수정함"과 같은 방식으로 그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알리는 형식을 취합니다.
 - 4) 그러나 이상과 같은 형식의 논문 오류 수정은 학회 저널의 '자율성'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자의 오류 수정 요청을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도 학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 학회에서는 수정해주는데 B 학회에서는 왜 수정해주지 않느냐"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연구윤리에는 모든 학문 분야, 모든 학회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5) 일단 해당 학회에 '단순한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자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상세한 사유를 소명하여 수정토록 요청하시고,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해당 학회의 유관 분야 학회들이나 상위의 학회 규정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VI

이해상충



Q 1. 이해상충의 의미와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 A**
- 1) 이해상충이란, 연구의 타당성이나 환자의 치료와 같은 일차적 이해(primary interest)에 관한 판단이 재정적 이득과 같은 이차적 이해(secondary interest)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는 일련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 2) 추가로, 이해상충은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금전적인 이해상충과 비금전적인 이해상충을 가장 큰 틀에서의 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18조를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연구윤리지침(2010)』 제18조 (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금전적 이해상충 -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② 인간 관계적 이해상충 -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③ 지적인 이해상충 -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④ 역할 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 교육, 봉사, 외부 활동 등 소속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 ⑤ 기타의 이해상충 -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 3) 또한, 이해상충 해결의 중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해상충이 연구윤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자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떠한 다른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나 실험에 있어서 특정한 이해관계가 편견이나 편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② 특정한 이해관계가 실제로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도 이해상충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도 이해상충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적절한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 ③ 이해상충의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연구 부정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 실질적인 이해상충이 있거나 이해상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간과하는 경우, 전문가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 사회 자본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이 전문가적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곡학아세(曲學阿世)로 비추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되면 전문가의 의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며, 이는 전문지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지식 기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위험이 됩니다.
 - ④ 연구의 과정, 평가, 발표에 있어 노골적이고 명백한 이해상충 뿐만 아니라, 그 잘잘못을 따지기 힘든 미묘한 이해상충의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이해상충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해상충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해상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더불어 세심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Q 2

지도교수가 의뢰받은 동료심사를 박사과정 학생이 대신 작성하였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동안 A지도교수에게 동료심사 요청이 많이 왔었는데 항상 B에게 전달하여 동료심사서 의견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합니다.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해서 매년 임하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 B가 한 리뷰 내용에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논문 작성자에게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박사과정 학생인데 논문 저자들은 지도 교수님이 리뷰를 해줬을 거라 믿고 의뢰한 것일 텐데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것도 교수님 갑질에 속하는 건가요?

A

동료심사(peer review)는 연구자들이 연구내용을 대중에게 발표하기 이전에 연구 내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피드백을 받게 하는 바람직한 예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료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자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적정 지식이 있어 올바른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주니어급 연구자로서 동료심사를 담당하게 되면 심사자 당사자 입장에서도 좋은 경험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내 주신 문에서는 지도교수님이 담당해야 할 심사 건을 일처리 수준에서 넘기시는 것 같으니 동료심사를 받는 연구자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해당 지도교수님은 동료심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빨리 깨달으시고 만약 시간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 한다면 동료심사를 맡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수가 자신에게 들어온 동료심사의 책무를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키는 것이 귀찮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자의 논문쓰기와 연구의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한 논문 리뷰를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하여 그대로 학술지 편집인에게 보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뷰 결과에 제자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자신이 직접 코멘트를 작성하여 보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제자에게는 자신의 코멘트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자가 잘한 점 그리고 부족한 점 등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1) 정직성의 문제입니다. 학술지 편집자는 A에게 심사를 맡겼는데, 편집자의 동의 없이 B에게 다시 맡기는 것은 편집자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 (2) 논문 심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아무리 학생의 수준이 높다고 하여도 배우는 학생의 논문에 대한 평가는 지도교수에 비해 아직 미숙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논문 심사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Q 3.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의 논문지도 및 심사위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 교수가 가족의 논문지도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아내, 자녀, 교수의 형제, 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위 예를 든 사람들에 대하여 논문 지도를 하고 학술지에 교신저자 등 공동 연구자로 올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의 학위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나요?
2-1. 고의든 고의가 아니었던 교수와 논문 심사 대상자가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이 때 교수가 논문 심사 대상자인 가족 및 친·인척과 같은 학교 소속이든 각각 타 교 소속인 경우에는 또 어떠한지요?

A

1) 교수가 가족의 논문지도나 가족 및 친·인척의 학위논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또는 부자가 함께 연구를 하여 논문을 발표하거나 책을 출판하는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자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족 또는 친·인척을 학위논문 심사위원에서 제척하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학교 소속이든 또는 다른 학교 소속이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학과의 모든 교수들과 모든 대학원생들이 수년간 서로 알고 지내는 상황에서 ‘모든 친분관계를 제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대학 및 대학원은 자체 규정으로 “학위논문심사 및 수여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 지침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의 해당 규정을 보더라도 특별한 제척 사유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의 논문 지도나 심사가 불가하다고 지정해놓지는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스스로 기피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외국의 많은 유명 저널에서는 이 <이해상충 또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조심하기 위한 노력으로 논문 제출 시 <이해상충> 공개양식을 기입하여 조금이라도 발생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4. 부부가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공동 논문 작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와 저의 남편은 서로 다른 정부출연연구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학과(박사)를 졸업하다보니 연구내용에 대한 논의 중에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부부 공동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로 SCI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각자 연구노트와 데이터 해석에 대해 주고받은 메일 등 근거 자료들이 있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공동 논문 작성을 하는 것은 안 되나요??

- A
- 1) 부자(부녀, 모자, 모녀)기간, 부부간 공동 연구를 통해 공저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령이나 규칙은 없습니다. 어떤 특수 관계에 있던 연구결과로서 발표되는 논문에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에서 저자로서의 실질적이고 지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 저서를 출판한 사례는 매우 많으며, 엘리노어 오스트롬은 남편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2) 다만 외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 연구자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족 및 친·인척을 공동 연구자로 고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연구자의 미성년 자녀를 연구에 참여시켜 연구 실적을 쌓게 하는 것 포함), 이것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에 해당하기 때문에(공적으로 지원된 연구비를 사적 친분 관계에 있는 인물을 위해 사용), 자제하기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 3) 이와 같은 이해상충을 '연구부적절행위'로 강력하게 규제하지는 않으나, '연구부적절행위'로서 스스로 회피하거나 사전에 그 이해관계를 공개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는 연구자의 가족, 친·인척 등을 연구팀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그 이유와 해당 인물의 연구 관련 전문성 등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해 강력한 금지 규정을 두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기관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5. 이해상충과 관련한 연구윤리 규정이 궁금합니다.

이해상충 등 최근의 연구윤리 엄격화 내용을 담은 학술지 표준 연구윤리규정을 제시해 줄 수 있나요?

A 연구윤리는 개별 학회의 윤리적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학술지 표준 연구윤리 규정"의 형태로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과 대학연구윤리협의회가 2019년에 [신진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첫걸음]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구글 등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2020년 5월에는 [출판윤리 길잡이]라는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들에서 이해상충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6. 논문게재 진행 중인 연구와 유사한 논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진행하던 논문게재와 이해상충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오늘 해외 저널로부터 리뷰 invitation을 받았고,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리뷰를 수행하기 위해 제출된 논문을 확인하던 중,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연구를 작년 11월, 국내 학회에 포스터로 발표하였고, 해외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최종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출된 논문의 리뷰를 진행하기에는, 이해상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해당 저널의 에디터에게 리뷰승낙 철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논문을 다른 저널에 투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타 연구자의 제출 논문과 제가 진행하고 있는 논문은, 큰 틀에서 아이디어는 유사하고, 세부 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 1) 논문 심사에서의 이해상충 회피

기존의 학술 논문에서의 심사 및 최근에 활발해진 동료심사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논문의 편집자 및 심사자는 이를 밝히고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고자가 이해상충 대상자를 사전에 알리고 제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심사자가 심사대상 논문을 보고 이해상충 문제를 밝힌 것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처로 이해됩니다.

※ 동료심사에서의 이해상충 회피 관련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The Ethics of Peer Review
<https://www.aje.com/arc/ethics-peer-review/>
- 2) Review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https://www.councilscienceeditors.org/resource-library/editorial-policies/white-paper-on-publication-ethics/2-3-reviewer-roles-and-responsibilities/>

2)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유사성 문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영역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는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유사한 연구 주제와 논문이 거의 동시에 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께서 논문 심사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매우 유사한 주제의 논문을 받아보게 되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심사를 위해 보게 된 타인의 논문이 질문자가 구상하고 있는 논문과 유사할 수도 있지만, 투고 논문을 가져다 활용한 것이 아니므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정을 잘 모르는 심사자나 독자들은 공식적으로 늦게 나온 논문을 보고 먼저 나온 타인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연구노트 작성

질문하신 문제와 유사한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된 해외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제, 시기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에 두 학술지 위원회에서는 투고자 모두에게 연구노트를 요청했습니다. 논문의 아이디어 구상부터 자료 수집, 분석, 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2명의 투고자는 각각 자신의 연구노트를 제출했습니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연구 주제와 그 결론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연구자가 각자의 연구를 독창적으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윤리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논문 역시 각각의 학술지에 게재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한다면, 연구노트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의 논문이 투고는 조금 늦었다하더라도 연구 아이디어는 훨씬 앞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논문의

투고시기 보다도 더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잘 하고 계셨겠지만 연구노트의 작성과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투고 시기

전혀 알지 못하는 연구자가 동일한 주제와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투고를 하고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 연구자의 논문 투고 시기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게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투고한 A의 논문이 학계에 널리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B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에서는 B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아니라 학술지 편집자의 논문에 대한 가치 판단 관점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논문을 진행한다면 질문자의 연구 논문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7. 출판윤리 위반 사례가 궁금합니다.

출판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출판윤리가 잘 지켜진 사례나 출판윤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궁금합니다.

- A**
- 1) 일반적으로 출판윤리란 연구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확산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주체(연구자, 편집인, 동료심사자, 출판사, 연구비 지원 기관 등)가 알고 실천해야 할 규칙이나 규범을 말합니다. 출판윤리를 누가, 무엇 때문에 지키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출판윤리의 쟁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판윤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무엇보다 “학술지”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고 이용자들이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연구자들의 성실성과 책임을 믿고 그들의 연구를 기대하는 일반 대중 더 나아가 국가 사회의 신뢰도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2) 출판윤리에는 편집인/심사자/저자의 출판윤리, 동료심사, 이해상충, 논문철회, 저작권, 우려 표명, 철회 등 다양한 하위 영역에서 윤리적 논의가 발생하곤 합니다. 출판윤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분야 학회 출판윤리 길잡이(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8. K연구원이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고 수행한 과제를 타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에 투고하여 원고료를 받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H정부출연 연구기관 K연구원이 정부 연구비로 수행한 과제를 타 출연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술지는 게재된 연구자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물론 그 원고료는 정부 연구비로 운영됩니다. 이 경우, K연구원은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정부 연구비를 받고, 그 연구의 대외적 파급을 명목으로 학술지에 투고하여 연구비 성격의 원고료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부당한 사익추구나 연구비의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A**
- 1) 정부의 연구비를 받고 수행된 결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 입장에서는 원고 투고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형태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투고자가 투고 논문에 대한 원고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당이익이다 연구비의 중복수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의 관점이 아니라 이해상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분명 투고된 논문은 국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므로 연구비 수혜에 대한 사사표기를 했을 것이므로 이를 보고 학술지측에서는 투고 논문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투고자의 입장에서 연구비 지원으로 논문 투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학술지 측에서 제공한다고 해도 원고료를 받는 것이 중복 수혜라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원고료를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원고료 지급이 투고된 논문의 1차적 이해를 침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2)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에 의하면 중복게재(이중게재, 중복출판)는 연구부정에 가까운 부적절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복게재(이중게재, 중복출판)는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출판하는 행위, 즉 거의 같은 논문을 반복해서 출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Q 9. 특정 학회 회장이 자신이 속한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Y는 해외 학자와 함께 공동연구 논문을 작성중입니다. Y는 제 1저자이고 해외학자는 공동저자인데, 현재 쓰고 있는 논문이 특정 저널인 A에 찰이 딱 맞는 것 같아서 그 쪽 저널에 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특정 저널 A의 에디터가 이 공동 논문의 공동저자입니다. 공동저자인 해외학자도 공동연구 논문이 딱 이 저널에 잘 맞을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A저널에 논문을 내려고 한다면, 공동저자인 에디터께서 자신은 이 논문심사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managing editor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모든 과정을 심사위원이 진행하면 이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 결과가 좋으면 논문이 출판되는데 그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도 특정 학회 회장이 자신이 속한 학회에 논문을 내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연구윤리에 해당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재단과 제가 속한 대학에 문의했지만, 이 부분은 연구윤리 부분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연구재단 측에서는 이곳에 문의해보라고 하셔서 여기에 문의를 드립니다.

A 최근 특정 학회의 학회장이 자신의 학회에 계속적으로 논문을 내면서 같은 심사자를 계속해서 지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출판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동료심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판윤리에서도 투고자와 심사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장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여 해당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또 공동 연구자가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을 인지하고 심사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이는 일단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게재가 되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편집장과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편집장이 관여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여지는 있다고 보므로 일체의 의혹을 피하고자 한다면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출판을 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에디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심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동료심사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 권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제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자신이 에디터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경우에는 논문 심사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집장인 경우 해당 학술지에 논문을 내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Center for Reserach Ethics Information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VII

연구부정행위 & 연구진실성 검증



Q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4항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제4항 관련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관련하여 1) 검증 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통보하라는 것인지요?, 2) 또한 해외 저널에 논문을 내는 경우도 허다한데, 그렇다면 제보된 논문이 해외 저널 논문일 경우, 해외 저널로도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통보를 하라는 것인지요?, 3) 더불어 해당 조항으로 해석하면, 검증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만 통보하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즉, 조사 착수, 조사 과정 등에서는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요?)

- A
- 1) 예,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을 하였을 때는 그 결과가 연구부정행위든 아니든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결과에 대하여 요약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알려야 하며 적어도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2) 원칙적으로 지침에서 말하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소속 기관에의 통보는 국내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증가하는 요즘에는 연구부정행위 조사가 완료되고 관련 해외 학술단체에도 조사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가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3) 통상 조사 결과의 통보라 함은 개략적이기는 하지만, 제보 내용, 조사 경과 및 결론과 그 근거 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2. 예비조사 절차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조사 착수 시에도 본조사 착수할 때처럼, 조사 착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지, 또한 통보해야 한다면 통보 대상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모두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예비조사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제보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예비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내부위원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보 사실의 접수 기일로부터 보통 30일 내에 시행을 하고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에게는 제보 사실의 접수, 예비조사 착수 및 결과 등이 전달되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Q 3. 교육부 훈령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비조사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여야 한다고 교육부 훈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착수 시점이 1)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날(ex.위원회 구성 결재 안 최종 승인 날짜)인지, 2)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날인가요?

A 현재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예비조사가 착수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면, 그것이 제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예비조사에 들어가며,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제보 내용이 본 조사가 필요한지 아니면 예비조사 단계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예비조사의 착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Q 4.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철회 논문에 대해 심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회의 규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논문이 철회된 교원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교원임용 및 징계 담당 부서에서 제보(조사요청)한다고 하는데 학회에서 철회된 논문도 교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가요? 부서 의견은 대상 논문이 철회되어 없기 때문에 학회의 연구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바로 징계하라는 것인데 해당 부서는 교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징계부서로 통보해달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A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주체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모 대학에 소속되신 교수가 모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교육부 지침 상의 책임주체는 모 대학이 되는 것입니다. 학회 또한 자체 규정에 의하여 학술지 논문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합니다. 학회 고유의 권한에 의해 논문을 승인한 것처럼 자체적인 판정에 의해 철회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검증에 대한 책임 주체가 소속기관이며 소속 교원에 대한 임용,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외부검증 결과만을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하여 대학에서 자체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이 때 해당 학회에서의 검증 결과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소속 교원에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직접 판정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내부 검증을 진행하지 않고 외부 검증 결과만으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 경우 조사결과에서의 부당성으로 인한 피해가 소속 교원에게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주체에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5. 학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2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주체의 예외)① 대학등의 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내용은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인지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교수 개인연구에서, 관련 학회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학이 전문기관에 조사 실시를 요청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요청할 수 없다면 조사에 난항을 겪는 대학은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지요?

또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을 의미하는 것인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지침 서두에 적용 대상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은 교육부 학술인문 사업과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 대학과 기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27조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이 불가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조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한국연구재단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도 판단하고 있으나, 교육부 지침 제 27조에 의하여 지정이 되어 조사과정을 수행한 적이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의 검증기관의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된 적이 있으나 아직 해당 기관의 설립 근거나 설립 움직임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교육부에 문의를 직접 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해당 대학의 자체 지침을 살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6.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으로, 연구윤리 검증을 상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아닌 케이스별로 구성된 별도 조사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사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린 결과를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제보자/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1.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아래 위원회 중 어디서 진행해야 맞는 것인가요?
 - 1) 해당 판정을 내린 조사위원회
 - 2) 해당 판정을 내린 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신규 조사위원회
 - 3) 그 외(그 외의 경우에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상기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할 경우, 아래 위원회 중 어디서 재조사를 진행해야 맞는 것인가요?
 - 1) 해당 판정을 내린 조사위원회
 - 2) 해당 판정을 내린 조사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된 신규 조사위원회
 - 3) 그 외(그 외의 경우에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부 규정에는 “조사를 실시한 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A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어디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사 또는 기각에 대한 판단은 해당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재조사 또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초의 본조사위원회에 위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 내용이 본조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거나 빠뜨린 경우이고 새로운 근거에 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또는 전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당초의 본조사위원회가 아닌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된 이의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는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재조사 ①).



Q 7. 본조사를 거치지 않는 판정에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부정행위(표절) 제보 접수받아 예비조사위원 임명 후 예비조사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내용이 명백하고 피조사자 또한 표절 사실을 소명을 통하여 인정하여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 판정을 내려졌고, 내부 지침에 의거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내부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었으나 피조사자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1) 재심의 요청 기한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지났더라도 재심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2) 재심을 해야 한다면, 이미 예비조사위원회를 거친 것이므로 바로 본조사위원회를 개최해도 무관한가요?

- A**
- 1) 예비조사단계에서 소명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본조사 불필요’ 판정 통보를 한 상태이며, 판정 통보 후 이의신청 기간이 30일 마저 지났다면 피조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만일 30일 이전 이의신청이 들어와 재조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예비조사 단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 예비조사 후 “본조사 불필요” 판정에 대해 제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예비조사 단계로 돌아가서 재개하며, 본조사 판정 후 “결과 통보”에 대해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조사 단계로 돌아가서 재개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서, 2015).

Q 8.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원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J대학에서 연구윤리진실성 조사와 관련하여 본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피조사자와의 친·인척, 논문 공저자 등의 관계에 있는 분은 제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기피, 회피, 제척 사유에 대한 기준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 A**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개정) 제22조 1항을 보면,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척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3항에서는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조사위원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입장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잘 살펴 위촉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9.

표절로 판정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조치사항 및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A 학생이 1989년 W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학생의 논문에 대하여 표절 검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W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검증 후 만약 A의 논문이 표절로 확인이 된다면 대학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되기 전인데 (우리대학은 2016. 3월 제정 시행)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서 학위를 취소해야 하나요.
- 나. 혹시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 1)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년 11월 3일, 교육부 훈령 제153)에는 “연구진실성 검증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소급 적용)를 보면,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를 보면, ①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②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③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 우리나라에 연구윤리 지침이 제정된 것이 2007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이 없습니다. 더구나 1989년 사건이라면, 그 당시에는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논문 표절 등의 개념이 희박하던 시대이기 때문에(미국에서 연구부정행위 관련 법령 “42 CFR Part 50 Subpart A”가 만들어진 것이 1989년입니다), 현재의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 (1) 검증 후, 만약 A의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면, 학위논문의 취소가 일반적입니다.
 - (2) 본 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적용할 귀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이 없었다면, 이 지침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학계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3) 본 사안이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학위논문에서의 표절 심각성 정도, 고의성 정도, 통상 학문분야에서의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록 관련 규정상 학위 취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자가 교수나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연구윤리 교육 이수,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10.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행정조치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같은 학과 동료 교수입니다. 현재 예비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제보 내용으로 피조사자도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보자가 같은 학과 동료 교수들에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검증 중이므로 학과에 관련된 일을 참여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피조사자는 동료 교수들에게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적, 법적 문제가 없는지 항의하였습니다.

*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5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와 같은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공문으로 경고를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한 피조사자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은 제보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제보자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행정조치가 적절한가요?

- A
- 1) 각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조사,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조사결과 보고 등을 처리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피조사자에 관하여 공무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당사자에게 직접 언급하거나 문건을 보낸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연구윤리위원회가 그러한 행위는 피조사자의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있게 됨을 알리고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연구진실성 검증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조사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그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은 제보자가 피조사자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것이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비롯된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연구윤리위원회가 준수해야 할 피조사자에 대한 비밀보호 책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Q 1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검증 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N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것은 검증 시효가 없지만, 이들 사업 이외의 검증 시효는 만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5년이 넘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 대학 규정에 따라 검증대상이 아니므로 각하시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 2)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논문으로 확장 시켰을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가 있을 경우에 검증 시효가 넘었더라도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는 게 가능한가요?

A 일단 대학이 정한 연구진실성 검증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해 검증 시효가 지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없으므로 제보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박사학위 논문에 명백히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데이터나 논문의 중요한 부분을 기초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이루어져 검증 시효 이후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기관의 규정에서 검증 시효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현재의 상위 지침인 교육부의 지침을 준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에 보면 대학 등 전문기관의 자체적인 연구 활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당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대학의 학위 논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를 통해 나온 학위논문 및 연구 논문을 검증 시효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가 있었을 당시의 연구윤리의 규정이나 연구윤리의 인식 수준이나 통용되는 합리적인 관행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12 연구진실성 검증 주체 및 행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학교 소속의 연구자가 학회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제보자를 통해 해당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학회에 제기되었으며, 제보를 받은 학회는 자체적으로 이를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회는 자체적으로 의결한 연구부정행위 결과를 본 소속기관인 학교에 통보하였습니다.

위 상황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 주체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여 결과를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학교가 다시 한번 이를 검증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이를 검증하지 않아도 될 경우, 학회에서 내린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징계 등)이 가능한가요?

A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명백하여, 더 이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 피조사자가 시인하고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대학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학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과 후속 조치를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비조사위원회는 열어 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학회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결정하려면 누군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한 결정사항은 절차상 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불복한다면, 대학이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열어 본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Q 13. 조사자(연구 책임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전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사전 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 저차표기(자녀 논문 공동게재)로 제보를 받은 건인데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조사자(연구 책임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전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증거보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3조 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전조치에 명시된 것은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인데, 일단 “실험실 출입제한”은 명확하고, “관련 자료의 보전”에는 연구노트, 실험기록, 실험결과물, 논문 원고와 참고자료(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파일 및 다른 기록 매체 포함), 필요에 따라 실험에 사용되고 남은 도구장치, 재료, 시약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 수행될 필요성이 있는 연구에는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의 관리감독 하에 꼭 필요한 출입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Q 14. 교육부와 K대학의 연구윤리 규정 조항 중 어떤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현 교육부 지침(2018.07.17. 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예비조사보고서에는 ‘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교 규정에는 위 내용에 대한 규정조항은 없어서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지만, 관련 논문 중 논문 한 편이 국가R&D 과제인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예비조사보고서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을 포함되지 않으면 예비조사결과보고서는 절차 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해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면 서면 또는 대면 진술 모두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A**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규범이므로, 대학 자체의 규정보다는 상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지침에 맞게 대학 자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지침 제3조 1항에서는 교육부 등 정부 지원 연구과제일 경우, 이 지침을 직접 적용하게 되어있고, 제3조 2항에서는 교육부 등 정부 지원 연구과제가 아닐 경우, “이 지침의 제2장, 제3장, 제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 제3조 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등에는 교육부 지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 R&D 사업에는 교육부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3) 지침 제29조 2항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이 빠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제보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나(제14조 2항), 피조사자의 진술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면이든 대면이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부여하여 제기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여부와 그 근거와 관련하여 피조사자의 변론(소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3조 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가 피조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경우, 피조사자는 여기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피조사자가 직접 대면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Q 15.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제보자 성명)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하고 공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및 본교 연구윤리 규정에도 제보자의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제보자 성명)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하고 어느 대상자에게까지 공개해야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보자는 가급적 제보자의 신원, 비밀을 누설하지 않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1) 예를 들어,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본조사 위원회 구성 및 진행을 위해 실무부서처장, 총장께 결재를 올리게 되고, 위원회 위원께 제보 내용을 알리게 되므로 제보자 성명이 공개되도 되는지요?
- 2) 피조사자에게는 제보자 실명이 공개될 수 있는지요(제보자는 원치 않고, 피조사자가 공개를 원할 경우 등입니다)?

A 연구윤리는 연구 공동체의 윤리적 자율성 신장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기준 규범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개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 처장, 총장 등에게 결과를 보고할 때 제보자 신원을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지침에 없으므로, 개별 기관 및 조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신원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면, 가급적 공개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지침의 방향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피조사자에게는 제보자의 신원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침 제14조 5항에 따라 제보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보자가 신원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보 내용은 피조사자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써 충분합니다. 물론 만약 피조사자가 사법부의 판단 등을 구해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 이때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3) 제보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익명의 제보도 조사가 가능합니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2항).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지침 제14조 4항). 제보자의 신원은 조사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일부 행정직원 등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침 제22조 “조사위원의 기피, 회피, 제척 등”을 위해서인데,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는 조사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보자의 신원을 알게 된 사람은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즉, 개별 기관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단, 허위 제보일 경우에는 제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지침 제14조 7항).

Q 16. 외국 학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등의 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내 학회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1) 외국 학회에서는 연구부정행위로 논문이 취소될 경우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 만약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연구자 개인에게 “연구 부정에 따른 논문 취소” 사항을 통보했을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에 알려야 하는지 여부와 반드시 알려야 한다면 대학 내에 설치된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등으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
- 1) 현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 4항에는 개별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직접 연구자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외국은 상위기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42 CFR part 50 and 93”의 93.315 규정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를 ORI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93.411 (d) 규정에 따라 미국 보건당국(HHS)이 피조사자의 고용주(respondent’s current employer)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캐나다 “Tri-agency Framework” 6.1.4 (a), (b) 규정에서는 3대 학술단체연합기구(한국의 연구재단 수준)에서 조사결과를 피조사자, 피조사자 소속기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 현재 지침만으로 본다면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한 대학 및 연구기관은 연구자 소속기관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연구자에게만 통보하고 소속기관에는 통보하지 않는다면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입니다. 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스스로 알려야 할 의무는 현재로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한 대학 및 연구기관이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부서에 결과보고서 등 문서를 전달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입니다.



Q 17. 예비조사위원의 실명 명단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윤리 예비조사위원회 실시 결정 및 위원구성 후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실시 여부를 통보 하면서 예비조사위원의 실명 명단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 A**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 2항에 따르면 본조사위원의 명단은 “본조사” 단계에서 “제보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조사” 위원 명단은 피조사자와 제보자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제31조 2항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며, 3항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이는 본조사위원 명단을 피조사자에게 통보할 경우, 개인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3) 아울러 제22조 1항에 따라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친·인척 관계, 사제관계,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인사는 본조사위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3항에 따라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18. 제보자 없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표절과 관련된 연구윤리 검증 시 제보자가 없고, 행정에서 연구실적을 검토하던 중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면, 행정 쪽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보 없이도 조사가 가능한가요?

- A**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 8항은 “대학 등은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2항은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 등 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학생, 직원, 일반 시민 등이 의혹을 제보하고, 대학이 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Q 19. 연구윤리 본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22조에 “해당 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부분이 있는데 피조사자는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 요청할 수 없는지요? 그리고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A 문의하신 바와 같이 제보자에게는 제22조 1항에 따라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이해상충 여지가 있는 인원의 제척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조사자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이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대신에 피조사자를 위해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1조에 따라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Q 20.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기간 6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상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는 1개월(1개월 연장) 총 조사기간 6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 간 이견 발생, 사실관계 부인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 및 타 기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단이 필요하여 총 조사기간 6개월을 초과 할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1)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의결사항으로 근거를 남겨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2) 타 기관에 제보하여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은 조사기간에서 산입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조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6개월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4조 2항에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조사위원회 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침의 취지상, “6개월 이내”라는 조건은 의무사항이기보다는 권장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에 특별히 어려운 조건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부정행위 자체의 검증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21.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기간을 8개월로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대상 법령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질의 사항
 - 대학 등은 제15조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른다는 것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와 동일하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1) 예를 들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 자체 규정은 8개월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예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검증 시효가 없어졌는데 대학은 검증 시효(예 5년)를 둘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A**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나와 있는 표현 문구상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준수해야할 사항이므로, 지침과 동일하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규정 부분은 대학 등 기관 자체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을 마련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학 등 기관 자체의 윤리 규범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나 법령보다 엄격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교육부 등 국가 지원 연구과제에는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제3조 1항),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과제에는 “시행할 수 있다”(제3조 2항), “적용할 수 있다”(제3조 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과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도 해석은 가능하지만, 지침을 마련한 취지로 보아 이 경우에도 가급적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2) 지침 제24조 2항에 따라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도록 규정하므로, 일단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항에 있는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과거 지침에는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지침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자체 규정도 이 원칙을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지침을 소급하여 과거의 행위를 판단할 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지침 제13조 1항 2호),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지침 부칙 제2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22. 연구부정행위 검증 단계 중 “본조사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1조2항2호에 따르면,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구 분야 설정시, 참고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있나요(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연구분야를 설정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해당 연구분야”의 절대적인 구분 기준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문학, 이학, 공학 등 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너무 넓고,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학과 단위 기준도 오늘날처럼 영역 세분화가 일어난 상황에서는 매우 넓게 보입니다. 인문계라면 “한국 현대시 전공”이나 “미국 현대소설 전공” 정도의 수준, 의학이라면 진료과목(클리닉) 수준의 세부 전공까지 들어가야 해당 연구분야라고 보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다음 링크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분류” 표가 있으며 여기에는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분류 또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Q 23. 피조사자에게 제보 내용의 어느 범위까지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제2항에 따르면 피조사자에게 제보 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제보 내용은 어느 범위까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제보자가 제출한 제보서의 인적사항만 지우고 전부 알려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접수한 부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조사자에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대상이 된 연구 결과물의 제목, 연구부정행위 형태(위조, 변조, 표절, 저자표기, 중복게재 중 어느 것이 문제인지 등),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증거가 제보된 부분(페이지)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검증대상 연구 결과물에 대해 예를 들어 5가지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었는데, 그 중 3가지만 피조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제보에 포함된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자체는 모두 피조사자에게 충실히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조사자가 의혹 소명을 위해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인지도 알려주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24. 미성년(고등학생) 저자가 포함된 프로시딩 논문을 발표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대학별 미성년자 자녀 논문저자와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대두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학 차원에서 예비조사를 진행하던 중 본교 소속의 한 교수가 자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인근 고등학교 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R&E 지도교수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미성년자(고등학생) 저자가 포함된 프로시딩이며 현재 공동저자(제1저자)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 차원에서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지 만약 그렇다면 해당 지도교수에게 소명서와 연구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출자료에 따라 대학 진실성위원회에서 이를 R&E연구로 인정하고 연구부정행위가 아님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만으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을 내려야 하나요?

- A**
- 1) 문의하신 사안은 연구부정행위 유형 중 ‘부당한 저자표기’, 즉 고등학생들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1항 4호 가목)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2)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제보자의 제보에 따라서 시작할 수도 있고, 대학 자체의 인지에 의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지침 제6조 8항).
 - 3) 그러나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습니다(지침 제17조 1항).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조사는 조사위원회의 증거 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보자의 제보 역시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지침 제14조 1항). 따라서 단순히 의혹이 제기된 상황만으로 곧바로 연구부정행위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고, 나중에 해당 교수로부터 법적 분쟁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 4) 반드시 충분한 증거 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예비조사 또는 본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제보 접수 후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거나 합리적 의심이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이 확인된 후에 본조사 단계로 넘어가서 지침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지침 제21조), 해당 교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고, 해당 교수의 변론 소명을 청취한 후(지침 제17조 2항) 비로소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판정을 내린 후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해당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지침 제25조), 그 절차까지 종료된 후에야 조사결과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 5) 이상의 절차들을 신중하게 따르지 않을 경우, 피조사자인 해당 교수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25. 실무 업무를 할 때,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의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인지 궁금합니다.

- 1)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절차시 어떤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 2) 검증 후 부정행위 수위에 따른 판정은 어떤 것이 있으며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모든 조항들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것이므로, 모든 조항들이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를 보면, 제14조에 따라 제보를 받고, 제19조에 따라 예비조사 실시, 제21조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 제20조에 따라 본조사 실시, 제12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판단, 제24조에 따라 판정 도출, 제25조에 따라 이의신청 기회 부여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중간 중간에 제보자의 권리, 피조사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누가’(피조사자, 참고인 등 해당되는 사람들의 역할 등), ‘무엇을’(학술지 논문, 저서, 연구노트, 프로시딩의 발표 논문 등의 연구 결과물의 유형) 작성하는 데에서 ‘어떻게’(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표기 등 연구부정행위 유형) 행동했는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제보도 이루어질 수 없고, 조사와 판정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해당 연구부정행위가 의도적으로 행해졌는지, 과거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이러한 행위가 학계나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조사 방해, 그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 7가지 유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따라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추가됩니다. 이들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명백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행위)는 연구윤리에서 ‘연구부적절행위’로 지칭됩니다. 통상적으로 명백한 연구부정행위는 엄하게 다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연구부적절행위는 연구부정행위보다는 경하게 처리됩니다.

지침 제23조 3항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하도록, 즉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는 엄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가벼운 조치로는 주의, 경고에서부터 엄격한 조치로는 파면, 해임, 형사 고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자율성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Q 26. 예비조사위원이 본조사위원으로 연속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1조에 의거 예비조사위원을 구성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해도 되나요?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1조에 의거 예비조사위원을 구성할 경우, 예비조사위원이 본조사위원으로 연속해서 활동해도 되나요? 연속해서 활동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A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 1항에 따르면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원칙적으로 예비조사에서는 본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지침 제19조 2항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용이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본조사 없이 판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보자와 피조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조사를 거쳐 모든 의혹을 해소한 후 판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2) 지침 제19조 1항은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지침에는 본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침만 존재(제21조)하므로,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동일한 인사들로 구성된다고 해도 일단 규정상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비조사위원회는 본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예/아니오’로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학문별 특수성’이 적게 고려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학문별 특수성’에 따라 전문가를 섭외하여 구성하는 기구이므로,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동일하게 구성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완전히 동일한 인물들이 2회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 공정한 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조사위원과 본조사위원이 일부 중복되는 것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학문별 특수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구성에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물론 예비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본조사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장점은 예비조사 단계에서 논의되었던 것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 등을 연계하여 본조사위원들과 공유할 수 있어 검증의 효율성 및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Q 27. 본조사 진행 전 해당 논문의 저자가 논문을 철회하여도 계속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부정행위 검증요청 신고 이후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논문 저자가 논문 철회했을 경우, 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발생했을 때, 검증 절차는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부령(「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미래부 부령)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및 기간)

①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로 이루어진다. 다만, 검증기관(검증 주체인 전문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5조제3호에 따른 검증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검증기관의 장은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검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과부 훈령)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2) 예비조사를 마치고 본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셨기에, 예비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조사는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때 예비조사의 주체는 연구기관이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아니며, 부정행위 의혹이 충분한 경우라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조사에 착수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예비조사의 목적은 많은 행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본조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의 확인이 명료하거나 피조사자가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반대로 제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조사 또는 처리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의혹 정도가 미미할 경우에는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논문 저자가 피조사자이며, 논문의 자진철회가 부정행위를 인정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피조사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 경우라면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 저자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을 벗어나고자 논문을 자진 철회하였을 경우도 있으므로, 비록 논문이 철회되었다고 해도 그 논문에서의 연구진실성 여부를 끝까지 파악하여야 하므로 조사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Q 28.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도 연구윤리 위반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11.3.) 되면서 제2조 정의에 포함된 거 같습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포함되면서, 1) 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에 해당하지 않았는지?, 2) 만약 2014년 특허 연구윤리 위반 등 의심이 된다면 현 시점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한지?, 3) 특허도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에 제4조(적용범위)에 “이 지침은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 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로 되어 있어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침의 부칙 제2조(소급 적용)에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현 시점에서도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통상 특허 문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처 등에서 일차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며, 특히, 특허 문제에 연구윤리와 관련되어 있다면 연구진실성 검증을 하는 조사위원회에 특허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증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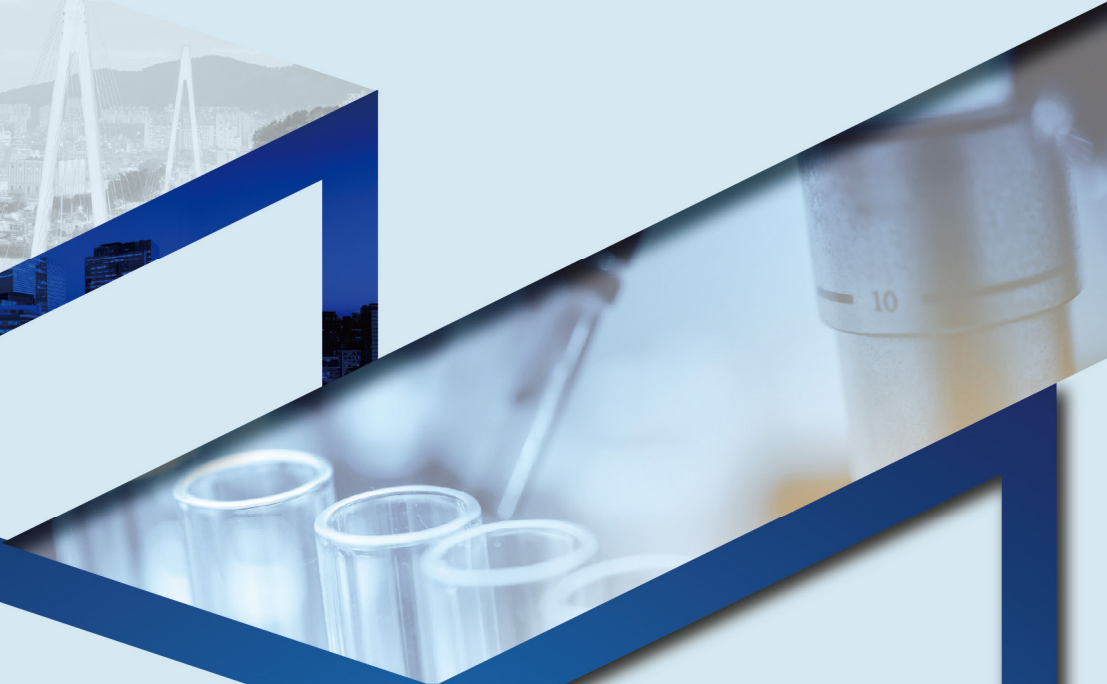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VIII

부실학술활동



Q 1. Fake Journal인지 모르고 13편의 게재된 논문으로 연구실적을 채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학은 B 교수가 2015-2018년까지 발표한 13편의 논문에 대한 저널명, ISSN, 발행일자 등을 확인하고 B 교수의 연구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B 교수는 자신의 논문이 부실학술지에 실린 것을 논문의 공저자로부터 듣고, 교무팀에 관련 사실과 자료를 보냈습니다. 조사 결과, B 교수가 논문 게재한 저널인 Jokull은 BEALL'S LIST OF PREDATORY JOURNALS AND PUBLISHERS(<https://beallslist.weebly.com/hijacked-journals.html>)에서 Fake Journal(<http://www.jokulljournal.com>)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식 저널(<http://jokulljournal.is>)에 메일로 확인 결과 13편의 논문들이 게재된 사실이 없는 반면 해당 교수의 논문 13편은 가짜 저널의 DB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식 저널에서 제공해 준 가짜 저널 사이트도 교무팀에서 조사한 BEALL'S LIST OF PREDATORY JOURNALS AND PUBLISHERS 과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청드릴 사항은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일 해당이 된다면 세부적으로 몇 항을 위반한 것인가요?

A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CRE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거나 판정내리는 기관이 아니며, CRE의 모든 의견은 법적인 판결 또는 판정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해 드립니다.

우선 3년간 13편의 논문을 가짜 저널에 투고하여 발표했다는 사실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 본다면,

- 1) 가짜 저널임을 알고 진행하였는지 여부
 - (1) 저자가 가짜 저널을 모르고 투고하였다면 어떤 잘못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저자들 역시 선의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저널 투고료까지 자비로 냈다면 더더욱 그럴 것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고의적인 잘못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얻은 승진이나 연구비 등의 이익이 있다면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설령 가짜 저널임을 “알면서도” 논문을 투고했다 하더라도, 연구윤리 지침상의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사안 자체가 연구윤리 지침 내에 존재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논문실적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하거나 연구비를 받았다면 대학의 업무수행 방해, 공금횡령 등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역시 연구윤리 지침 내에서 해결하거나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 2) 단기간에 많은 논문이 작성된 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13편의 논문을 투고했을 때, 그 13편이 모두 독창성이 있는 논문인가의 여부. 해당 논문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 사건을 연구 윤리적 측면으로 검증해야만 한다면 아마도 이 부분이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래 해당 교수님의 진술과 연구윤리위원회의 사전조사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심증적으로 판단하건대)

 - (1) 우선 투고하던 시점에 해당 저널이 fake 저널임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며,
 - (2) 해당 저널에 투고하면서 들어간 모든 비용을 해당교수가 직접 자비로 냈으며,
 - (3) 무엇보다 해당 교수가 해당 저널이 fake 저널임을 알고,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먼저 제보하여 바로잡으려 했던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교수에게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잘 해결하시면 큰 윤리적인 파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연구윤리관련 지침의 범주에서 다루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안을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판정할 문제인지 또한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2 Beall's list처럼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부실학술지 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WASET이라는 학술단체로부터 해적학술지란 명목으로 문제 있는 학술지들이 Beall's list란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해적 학술단체 기준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연구윤리정보센터에 따로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나요?

A 저희는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Beall's list의 경우 해외이긴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되는 자료라는 인식이 강한 비공식 자료인지라 저희가 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해당 웹페이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구윤리정보센터는 어떤 학술단체를 해적단체다 아니다를 판단할 권리(권한)이 없고, 책임있는 기관의 판정과 판단을 공유할 수만 있기에 안타깝게도 현재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학회와 학회지에 대한 판정과 척결을 위한 움직임이 교육부와 국회, 대학 등의 협의체를 통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덧붙이자면, 권위있는 교수님께 들은 바로는 학술단체(저널)의 Fake 여부는 그곳에 투고하거나 활동하는 교수님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겪어본 사람이 아닌 행정일선에서는 알기 힘들다는 이야기의 반증도 될 것입니다.



Q 3. WASET 같은 부실학회 참석을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조사/징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상 연구부정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저자표기, 중복게재 뿐인데 WASET은 위의 카테고리에는 속하지 않는데.... 이 또한 연구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안인지요?

A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CRE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거나 판정내리는 기관이 아니며, CRE의 모든 의견은 법적인 판결 또는 판정이 될 수 없음을 명시해 드립니다.

가짜 학술대회 또는 가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이 연구부정행위인가?에 대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고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면, 교육부나 대학의 관련 지침에 나와 있는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도 무척 궁금할 것입니다.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만, 특히 가짜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논문 발표하기 또는 가짜 학술지에 논문 게재하기 그 자체를 곧바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연구자가 가짜 학회 또는 가짜 저널에 논문을 발표한 것 자체만으로는 연구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임을 모르고 투고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정법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행위(예 : 남의 집 유리창을 깨는 기물파손)라도, 실수로 모르고 한 행위(야구를 하다가 공이 날아간 경우)와 알고 한 행위(상대방에 원한이 있어서 고의로 깨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판단이 내려집니다. 연구자가 가짜 저널임을 모르고, 가짜 저널에 1-2회 정도 논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곧바로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발표 행위 자체만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것인 아니라, 그 논문 1-2편을 검토해 보았더니 그 안에서 위조, 변조, 표절, 저자표기 위반, 중복게재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가짜 저널이나 가짜 학술대회임을 알면서도 연구자가 단기간에 많은 연구 업적을 쌓을 목적으로, 또는 연구비를 수령할 목적으로(일부 대학에서는 해외 저널에 논문을 발표할 경우, 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면 충분히 의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1) 논문 자체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가? (2) 가짜 저널임을 알면서도(소속된 학계에서 주의조치를 했음에도) 논문을 발표했는가? 등이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참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기 등에 해당되는가를 보면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기타 학문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명확한 조치를 위해서 좁게 판단할 경우, 부당한 성과관리와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판단 및 조치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속기관, 연구사업 주관부서, 감사당국 차원에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4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MDPI 출판사가 발행하는 JCR 등재지의 약탈적 저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에 MDPI 출판사가 발행하는 Applied sciences 저널에 2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Applied Sciences 저널은 JCR 등재지로 impact factor 1.689 입니다. MDPI 출판사는 Beall's list에 올랐다가 2015년 10월에 삭제된바 있습니다. 위 저널에 2편의 논문이 게재된 후 저희연구소에서는 몇몇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소위 약탈적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면서 비난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연구재단에 문의도 해 보았지만, 실제 확실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제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느끼고 있는데, 혹시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는 MDPI 출판사가 발행하는 JCR 등재지의 약탈적 저널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나요?

A

- 1) 연구윤리정보센터는 어떤 심사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저널이 약탈 저널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해당 학문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해야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약탈 저널 판단 문제는 SCI/SCIE 등에서도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등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결정이 내려지는 업무입니다.
- 2) 연구윤리정보센터가 발행한 “이슈페이퍼 50호 : 2018, 부실 학술행위와의 전쟁”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정상 저널과 약탈 저널의 “경계선 상에 있는 저널”들이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힌다위” 출판사도 Beall's list에 올랐다가 삭제되기도 했습니다(wikipedia, “Predatory open-access publishing” 참조). 그러나 Beall's list가 약탈 저널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제프리 빌(J.Beall)이라는 서지학자가 약탈 저널로 의심되는 출판물들의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서, 약탈 저널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는 데 큰 공로가 있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일이다보니,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이슈페이퍼는 다음 위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re.or.kr/board/?board=newsletter&no=1389321>
- 3) MDPI 출판사는 2014년 약탈 출판사 목록에 등록되었다가 2015년에 삭제되었고, 해당 저널은 현재 SCIE와 Scopus 등에 정상 저널로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프리 빌이 MDPI 출판사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고, SCIE와 Scopus 등도 영리 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공신력과 객관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3) 약탈 저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약탈 저널로 판정하는 데 오랜 시간의 관찰과 조사가 필요하듯이, 한번 약탈 저널로 판정되었다가 다시 정상 저널로 위치를 회복하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노르웨이 아카데미에서는 MDPI 출판사에 대해 최하등급(Level 0)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아카데미에서는 아직 MDPI 출판사를 학문적 기여 가치가 없는 약탈적 출판사로 분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wikipedia, “MDPI” 항목 참조)
- 4) 지금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자면, MDPI 출판사와 Applied Sciences 저널이 약탈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지만, 앞으로 MDPI 출판사의 저널들에 투고하는 행동은 신중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5. 약탈적 저널에서 논문 투고에 돈을 요구하였고,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Academia Publishing 이라는 곳에 논문을 접수하면서 게재 비용 할인 등 이상함을 느껴 접수 취소를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저널에서는 논문이 승인되어 취소가 불가하다는 답변 뿐 입니다. 이후 타 저널에 투고 하려고 하였는데 AcademiaPublishing에서 Publish ahead of print 상태로 두어 동일 내용으로 검색이 된다는 답변을 받아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 입니다. 이 후 타 저널에 투고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이에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A**
- 1) 약탈 저널들은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게재 승인을 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닌, 다음 논문 출판 절차에 대한 안내 메일이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약탈 저널들은 한 편의 논문이라도 더 받아서 무조건 발표를 하면 자기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취소는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 2) 해당 약탈 저널이 이미 접수된 원고를 공개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이 된다면, 다른 곳에 투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논문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어야 함을 최우선 조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은 약탈 저널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 업체이니, 국내법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새로운 주제를 잡아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3)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약탈 저널 예방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있으니(현재 우리 연구윤리정보센터 홈페이지에도 동일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앞으로 연구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6. A논문을 약탈적 저널에 투고 후 국내 다른 저널에 투고하려 합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탈적 저널 관련 자료 중 약탈적 저널과의 메일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타 저널에 투고 시 증빙을 하면 투고가 가능하다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 중입니다. 만약 국내저널에서 질문 사항이 올 시 해당 자료를 통해 증빙을 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해외 업체라 처벌이 힘들다면 고발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인가요?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 관련 자료들은 첨부가 되지 않아 필요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
- 1) 문의내용은 “약탈 저널에 투고한 것이 확실하다고 증명될 경우, 이를 다시 게재해주겠다”는 의향을 밝힌 저널이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개별 저널이 약탈 저널 피해자를 구제해줄 것인가 여부는 그 저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공개된 연구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다시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저널은 약탈 저널 피해자를 구제해 주겠지만, 다른 저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탈저널 피해자 구제 여부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이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는 것이 가장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2) 약탈저널 A에 발표한 논문을 다른 저널 B에서 인정하고 게재해주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본인의 연구 업적으로 내세워서 C 대학에 취업하려고 할 경우, C 대학은 “A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B저널에 다시 발표한 실적은 중복게재에 해당하므로 취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저널은 약탈 저널이었고, 이 사실을 B 저널이 참작하여 논문게재를 인정해주었다”고 변명하더라도, 그것은 B저널의 판단일 뿐, C 대학이 B저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시 C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또한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의 감사에서도 “A 저널에 발표한 논문을 B 저널에 다시 발표했으므로 중복게재”라고 판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부, 과학기술부 역시 B 저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탈저널 피해자 구제 여부에 대해 아직 국내에 통일된 규범이 없기 때문입니다.
 - 3) 법률을 통한 약탈저널 대응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모든 법률은 ‘국경’이라는 한계를 갖습니다. 한국 법률은 한국 영토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약탈저널은 인도의 OIMCS, 터키의 WASET 등과 같이 대개 법률이 허술한 제3세계 국가들에서 활동합니다. 미국 법원이 OMICS를 제재한 사례가 있지만, 이것은 OMICS 지사가 미국에 있고, 다수의 미국 연구자들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지사가 없는 약탈저널은 미국 법원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인도,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약탈저널 본사가 소재한 국가의 정부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자국민에게는 별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학회와 학계에 “이런 약탈저널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만약 해당 약탈저널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연구 선진국에 지사가 있다면, 해외 관련 학회에도 제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진국 소재 학회들에서 유사한 제보가 이어지면, 해당 국가 정부가 나서기 때문입니다.

Q 7. Longdom Publishing SL Group SA라는 학술지가 부실학술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omics international 이라는 학술단체에 속한 학술지 Journal of Aquaculture Research & Development가 있는데 최근에는 Longdom Publishing SL Group SA 라는 학술단체로 옮긴 것 같습니다. 해당 학술지의 ISSN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학술단체를 옮긴 이 학회지가 부실학술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 A**
- 1) 이 학술지 및 Longdom 출판사는 “Beall’s list”나 “Stop Predatory journals” 등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Dolos list”, “Caltec Libguides” 등에서는 “Questionable”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2) “Clarivate” 사이트(SCI 관리하는 곳)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Scopus” 사이트에 이름은 등재되어 있으나, 발행 논문 수, 논문 평점 등 관련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Scopus Title List” 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한 결과, 해당 학술지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실 학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3) 부실 학술지 및 부실 학회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1)과 (2)에서 소개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wikipedia에서 해당 학술지, 학회, 출판사 이름을 검색하면 됩니다. 아주 심각한 부실 학술지 및 부실 학회는 wikipedia에 별도의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4) 정평 있는 학술지라면 “JCR impact factor”(“Clarivate”에서 운영)이나 “Scimago Journal Rank”(“Scopus”에서 운영)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실 학술지들은 그 밖의 덜 알려진 impact factor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Journal of Aquaculture Research & Development”는 “Scimago Journal Rank”에 검색되기는 하지만, 출판사는 여전히 OMICS로 되어 있고, 그나마도 2014년에 평가가 중단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지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Scimago Journal Rank”에 등재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Q 8. 부실학회인 IACSIT가 co-organizer로 된 학회가 부실학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외학회에 발표를 진행하려고 하었는데, 이 학회가 부실학회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특히 co-organizer인 IACSIT는 부실학회 및 fake journal 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여러 기관에 등재되어있어서 더욱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이 학회가 부실학회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학회명 : ICCMS 2020

* 웹사이트 : <http://www.iccms.org/>

* 학회 co-organization : CQ University, IACSIT

* IACSIT 웹사이트 : <http://www.iacsit.org/>

A 연락처가 “Email : iccms@iacsit.org”로 되어 있으니, IACSIT가 직접 개최하는 학술회의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IACSIT는 “뉴스타파”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 유명한 부실 학술단체입니다. 관련 기사 : https://newstapa.org/article/n8G3_

또한, “Stop Predatory Journals”에서도 “publishers” 부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 저널들을 보아도 ESCI 등재지 1편이 있을 뿐, 다른 것들은 모두 Scopus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Scopus 자체는 엘스비어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정상적인 학술지 색인 서비스이지만, Scopus 등재 사실이 우수 학술지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정상적인 학술회의 및 저널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Center for Reserach Ethics Information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IV

데이터 관리



Q 1. 동료 연구원이 자신의 데이터 원본을 몰래 가져간 것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실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이며, 이것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쭙보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저의 데이터 원본이 다른 사람(A) 폴더에 몰래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구실 공용 기기 컴퓨터에는 연구원 마다 각자의 폴더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른 사람의 데이터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지만, 타인의 데이터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언젠가 용량 문제로 데이터 정리를 하겠다는 공지가 있었고, 해당 기기에 저장된 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검색하던 중 A의 폴더에 제 이니셜 표기된 데이터 원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폴더를 또 다른 이름의 폴더에 숨겨 놓아서 다분히 데이터를 고의적으로 옮긴 흔적이 보였고 제 이니셜 폴더 생성날짜는 A가 실험한 일시와 일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에게 두 차례 추궁하였으나, A는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는 상태입니다.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고 제 데이터를 훔칠 충분히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 문제가 연구윤리 부정에 성립할 수 있는지, A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구 결과물은 그 사용에 따라 개인적/공용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자신이 생성한 연구결과를 학위논문 또는 학술논문으로 출판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을 자신의 고유한 소유물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결과물은 해당 연구 과제의 최종 산물을 만들기 위한 공용 데이터라고 할 수 있기에 개인적 소유 및 사용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권은 원천적으로 과제를 발주한 기관 또는 연구가 이루어진 기관에게 있기에 해당 데이터를 누가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는 계약사항에 따라 처분됨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사항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적 사용이 허락된다 하더라도 연구 책임자 이하 모든 연구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질의자님은 연구 데이터를 개인 소유물로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는 연구 책임자 및 연구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신 뒤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질문자님의 데이터가 A의 폴더에 숨겨져 있다는 점

윤리적으로 볼 때 자신이 만들어 낸 결과물 이외에 타인의 것을 당사자와의 합의 또는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그 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A가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데이터 편취를 통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침해하려 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A가 기기관리 실무를 맡고 있기는 했지만, 모든 사람이 해당 기기를 이용하고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2차례에 걸친 데이터 정리 작업 중에 벌어진 단순 실수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A가 실제로 이것을 이용해 어떠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나 그런 의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2) 명확한 데이터 관리 원칙의 부재

질문에 서술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 연구실에는 데이터의 관리 및 소유에 대해 내부적인 규칙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고, “암묵적인 룰”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도 불편한 오해로 인해 연구진 간의 팀웍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연구 책임자 이하 모든 연구원들이 함께 협의하여 데이터 이용에 관한 내부적인 규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현재는 질문자님의 심증만 있고 고의성을 입증할 물증이 없으며, 데이터 관리에 관한 명확한 내부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A에 의해 질문자에게 실제적인 침해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불편하신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습니다만, 심증만으로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부정행위의 가능성만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번의 논란 사항을 연구 책임자에게 알리고 연구 결과물 및 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명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심이 어떠실지 권고 드립니다.

Q 2. 두 연구실의 연구 책임자가 사용 권한에 대한 승인 없이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B는 A에게 연구결과(A가 진행한 용역기관 연구 결과물(원본 연구결과 파일-raw data file, 연구결과 보고서 등))를 활용하여 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공지하고 연구결과 공유를 부탁하여 A는 B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통해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연구결과를 전달해 주는 메일 상에는 사용 권한, 제한사항에 대한 어떠한 단서가 되는 조항이 없었으나, 추후 구두로 A의 승인 하에 사용할 것을 제한하였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로, 증거능력이 있는 어떠한 증거물(이메일, 회의록 등) 제시도 없이, A는 자신의 과제 참여연구원들(A에게 연구비 제공, 월급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의 공통된 진술에 대한 정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제공한 연구결과를 사용하여 논문을 출간한 B는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데이터 사용에 대한 권리는 데이터의 소유권자에게 있기에 데이터 사용에 대한 권리양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소유권자보다 이용자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 1) 우선 A와 B가 같은 연구기관에 있는지, 다른 연구기관에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수행한 모든 연구결과는 연구기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raw data의 소유권도 A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기관에 있습니다. (아니면 연구기관에 fund를 제공한 후원자에게 있습니다.)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떠날 경우, raw data나 연구노트를 연구기관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판단은 연구기관이 공적으로 내려야 할 성질이지, A나 B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2) A는 ‘사전에’ A의 승인 하에서만 연구결과를 사용하도록 ‘구두로’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했고, B는 처음부터 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것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가 초기에 A에게 “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겠다”고 밝힌 문서 또는 이메일 증거가 있다면 B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A가 이 문서 또는 이메일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제공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3. 연구 책임자가 최근 자신의 연구실에서 투고한 논문에 3명의 학생의 데이터 위조를 발견하여 신고하였을 때, 연구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연구 책임자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투고된 논문의 데이터 위조를 발견하여 그에 맞는 조치로 우선 투고한 저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저널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의 부정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명을 요구하여 한 명은 소명하였고 나머지 학생들(이미 졸업생으로 타 기관에 재직 중임)은 소명없이 학교에 연구 책임자에게 왜 이런 걸 하느냐며 메일을 보내고, 교육부에 갑질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 책임자가 연구 부정의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이에 합당한 절차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학교는 연구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뭐냐며 저에게 규정을 찾아오면 이 학생들에게 관련 메일을 보내겠다고 하네요.

- A**
- 1) 문의하신 분께서 데이터 조작이 의심되는 확실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그러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편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우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측하건대, 연구 책임자(교수) 지도하에 3명의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여 저널에 투고한 것 같은데, 논문 발표 전이라면 투고를 철회하고, 내부 징계 등으로 처리가 되겠지만, 논문 발표 후라면 논문 철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소집 및 조사 등 좀 더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 점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 3) 연구 책임자가 논문 원고에서 데이터 위조를 포함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그 즉시 저널 측에 알려져 동료심사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며, 논문 저자들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오류를 바로잡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입니다. 또한 이는 연구 책임자만이 아니라, 동료심사자 또는 저널 편집자 등도 할 수 있는 역할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상의 오류 사실이 명확하다면 신고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4) KIRD에 “연구 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교육”이 있고, 그 안에서 연구 책임자가 해야 할 연구윤리 관련 역할들이 있으나, ‘연구 책임자’가 져야 할 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개별 연구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작성하게 되는 “협약” 또는 “계약서”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연구자’와 그 연구자를 관리해야 할 ‘연구기관의 장’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정해진 대로만 한다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연구자 본인, 그리고 소속 대학의 총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구 책임자’는 일단 이 규정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연구자 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으로는 제30조 1항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6) 그리고 대학 총장 등 ‘연구기관의 장’이 지켜야 할 책임으로는, 제9조 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28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9.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제30조 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 1항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윤리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그 기관의 장(즉, 총장)이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됩니다. 관행적으로 연구 책임자는 개별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9조와 제28조의 업무를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0조와 제31조의 업무는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7) 따라서 대학은 연구윤리 확보에 최종 책임이 있는 총장의 명의 또는 총장으로부터 연구윤리 확보 업무를 위임받은 연구처장, 연구진실성위원장 등의 명의로 연구부정행위 의심 당사자에게 사실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Q 4. 논문 출판 전 동료의 졸업 논문 데이터 조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학원생이 쓴 졸업 논문은 대학(학과)의 심사는 통과하였고, 아직 학위논문 인쇄 전인데 데이터 조작을 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예비조사, 본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 A
- 1)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한 대학원생은 심사 신청 단계에서 연구윤리를 지키면서 연구를 수행했다는 서약을 했어야 하고(그래서 최근 대학에서 학위논문 원고를 접수할 때나 학회 저널에서 논문 원고를 접수할 때 ‘연구윤리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데이터 조작 문제는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증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 2) 학위논문 발표 및 졸업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직 학위논문 인쇄와 도서관 등록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논문 심사위원회를 다시 소집하여 학위논문 심사 통과를 취소하고, 졸업을 다음 학기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직 학과 내부에서 “학위논문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처리할 수 있다면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한 예비조사, 본 조사는 거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내부 차원의 주의 경고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3) 만약 이미 모든 학위 수여 업무 절차가 종료되었거나 학위논문이 인쇄되고 도서관에 등록된 후(즉, 대중들에게 공개된 후)에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을 것이므로, 말씀하신 대로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소집되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학위 취소 및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일의 진행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5. 설문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한 원본 데이터(raw data)를 제공하지 않는 연구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H고등학교에 근무하는 N교사는 H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도록 협조하였고, H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와 검사를 실시한 자료의 코딩작업을 위해 연구자의 요청으로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고 자료 요청하였더니, 아직 작업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코딩자료만 보내왔고, 원자료가 오지 않아 다시 요청하였는데, 설문지와 검사자료 모두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연구자가 학술지 등 자료 사용이 가능한지요? H고등학교 학생들 자료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 가능한가요?, 2)설문지는 연구자가 인쇄했지만 검사에 사용되는 검사내용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비용이 지불되어 만들어진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파쇄되어 못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연구자가 자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공문을 요청하고 있는데 말이 되나요?, 4)학생들에게 검사한 자료를 모두 파쇄 했다면 검사자료를 얻기 위한 재검사 비용 전체금액을 연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5) 연구자료에 사용되는 자료의 범주에 설문지만 해당되는지요?, 6) 이렇게 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자 윤리 어느 항목에 어긋나는지 구체적인 조항이 궁금합니다.

A 일단 “모든 연구성과물은 연구비를 지원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연구 수행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데이터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를 지원한 자(정부, 정부출연기관, 한국연구재단, 대학, 기업 등)에게 소유, 활용, 관리 등의 권한이 있습니다.

1,2,4) 고등학교가 연구자의 설문조사를 허락했다는 것은 연구자가 그 결과를 학술지 논문 등 연구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연구자가 수집한 데이터가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그 정보가 연구결과(학술지 논문 등)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해당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연구 수행 과정에 고등학교의 비용 지원도 있었다면 고등학교에도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파쇄한 것에는 문제가 있고, 데이터 복원을 요청하거나 설문조사 비용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연구자와 해당 학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학술 연구는 공식적으로 하는 일이고, 설문조사 역시 연구자와 고등학교 사이의 공식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일일 것이므로(만약 연구자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절차에 합당한 공문에 따라 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데이터에는 원본 데이터(raw data)와 이를 가공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응답한 설문조사지는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고, 학술지 논문에는 이를 코딩하여 가공한 데이터가 이용될 것입니다.

6) 해당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과실들이 있습니다. 하나, 데이터와 연구성과물은 연구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연구비를 지원한 주체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원칙을 소홀히 하였음. 둘째, 인간대상연구의 데이터는 기밀성(confidentiality)을 유지하며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소홀히 하였음. 이 과실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정하는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연구 계약의 준수,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관리 원칙 등에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분께서는 연구자에 대해, 고등학교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니 고등학교 측에도 데이터 소유권이 있다는 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해당 당사

자(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연구 초기에 연구자와 고등학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6. 타 연구실의 학생이 무단 침입하여 연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해당 연구실의 관계자 외 출입 제한을 정당화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연구실의 F학생이 G학생의 연구용 외장하드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외장하드 내에 들어있던 상당히 많은 연구 데이터 및 관련된 발표 자료를 자신의 개인 드라이브에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저장한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아직 이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연구윤리에 반하는 행위인가요? 그리고 위의 사실을 바탕으로 현재 K연구실의 지도교수는 연구 자료의 보안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현재 F학생을 K연구실 소속의 많은 공간 중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무단 유출이 의심되는 장소(이 장소는 K연구실에 상당히 중요한 실험동물들이 위치하고 있음)의 출입을 제한(출입 제한을 고려할 때는 K연구실의 모든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윤리 중에는 '연구자 간의 차별'도 항목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K연구실의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출입 제한도 차별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에 반하는 결정인가요? 더불어 만약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출입 제한이 정당하다면, 혹시 K연구실이 '이런 이런 이유들로 해당 학생의 특정 공간 출입을 제한하였다.'라는 사실을 미리 필요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기관에 보고하면 될까요?

- A
- 1) 현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데이터 관련 항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는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2) 연구 데이터는 ① 연구자가 조사 차원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②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이 정리 또는 작성한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①의 경우 그 데이터에 창작성 있는 편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②의 경우에는 연구자 본인의 데이터가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상황이든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복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마치 자신의 연구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는 연구윤리위반으로서 표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으니, 현재로서는 표절에까지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 3)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3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2항에는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니, F학생의 실험실 출입 제한에 관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이 제보되고, 이에 따라 내리는 조치이므로, 연구실 지도교수 개인의 판단만으로 취해지는 것에는 그 정당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귀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보하여, 위원회의 공적인 결정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 7. P가 석사졸업을 하고 L기업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석사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논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석사논문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사용해서 교수가 다른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요?
좋은 활용이 될 것 같은데 P는 졸업 후 L기업에 취업을 하면서 연락이 되지 않는데, 동의 및 승인 없이 P의 이름을 저자에 포함하지 않고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A**
- 1) 데이터의 소유권은 우선 연구자에게 연구를 지원한 인물 또는 기관에, 만약 연구 지원이 없었다면 직접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연구비를 받지 않았으니, 직접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대학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면 대학에 소유권이 있을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 데이터에는 원본 데이터(raw data)와 가공된 데이터(coded data)가 있습니다. P의 석사학위 논문에 데이터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발표되었다면(이 경우에는 가공된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 데이터의 출처가 P의 석사학위 논문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조건으로,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로운 논문은 데이터에 대한 재분석, 재해석이 추가되어 새로운 학술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P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공개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를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 3) 만약 (1) 원본 데이터를 교수와 P가 함께 생산했다면 공동으로 소유권이 있고, (2) P 스스로 했다면 P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또는 (3) 교수가 생산하여 교수에게 소유권이 있는 데이터를 P의 학위논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또는 (3)이라면 교수가 자유롭게 자기 소유의 데이터를 재활용하여 논문을 쓸 수 있지만, (2)라면 P와 연락을 하여 데이터 활용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논문에서 데이터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P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해야 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데이터를 활용하여 P가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했고, 이를 다시 학술지 논문으로 공동 발표했는데, 또다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부당한 중복게재'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이 과연 이전 데이터를 재활용하면서도 충분히 새로운 학술 가치를 담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논문 본문에 이전의 석사학위 논문 발표 사실과 학술지 논문 발표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학술지 편집자에게도 데이터 재활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8. M학회에서 홈페이지에 배너 이미지로 발간된 논문들의 이미지 및 데이터를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M학회에서 홈페이지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1) 발간된 논문 이미지와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는지요?, 2) 논문에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나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사용하여도 되는지요?, 3) 동물의 embryo 또는 cell 현미경 이미지도 사용해도 되는지요?
각각의 이미지 및 데이터의 저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홈페이지 이미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 1) 현재 규칙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학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의 저작권(특히 저작재산권)”은 학회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를 통해 발표된 논문 중 일부 이미지나 데이터 이미지를, 논문 저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논문에 포함된 이미지나 데이터 이미지의 저작권이 논문 저자가 아닌 외부인(또는 외부기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논문 저자가 학술적인 목적으로 자기 논문에 인용할 수는 있으나, 그 이미지를 다시 학회 홈페이지 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학술적인 목적을 벗어나서 영업상의 목적에 가까운 것이 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안에서 해당 이미지의 원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 논문에 사용되지 않은 이미지나 데이터 이미지 가운데,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이미지도 있고, 일정 요금을 지불하면 다양한 이미지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이미지 전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명시하지 않은 이미지는 일단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미지 파일마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미지로 생각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지불했다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만 해당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미지 관련 전문 업체에 문의하셔서 정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3) 동물의 배아, 세포 등의 이미지를 어떤 연구자가 스스로 관찰하여 촬영했다면 그 연구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그 연구자 본인은 이미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가 그 연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9. A라는 큰 연구과제 안에 A1, A2, A3 등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B연구자는 A라는 큰 연구과제의 A1 과제는 ‘정식 계약을 맺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연구자는 가끔 A2, A3 등의 과제에도 계약서 없이 참여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공유데이터의 소유권 및 지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B연구자는 많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총괄-세부과제로 묶인 공동연구가 있는 반면, 구두 상 합의로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공동연구가 많습니다. 공동연구의 인정 범위를 총괄-세부과제의 참여연구원이 여부로만 판단하는지 아니면 같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연구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동연구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공유데이터의 소유권 및 지분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총괄-세부과제의 참여연구원 관계가 아닌 구두 합의로 진행되는 공동연구의 경우 공유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지분 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1) B연구자의 상황의 경우 B연구자에 대한 업적 배분 및 저자 자격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 연구윤리에서는 “연구 초기에 각자의 역할과 업적 배분에 연구진 모두가 합의하고 ‘문서로써’ 기록을 남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 역시 새로운 합의를 거쳐 문서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연구 수행 중간에 새로운 연구자가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연구자 중 일부가 빠져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구진 사이에서 역할과 업적 배분에 대해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고, 이를 즉시 연구지원기관에도 알려 승인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 2) 업적 배분과 저자 자격은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연구에 학술적 기여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각자 저자로서의 합당한 역할 수행은 물론 그에 따른 공정한 업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소통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 3) 원래 A1 과제만 정식으로 맡았던 B연구자가 ‘구두 합의’에 의해 A2, A3 과제 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음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면(즉, 관련 연구 데이터 산출이나 분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연구노트가 있거나 다른 연구자들이 모두 인정한다면) B연구자는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진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정식 문서’가 ‘구두 합의’보다 증거 능력이 앞서기 때문에 업적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연구노트 제출, 증인의 증언 확보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업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저자의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남기는 관행 정착이 필요합니다.
 - 4) 데이터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고, 저작권은 “그 저작물을 실제로 생산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외부 지원을 받아 산출된 데이터는 그 지원 주체에게 데이터 소유권이 귀속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동 연구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는 공동 연구자들에게 저작권이 공유됩니다. 업적 배분이나 저자 자격 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약상으로는 B연구자가 A1 과제만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B연구자가 A2, A3 과제 등에서도 중요한 데이터 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B연구자는 A2, A3 과제 등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식 문서’가 ‘구두 합의’보다 증거 능력이 앞선다는 상황은 동일하기 때문에, B연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확실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6) 다만, B연구자가 A2, A3 과제 등에 참여하였으나 그 기여도가 저자로서 자격을 갖춘 정도가 아니라면, 사사표기로 그 B연구자의 이름과 역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행 전 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연구에 대한 기여도와 저자 표시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0. 데이터 제공회사 A가 있고, B는 A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하였고, C는 A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C가 A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문/사회 분야 학위논문을 준비하면서 주로 실증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공급자(vendor)들이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가령,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장기업들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massive data)가 연구에 필요한 경우, 몇몇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데이터를 구독/구매해서 사용합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구독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경우 제한 없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속 학교에서 구독하지 않는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구독하는 학교/연구집단에 소속된 타 연구자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의 산출물(논문)에는 데이터를 제공한 타 연구자를 공동 저자로 표기하여 학술지에 게재하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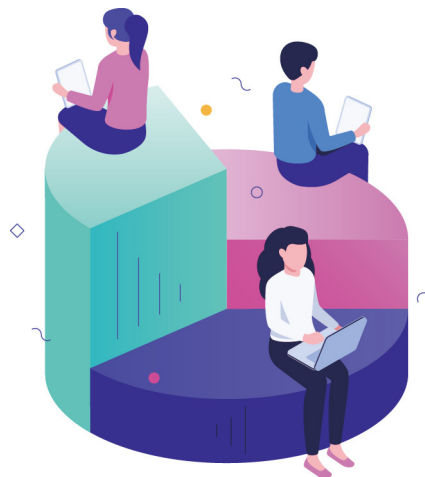
이런 경우, 만약 제가 현재 진행하는 공동연구에서, 제가 소속된 학교에서 구독하지는 않지만 공동 연구자에게 접근권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결과물 중에서 제가 기여한 부분을 별도로 학위논문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당연히 학위논문에도 포함될 연구 내용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제가 소속된 학교에서는 접근권이 없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 연구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데이터 저작권이나 연구 윤리 측면에서 학위논문을 진행하는 것이 연구 윤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 1) 일반 독자들에게 널리 공개된 논문, 보고서 등의 데이터를, 출처를 명확하게 표기하면서, 재 활용하여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raw data)를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C가 A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위논문에 사용할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A와 B 사이의 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A가 B에게 데이터를 판매할 때, 그 이용 목적과 범위를 B 개인의 용도로만 허용했는지, B와 제3자의 공동 이용까지를 허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학위논문은 C가 단독으로 작성하는 것이며, 따라서 학위논문 안에서 A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C 단독입니다. 그러나 C는 A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가 A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B가 A로부터 데이터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B가 지불한 가격 안에 그 데이터를 C에게 빌려줄 권리까지 포함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3) 원칙적으로 '개인 이용'을 조건으로 구입한 저작물은 그 개인만 이용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단체 이용'을 조건으로 좀 더 비싼 가격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대학이 '디비피아' 등과 단체 계약을 맺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A에 정확히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위논문을 쓰는 경우에도 데이터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고 답할 수도 있고, "순수 학술적인 목적의 개인적 이용은 허용한다."고 답할 수도 있습니다.

Q 11. 박사학위 논문 작성 중 석사과정 때 수집한 기초 자료를 계속 활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이 '조사한 데이터의 활용문제'가 연구부정행위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여쭙려고 합니다. 저는 석사 때부터 같은 카테고리 안에 세부 주제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 때 수집한 기초 자료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연구 주제, 연구목적, 분석 범위와 방법은 다릅니다. 다만 동일 자료가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지요.

A 자신이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만으로 연구부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학문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한번 생성된 연구 데이터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여러 연구자에게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논문에 활용된 연구 데이터가 타인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데이터" 자체로 하나의 연구 주제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표한 연구 데이터를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재사용(re-use, recycling)하여 후속 연구에서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중복게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중복게재는 가설이 유사하거나, 표본의 수나 크기가 유사하거나, 연구 방법이 동일하거나, 연구결과가 유사하거나, 새로운 정보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적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구 데이터의 재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재사용을 통해 얻어내는 연구결과가 이전과 상이하거나 이전 연구에서 나아가는 연구결과를 얻어낸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 때에도 재활용한 데이터에 대한 출처표기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Q 12 현재 A 기업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진행 중인 연구의 데이터를 학위논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 된 상태에서 이직한다면, 이직 후에도 A 기업에서의 연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위논문으로 발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기업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학위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위과정을 시작하면서 회사 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데이터를 학위논문의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에서 제 1저자로 출판된 논문이 있는데 이직 후에 이 논문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출판된 논문의 내용을 학위논문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현 직장에서 출판된 논문의 데이터를 다른 직장으로 옮긴 후에 학위논문에 사용하였을 경우 현 직장과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1) 일반적으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대학이나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데이터는 소속 대학 및 연구원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도교수 등 담당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연구 데이터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소속기관에서 연구 데이터 및 물질(시료 등) 보관 및 반출과 관련한 내부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구기관에서의 지적·물적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연구 데이터를 유출하고 소속을 달리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유출한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유출한 데이터 등으로 인하여 통해 A기업이 지적·물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논문이 출판된 학술지와, 연구자가 이직할 B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담당자에게 관련 사안을 정식으로 제보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2) 이런 경우 학위논문의 출판에 앞서 A로 부터 데이터 사용에 관련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A의 일원으로서 연구실과 연구 데이터를 소속기관으로부터 획득하였다면 연구계획의 수립 시 이직 사실을 공유하고,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준수하고, 외부 발표 시에도 역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데이터가 혼자 산출한 것이 아닌 경우, 이때 자신의 논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 산출에 기여한 사람은 당연히 밝히고 공동 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학위논문에 공동저자 표기는 없으므로 감사의 글에서 그 기여를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향후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을 쓸 때에는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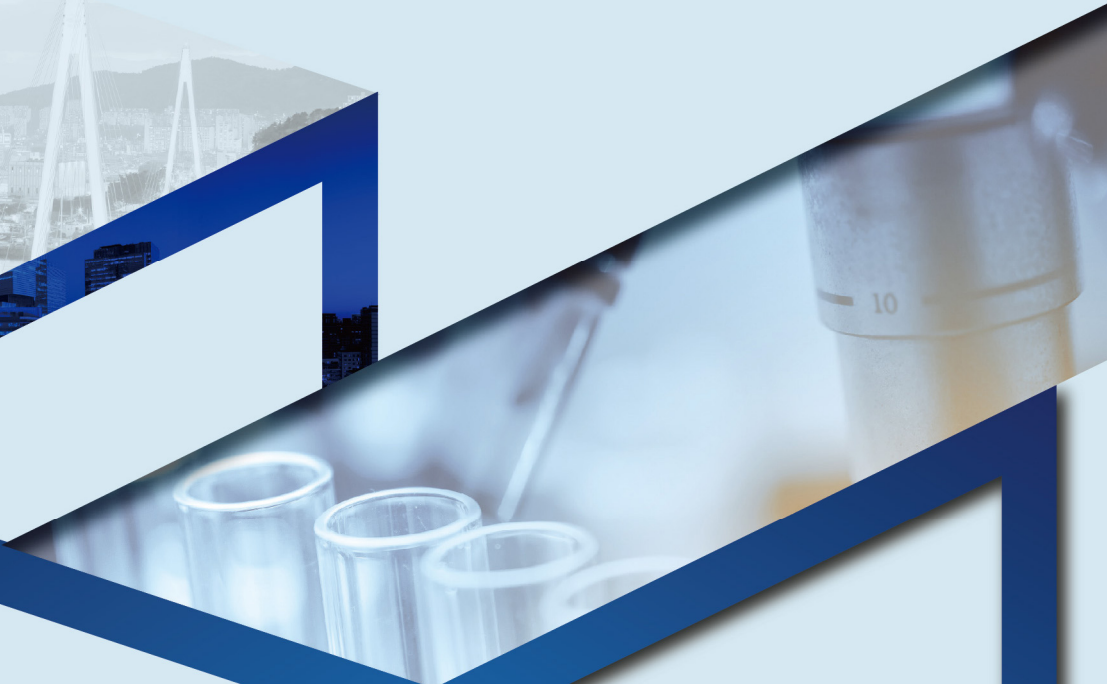
Center for Reserach Ethics Information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X

연구노트



Q 1. 제3자가 연구노트를 기록하고 허위로 서명하였을 경우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원이 자신은 연구노트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연구 책임자(점검자)가 자신의 이름(기록자)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허위로 서명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구부정행위 중 “위조”(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에 해당하나요? 또한, 연구부정행위에서 규정한 “위조”는 통상적으로 보고서, 발표자료 등에 허위가 없는 지로 판단하는데, 연구노트 허위 작성에 대해서도 “위조”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 1) A 연구 책임자가 B 연구원의 이름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의 연구 성과 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주기 위해서라면 ‘부당한 저자표기’와 유사한 ‘불공정한 업적 배분’에 연관될 수 있고, 연구노트를 고의로 부실하게 작성함으로써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B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형사상 범죄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는 “연구개발의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침 제12조에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연구노트”도 연구수행 중간에 만들어지는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의 일부분이므로, B가 만들지 않은 연구노트를 A가 만들어내는 행위도 “위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3) 더 나아가, 연구노트는 연구자 소속기관에 보관되어 연구자의 업적평가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무슨 의도이든 A가 B에게 허위의 연구노트를 만들어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속기관의 공정하고 정확한 연구자 업적평가를 어렵게 하므로, “사문서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2. 연구노트 기록 의무화가 최초로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국책사업 등에서 연구노트를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초로 시행된 것이 혹시 언제쯤인가요?

- A**
- 연구노트 작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절 협약의 제9조 1. 연구개발과 체계화서의 1의 15에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규정의 제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제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로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관련하여 연구노트의 유형적 성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연구노트지침 마련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개발 관련 인력 교육과정에 연구노트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규정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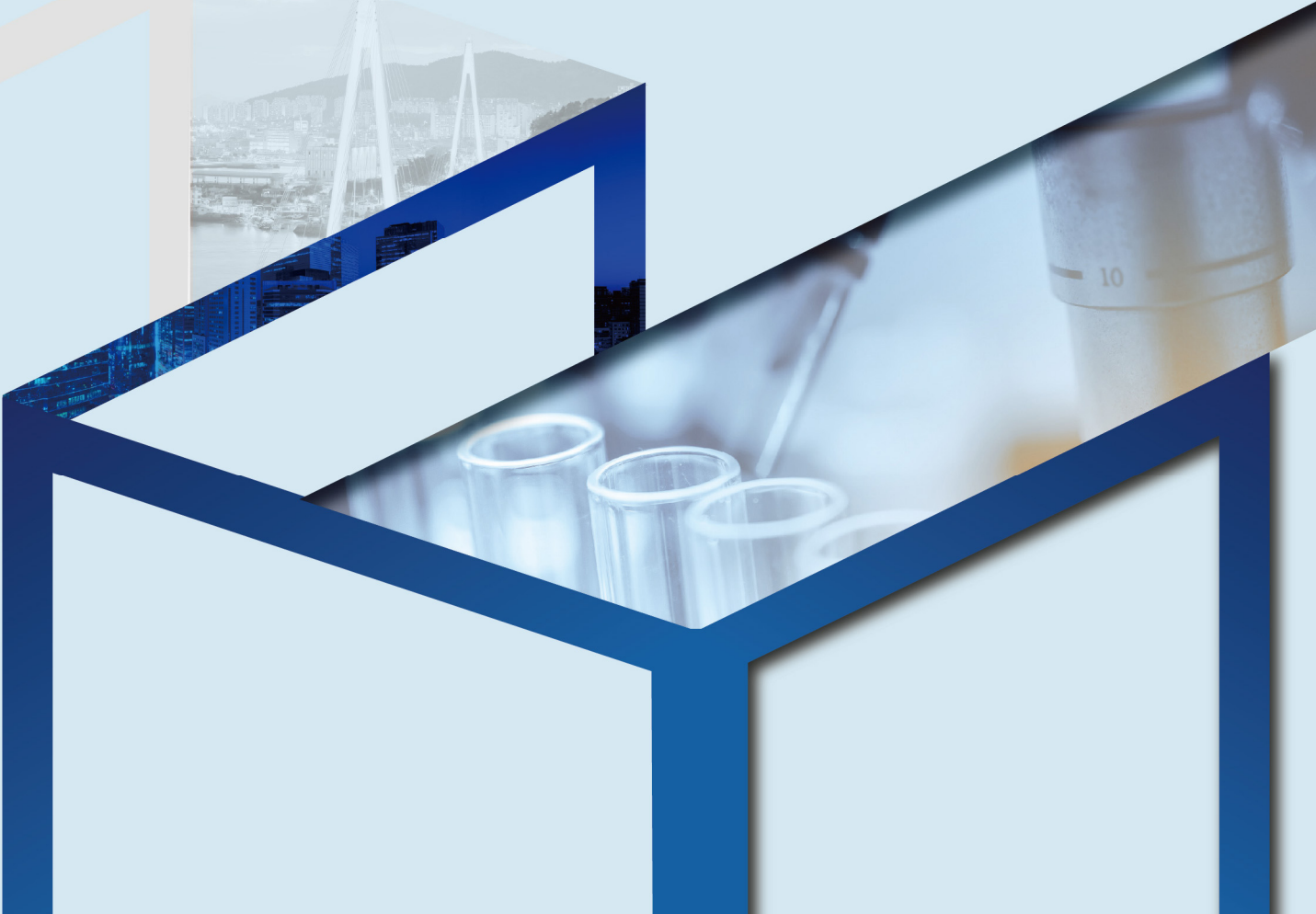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노트포터(KISTA) : <https://www.e-note.or.kr/main/home.do>”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CRE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XI

IRB, IACUC



Q 1. IRB 승인 없이 논문을 출판했는데, 법적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1) IRB 검토 절차 없이 환자 보호자에 대한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로 해외학술지에 논문 게재 완료 되었는데, 저자가 소속된 IRB에서 해당 논문이 IRB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만일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IRB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2) 연구윤리 위반 행위 (ex. 유령저자)가 있는 경우, 법적인 처벌도 가능한가요?

A 1) IRB는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 배아 연구 등에 있어서 연구대상자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심의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 완료 후 IRB 심의는 원칙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소속기관에서 IRB를 설치하고 소속 연구원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할 때 적용하는 내부 가이드라인(SOP)이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IRB 소속 간사 등에 문의하여 대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연구윤리 위반행위 중 중대한 위반행위를 연구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법은 부재한 상황이지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은 부처별 부령, 훈령, 연구기관 자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며,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조사 및 판정을 합니다. 이러한 검증주체에서의 판정과 무관하게 제보자나 피조사자 등이 소송제기를 통해 법률적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소수 있으나 이는 검증주체에서의 진실성위원회 판정과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판정은 연구자라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격입니다만, 연구자에게 있어 연구의 신뢰가 가장 큰 기반인 만큼,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연구결과 철회, 연구수행 제한, 채용철회 등의 결과를 수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령저자는 부당한 저자의 한 유형으로서 부당한 저자권 부여의 목적(대가성, 수혜), 부여받은 자의 요구 혹은 인지 여부, 반복성 등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링크 : <http://cre.or.kr/board/?board=policy&no=1386390>



Q 2

하나의 질적 연구 자료를 소주제로 나누어 다수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요? 또한 한 번의 IRB 승인으로 다수의 논문 출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광범위한 연구 주제로 IRB 승인을 받고 인터뷰 자료를 활용한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 대상자가 세 집단으로 분류된 경우,

- 1) 각 대상자 집단의 특수성과 맥락이 다른 경우, 세 개의 개별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요?
- 2) 각 집단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대상자의 인터뷰 자료를 세 개의 개별 논문에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 3) 세 집단 중 하나를 논문 출판하고, 세 집단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학위논문으로 발표 가능한가요?

A

- 1)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 주제를 공모할 때, 그리고 IRB에 연구승인을 신청할 때, 하나의 통합된 제목으로 진행했는가, 3개의 제목으로 각각 진행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구비 신청, IRB 신청, 연구 결과물의 갯수는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연구비 지원기관에는 큰 주제로 연구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연구비를 받았는데, 결과는 소주제의 결과로만 나왔다면 연구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3개의 논문으로 따로 발표하고자 한다면, 연구비 지원신청이나 IRB 승인신청도 3개의 주제로 분리하여 개수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광범위한 주제로 처음 연구 설계를 할 당시, 분석 대상 또는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대 주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세 집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분석을 기획하였는데, 이를 나누어 3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 주제에 속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한 편의 논문에서 할 때 내용도 풍부하고 체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변인이 각각 특수성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발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갈등이 없다는 전제 하에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3편의 논문에서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때, 또는 이 각각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할 때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호 출처표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 2) 인터뷰에 응한 한 사람의 내용에서 각각의 변인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하여 출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밝히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3) 처음 IRB 승인을 받을 때 연구하고자 하는 3가지 변인에 대한 자료 수집 내용을 계획서에 밝혔고, 그것을 IRB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연구 결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변인을 각각 나누어 학술지에 먼저 발표하고 이들을 다시 묶어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들의 선행 연구에 대한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만 IRB 승인을 받을 때는 어느 한 변인에 대해서만 받고, 그 후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는 이 3가지 변인을 하나로 모아 학술지 논문 또는 학위논문으로 발표하면서 마치 이 전체를 모두 IRB 승인을 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 3개 변인에 대한 연구를 승인받고, 1-2개 변인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변인 연구가 나중에 추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3. 두 기관이 인체 조직 유래물을 이용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IRB는 두 기관 모두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기관 (A, B)이 인체 조직 유래물을 이용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 A는 IRB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B기관은 A기관이 수집한 도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6조 2항은 인체유래물 연구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33조 1항 1호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 중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 유래물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 다만,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한다.

따라서 B 기관의 연구 수행내용이 이에 해당한다면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할 것이나, IRB에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https://irb.or.kr/>

Q 4. 국외 대학 소속 연구자가 한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IRB 승인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해외 대학 다니고 있으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기위해 해당 중학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 소속 대학 IRB에서는 한국의 IRB 승인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중학교의 허가만 있으면 되는지 한국 IRB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인간대상연구를 할 때, IRB 심의는 연구자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질문자처럼 소속이 외국의 대학교이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 연구 참여자를 한국에서 모집하여 설문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도 먼저 질문자가 속해 있는 미국 대학의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관련 기관에서 IRB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처럼 한국의 어떤 특정 대학이나 기관에 속해 있지 않고 개별 연구자인 경우는 공공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공 IRB, irb@nibp.kr)에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받은 후 승인받은 대로 연구를 개시하면 됩니다. 한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하므로 공공 IRB를 얻은 후 이를 근거로 해당 연구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연구 전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에 대한 허가 또는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중학교 교장의 승인만으로 불충분하다면 해당 지역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5. 온라인 설문조사 시 동의획득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 1) IRB 승인 후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IRB 승인 내용에 없는 웹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 2) 웹 설문 작성 시 동의 서명 등 기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 A**
- 1) 웹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게 연구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떻게 자발적인 동의를 얻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웹 설문조사는 대면으로 설문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단 연구 전반에 대하여 참여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설문 문항이 나오기 전의 화면에 본 연구의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문을 제시하고 (이는 paper 설문을 할 때 참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설명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설문 참여에 동의하겠느냐는 체크 항목을 두어 이에 체크하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본격적인 설문 문항이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 2) 웹 설문을 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참여자가 웹 설문에 참여한 후 자신은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니 자신이 응답한 내용을 연구 데이터로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해 올 경우 응답자의 자료는 익명화되어 처리되므로 그러한 요청이 있어도 해당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정말 설문지를 응답자 본인이 작성할 것인지,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할 것인지, 연구자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하여 연구의 신뢰도에서 문제가 없도록 연구자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문서를 통한 전자서명 기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연결시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자의 동의 서명을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명 설문이라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본인인증 페이지와 실제 설문내용 페이지가 그대로 이어지면 되는 것이고, 무기명 설문이라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본인인증 페이지와 실제 설문내용 페이지를 분리하여 누가 어떤 설문지를 작성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술 사항은 인터넷 설문조사 업체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6. 설문조사 동의서를 전자파일로 저장 후 폐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설문조사를 위해 서면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서에는 “(중략) 연구로부터 얻어진 연구대상자에 관한 관련 정보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되며 연구 책임자, 세부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있는 자만이 접근 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동의서를 스캔한 파일(스캔한 파일에도 암호 설정)을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서면으로 받은 동의서는 폐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해당 연구를 심의한 기관 IRB 규정의 자료 보관 기한, 방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규정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라 해서 특별히 효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서면동의에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며, 현행 전자문서법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전자문서 역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③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대상연구에서 “연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IRB에서는 서면 동의서 원본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 및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과 같은 전자문서 시대에 스캔한 파일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나, 아무리 온라인 저장매체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고장을 일으키거나 해킹, 자료 멸실 등의 위험이 간혹 있고 해당 기관에 따라 전자화 수준이 다르므로 장소나 비용의 문제가 없다면 서면동의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7. 병원에서 수집한 영상자료 및 환자 정보를 활용하여 연구 수행 시 IRB 검토가 필요하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와 익명화된 환자의 정보(나이, 성별, 발병부위 등)를 받아 학술 연구 수행 시 기관의 IRB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문의 및 심사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영상 및 정보데이터가 연구목적으로 획득된 것인지 (IRB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데이터들이 이미 연구목적으로 IRB 승인 하에 획득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IRB 승인이 필요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없었고, IRB 승인을 받은 바 없는 데이터라면 원칙적으로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추가적으로 IRB에 사용에 관한 문의를 해보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Q 8.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할 경우에도 IRB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위논문을 위해 만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신체계측을 하려면 IRB 승인이 필요한가요?

- A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16조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 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절차 및 방법, 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동意的 철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IR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만일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 2)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에는 “1.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연구 대상자가 3-6세의 유아이므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필요합니다.
 - 3) 생명윤리법 제 16조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정 대리인
 2.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통상적으로 ‘법정 대리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겠습니다.



Q 9. 국가기관에서 인간대상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연구 참여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업무상 진행된 연구도 논문 출판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 국가기관의 정책연구로 인간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IRB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국가기관은 어디에서 IRB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2) 업무상 진행된 조사(연구)는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연구자는 **기관 **부서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해당업무를 전담한 직원으로 하는 건가요?
- 3) 해당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연구 참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A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는 IRB 심의 대상입니다. 동법 제2조제1호에 근거하는 ‘인간대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즉, 연구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에 속하는 연구는 IRB 심의 대상입니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치가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타 기관의 기관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 내 기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협약을 맺은 기관위원회가 없다면 연구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이용하여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협약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어떤 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연구자
 - ②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무원 등 소속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기관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
 - ③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
 - 둘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로서 각각의 소관 기관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위원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연구
 -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연구로서 심의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 ※ 다만, ②, ③의 경우 필요에 따라 소속된 기관장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 포털(<http://www.irb.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업무상 진행된 조사(연구)를 학술지에 투고가 가능합니다. 연구자 소속은 해당 학술지의 논문 편집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자료를 투고하는 경우에, 사사 표기와 해당 연구를 투고하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 3)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는 연구 참여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Q 10. 인간대상연구 중 국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조사)업무는 모두 IRB 면제인가요? IRB 면제 대상이라면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국가기관의 연구(조사) 업무라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IRB 심의 면제에 해당하나요? IRB 면제에 해당한다면 동의서 등도 생략가능 한가요?

- A**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한다면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방법(설문조사 및 면담)에 관련 없이 심의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공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 연구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모든’ 연구가 아닌 ‘공공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는 연구로 범위가 한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면제 대상 여부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IRB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자세한 사항은 기관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IRB 심의면제와 동의면제는 별개 사항으로 IRB에서 연구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검토해야 심의면제 또는 동의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질의 내용이 생명윤리법에 의한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B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연구대상자에 따라 동의면제가 불가할 수도 있기에 IRB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11.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활동 내용 및 수업 후 설문조사 내용을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학생 동의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내용 혹은 교사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기록된 인적사항은 익명화하여 통계에만 사용하는데 이때 학생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 2조에서 정의하는 인간대상연구는 IRB 심의 대상이며, ‘인간대상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가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 생명윤리법이 정한 심의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IRB 심의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법상에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지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즉, 1)과 2)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1)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2)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질의자의 수업에 관한 연구가 처음부터 연구를 위한 수업 설계를 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인지,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의한 수업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후자와 관련된다면,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IRB 심의 면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에 대해 소속 IRB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판단할 수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IRB 심의 면제와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서 취득은 별개 사항입니다. 물론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연구 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 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연구 대상자의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해당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서면동의 면제가 불가합니다.

생명윤리법 제 16조에 인간대상연구자는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전자문서 포함)를 받아야 하며,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가 참여하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의 동의는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대상자”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1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 “대리인”이란 생명윤리법 제 16조의 1. 법정 대리인 2.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하겠습니다.

Q 12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가 아닌 온라인 설문조사를 업체를 통해 진행할 때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A**
-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기타 IR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또한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대상자’에 속하는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 대면 설문조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되어 대상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얻거나, 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는 IRB 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설문조사라는 방법에 따라 구분을 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연구 계획서와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3) 생명윤리법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에는 전자문서도 포함합니다 (생명윤리법 제16조 제1항).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가 포함된 연구라면 해당 연구 계획서를 검토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연구 대상자 집단, 설문내용,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구에서의 적법한 동의가 무엇인지 심의 및 승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동의 면제도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 IRB의 승인 사항이므로 기관 IRB로부터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 4) 연구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정보를 개인이 법률적 근거 없이 보관하더라도 주민번호 등을 삭제하여 보관해야 하므로 첨부된 서류를 보관 시 보안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관IRB 심의를 거쳐 연구자가 확인 후 확인 사실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셔서 획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는 IRB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13. 동물의 분변을 받아서 해당 분변으로부터 박테리아를 분리하는 실험을 할 때에도 IACUC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동물사육 없이 동물의 분변만 받은 후, 분변으로부터 박테리아를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분리한 박테리아의 상업적인 이용 및 특허를 내려면 IACUC 등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A**
- 1) 동물의 분변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IACUC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IACUC(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실험동물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지침'이라는 국제적 지침을 따르기 위해 동물관리 및 사용 프로그램을 평가·감독하는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험에 이용하는 동물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 이용을 제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IACUC는 동물대상 연구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등을 하는 것이며, 근거 법령에서 대상 동물을 척추동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2) 동물의 분변에서 추출한 세균의 상업적 이용 및 특허 출원을 위한 절차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통상 특허 문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산학협력단 및 연구처 등에서 일차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연구윤리 측면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는다면 특허 및 상업적 이용에서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는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구윤리 측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상업적 이용 및 특허 출원 절차 등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허청에서 발간한 [고품질 특허명세서 작성을 위한 바이오특허출원 길라잡이 (2018)]에 따르면,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제도 이용하여 특허 출원서에 수탁증 사본을 첨부하며, 미생물을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박테리아의 출처(동물 분변)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당 동물의 IACUC 승인번호를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